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공동교섭단
2021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

2022. 12.

목 차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공통교섭단 단체협약 개요	1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공통교섭단 단체협약 이행계획	3
전 문	3
제 1 장 총 칙	3
제1조 【적용 범위】	3
제2조 【협약의 존중】	3
제3조 【단체협약 이행】	4
제4조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5
제5조 【협약기준 저하에 따른 합의】	6
제6조 【규칙의 제개정 및 정관 승인 시 의견존중】	6
제 2 장 조합 활동	7
제7조 【조합 활동의 보장】	7
제8조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	11
제9조 【조합비 일괄 공제】	11
제10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전임자의 처우】	12
제11조 【단체교섭 활동 보장】	14
제12조 【교권 보호 정책, 교권 옹호를 위한 위원회】	15
제 3 장 편의 제공과 협조	18
제13조 【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18
제14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교육행사 지원】	22
제15조 【교원 노조 참여 보장】	23
제 4 장 여비, 수당, 근로조건, 후생복지	23
제16조 【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23
제17조 【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29
제18조 【업무 교육 환경 구축】	37
제19조 【학교 시설 안전 진단】	38
제20조 【학교정보화 지원】	39

제21조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41
제22조 【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침해 방지】	51
제23조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개선】	52
제 5 장 교육여건의 조성	54
제24조 【재난 시기 교육과정 운영】	54
제25조 【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55
제26조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	59
제27조 【보결전담 교사제 확대 및 보결수업비 지급】	63
제28조 【상치교사제 폐지와 순회전담교사 배치 기준】	64
제29조 【기간제교사·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66
제30조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 수당 지급】	68
제31조 【유·초·중·고 학교평가제 개선】	69
제32조 【교육양극화 해소】	69
제 6 장 교육활동 보장	71
제33조 【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71
제34조 【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제 확대실시】	75
제35조 【교원의 업무 정상화】	76
제36조 【교육청 주관 교사 관리 감독 수당 현실화】	93
제37조 【학교의 민주적 운영】	93
제38조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의견 수렴】	96
제39조 【교육활동 유해업소 단속】	96
제4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지도강화】	97
제41조 【교육예산의 편성과 운용의 합리화】	97
제42조 【학교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보장】	99
제43조 【학교장 업무추진비 지출 제한】	100
제44조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101
제 7 장 학생복지 및 자치신장	107
제45조 【학생 인권, 학습권, 신체의 자유권 보장】	107
제46조 【사생활,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	109
제47조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112
제48조 【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113

제49조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119
제50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120
제51조 【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122
제 8 장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126
제52조 【인사위원회】	126
제53조 【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	128
제54조 【초빙 교원】	132
제55조 【국립학교 근무 교원의 특혜 제한】	133
제56조 【부부교사의 시·도간 인사 교류】	134
제57조 【학교민주화를 위한 승진제도의 개선】	134
제58조 【인사제도 효율성 강화 및 각종 대회 심사위원 제척】	135
제 9 장 교원 연구·연수활동 개선과 전문성 보장	137
제59조 【부전공연수 및 과목불일치교사 해소】	137
제60조 【전문직 공채의 개선】	137
제61조 【교원연수 제도 개선】	138
제62조 【컨설팅장학 및 장학위원 활동】	141
제63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41
제64조 【학업성취도 평가와 직업기초능력 평가 개선】	146
제65조 【방학 중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운영】	148
제66조 【학기 중 방과후 학교교육 활동 정상운영 등】	149
제67조 【연구·시범학교 등 운영의 개선】	153
제68조 【교사의 자율성과 수업권 보장】	154
제69조 【감사 제도의 개선】	154
제70조 【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	156
제 10 장 사학의 공공성 보장	157
제71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보조금 회수 등】	157
제72조 【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158
제73조 【학교법인의 전보인사】	163
제74조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164
제75조 【교권보호조례시행규칙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	169
제76조 【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	170

제 11 장 성평등 학교 문화 구축과 유아·직업·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육의 공공성 확보	173
제77조 【성 평등】	173
제78조 【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75
제79조 【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176
제80조 【교원 육아지원을 위한 탁아시설】	180
제81조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 및 차별행위 금지】	181
제82조 【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182
제83조 【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189
제84조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196
제85조 【특성화고 학생 유치 지원】	200
제86조 【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201
제87조 【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207
제88조 【특수교육의 전문성 신장】	211
제89조 【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정상화】	212
제90조 【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214
제91조 【통합교육지원】	216
제92조 【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218
제93조 【사서교사 인사 및 근무 여건 개선】	223
제94조 【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225
제95조 【상당교육활성화 지원】	234
제96조 【상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235
제97조 【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착 노력】	237
제98조 【불합리한 교원 정책 폐지 노력】	239
부 칙	239
제1조 【유효 기간】	239
제2조 【협약 갱신】	239
제3조 【보충협약 및 준용】	240
제4조 【협약서의 보관】	240
부 록	241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241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	296

2021 공동교섭단 단체협약 개요

□ 법적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추진 경과

- 2021.6.28.(월) 전교조광주지부 단체교섭 요구[전문1, 본문 98개조, 부칙 4조]
- 2021.7.1.(목) ~ 7.8.(목)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7일)
- 2021.7.7.(수) 광주교사노조 단체교섭 요구[전문1, 본문 66개조, 부칙 4조]
- 2021.7.12.(월) 교원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검토
- 2021.7.13.(화) ~ 8.2.(월)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 공고
- 2021.8.2.(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광주시교육청 노측 교섭위원 선임 통보(교섭창구 단일화)
- 2021.8.23.(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공동교섭단 절차 및 방법 등 합의서 송부
- 2021.10.26.(화) 공동교섭단 단체교섭 요구[전문1, 본문 100개조, 부칙 4조]
- 2021.9.9.(목), 10.7.(목), 10.13.(수), 10.21.(목) 공동교섭단과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 합의를 위한 실무 협의(1~4차)
- 2021.10.27.(수)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공동교섭단 절차 및 방법 등 합의
- 2021.11.12.(금) 본교섭(단체교섭 개회식)
- 2021.12.9.(목) ~ 2022.6.2.(목) 제1차~제17차 실무교섭[월 3회, 목요일]
- 2022.6.17.(금) ~ 2022.6.24.(금) 제1차~제3차 본교섭[소관국별, 국별 의제]
- 2022.6.24.(금) 잠정합의
- 2022.6.28.(화) 본교섭(단체협약 체결식)

[전문, 본문 98조 594개항, 부칙 4조 6개항 총 601개 조항]

□ 단체교섭 대상 및 범위

- 교섭 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단체교섭 대상으로 함
- 교섭의 범위는 교육감의 권한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나, 단체교섭이 시교육청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섭구조의 특성상 각급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도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내에서 안내·권장하는 수준에서 포함함

□ 단체협약 이행책임

-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함

□ 단체협약 이행방법

-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시교육청에서 이행
- 법령, 조례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행되도록 노력(중앙부처-교육부, 광주광역시의회 등)
- 각급 기관장(학교장)에게 권한이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방법을 통하여 각급 기관(학교)별로 이행, 교육청에서 이행점검 실시

2021 공동교섭단 단체협약 이행계획

전 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이하 ‘전교조광주지부’라 한다)·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광주교사노조’라 한다.)은 「헌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 범위】 ① 본 협약은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그리고 공립 유·초·중·고 교원인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교원 보수의 우대)

제2조【협약의 존중】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협약사항에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에게 유리하게 해석, 적용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2022.6.2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제3조【단체협약 이행】 ①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각각 교사 동수로 단체협약 이행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기별 1회 운영하며 구성 및 진행방법은 제4조 정책협의회에 준해서 운영한다.

② 시교육청은 제1항의 단체협약 이행협회의 협의·점검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학교장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에 접수한 후 그 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한다.

③ 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이행점검표를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다.

④ 시교육청은 상·하반기(6월, 10월)별로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이행점검 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서면 통보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단체협약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전체 교사들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를 한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한다.

⑥ 시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협의회 합의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단위 기관장(학교장)에게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수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한다.

⑧ 시교육청은 협약 체결 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동으로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시교육청은 학교관리자 및 행정실장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담당자(분회장) 등 업무 관계자에게 공동연수를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2022.6.28.)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이행계획」

□ 이행계획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
 - 단체협약 이행협의회, 해설서 배포, 기관별 연수, 이행점검 등 실시

제3조【단체협약 이행】 ⑦ 시교육청은 본 협약의 내용 중 교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7
---------	--------------	-----	----------

□ **해설**

-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 활동 등과 관련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함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기준」

□ **이행계획**

- 당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공무원 맞춤형복지 사업비에 반영

□ **참고사항**

-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단체협약의 이행점검과 광주교육정책, 교육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각 노조별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며, 해당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때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양측 합의하에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건은 상호 7일 전에 통보한다. 정책협의회는 본교섭의 교섭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광주 교육정책 및 현안
2.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
3. 기타 교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③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학기별 1회 이상 정책협의를 개최하도록 지도하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은 본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2022.6.28.)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이행계획」

□ **이행계획**

-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노조는 일시, 협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제출

제5조【협약기준 저하에 따른 합의】 ① 시교육청은 단체 협약을 갱신 체결하면서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내용 등 기존의 협약이 정한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 협약기준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칙과 행정지침이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그 규칙 및 행정지침을 개정하되, 그 개정 방향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 시교육청은 다른 단체와의 협약으로 인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2022.6.2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 「광주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 이행계획

- 교원의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칙이나 행정지침이 본 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제출받아 합의를 통해 개정

제6조【규칙의 제·개정 및 정관 승인 시 의견존중】 ②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학교법인이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정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당해 법인 소속 전체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지도하고 의견수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4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변경 등)

□ 이행계획

- 협약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정관 개정 시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지도

제2장 조합 활동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① 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그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모든 근무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제반 홍보 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홍보 활동이란 인쇄물 배포, 홍보물 부착(현수막 등)을 말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 활동 및 제반 홍보 활동을 보장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③ 시교육청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학교의 제반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재산관리팀)	연락처	380-4149
---------	--------------	-----	----------

□ 근거(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위임사무) 및 제21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 이행계획

- 조합활동에 필요한 학교시설의 사용 요청 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④ 시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월 3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위한 조합원 교육을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9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이행계획

-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월 3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위한 조합원 교육을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⑤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에 포함하고, 해당 노조 조합원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3
---------	----------------	-----	----------

□ 해설

-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에 포함하고, 해당 노조 조합원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안내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 이행계획

- 교장·교감 대상 연수 및 협의회 시 해당 내용 안내
- 학교업무정상화 현장 모니터링시 해당 내용 점검
-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 시 안내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⑥ 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생산한 각종 문서를 성실히 접수 처리하고, 각 학교로 이첩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서 중 교육적 가치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노조가 생산한 각종 문서와 각 학교로 이첩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처리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⑦ 시교육청은 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체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석
2. 노사간 개최되는 협의회 참석
3. 노조 대의원으로서 전국 시단위 정기 대의원대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
4. 노조 중앙위원으로서 중앙위원회 참석
5. 노조집행위원으로서 중앙 및 지부, 지회 집행위원회 참석
6. 지부, 지회 집행부서장회의 참석 및 조합원의 고충처리 활동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제19조(공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이행계획

- 조합 활동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무 처리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⑧ 시교육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전교조광주지부·광주 교사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정보보호팀)	연락처	380-4497
---------	--------------	-----	----------

□ 해설

-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및 직속기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 교사노조 홈페이지 링크 연결

□ 근거(관련규정)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2022.6.28.)

□ 이행계획

- 관련 내용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전달

□ 참고사항

- 교육자치과-8159(2022.8.25.) [2021 단체협약 이행 협조 요청(누리집 관련)] 공문 발송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⑨ 시교육청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정책협의회 합의 사항과 다른 지침이나 공문을 시행하는 경우 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정책협의회 합의 사항과 다른 지침이나 공문을 시행하는 경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합의하여 처리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⑩ 교원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 뒤 건의한다.

⑫ 시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관련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공식 입장과 상반되는 지침이나 공문을 시행할 때에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5, 4337
---------	--------------	-----	----------------

□ 해설

- 교원의 근로조건 및 지위와 관련된 정책 또는 제도와 관련된 교육청 의견 제출 시 교원노조(단체)의 사전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 이행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 이행계획

- 교원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경우,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관련하여 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공식입장과 상반되는 지침이나 공문을 시행할 때에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합의하여 처리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⑪ 시교육청은 조합원의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노조의 조합 활동으로 불이익 발생 시 「교육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동으로 협의하여 진행

제8조【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 ① 시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신규 임용 연수, 교감, 교장연수를 포함한 모든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조 관련, 노사관계이해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 교원노조 홍보와 활동을 소개하는 교육시간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각각 1시간 이상씩 허용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해 교원 연수계획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문서로 통보하고, 교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 이행계획

-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연수운영계획을 수립·개설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제9조【조합비 일괄 공제】 ①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조합원의 월정률(액) 조합비를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별로 개인 정보제공 동의내용이 포함된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를 조합원의 급여지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급여지급기관장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학교, 이름, 금액, 호봉)을 통보한다. 단, 입금해야 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본인이 급여지급 기관장에게 조합비 원천징수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급여지급 기관장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④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조합원이 타 학교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보된 급여지급기관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조합비 원천징수를 원하는 조합원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비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지출원이 동일한 기관으로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비 공제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경리팀)	연락처	380-4153
---------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제2항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동의서에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속 동의한 것으로 간주, 원천징수 철회서를 제출한 경우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나이스(neis) 자료 또한 종료 시점을 입력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전보하더라도 인사와 급여자료가 전입 기관으로 자동 이관되고 있음
- 조합비는 급여 지급일에 조합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급여 지급 관할기관에서 공제내용(학교, 이름, 금액, 호봉)을 조합으로 통보하겠음

제9조【조합비 일괄 공제】 ③ 가입과 탈퇴의 개인 의사표시는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 관리자 등이 가입과 탈퇴에 대한 개입, 확인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은 지도하며, 적발 시 적법 처리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의2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조합원의 노조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지도

제10조【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전임자의 처우】 ①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에 따라 전교조·광주교사노조 대표가 신청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를 조합 활동의 전임자로 허가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2021.1.18.)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서 전임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처리

제10조【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 전임자의 처우】 ② 시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 승급, 경력 산정, 승진, 연금산정, 복지혜택 등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해설

- 노조 전임활동의 여건 보장을 위한 노조 전임자의 처우 마련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이행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처리
 - 재직경력인정(경력평정 100% 산입, 승급인정)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참고사항

- 휴직제도 연혁
 - 교원노동조합 전임 근무자 휴직 추가(2000.1.)

제10조【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 전임자의 처우】 ③ 시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해제 후 학교 복귀 시,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되, 원 소속 학교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원 소속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을 참고하여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발령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해설

- 전임자의 전임해제 후 학교 복귀 시, 본인의 희망을 참고하여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발령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휴직의 효력)

이행계획

- 교원노조 전임자의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소속 학교로 발령하고 있음 (단, 복직일 현재 별도 정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발령할 수 있음)

제10조【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전임자의 처우】 ④ 시교육청은 맞춤형 복지 제도의 모든 복지혜택을 전임자의 전임기간에도 100% 적용하여 지급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인사팀)	연락처	380-4118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이행계획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시 노조 전임 휴직자의 경우에도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100%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사항

- 총무과-3172(2022.2.22.) [2022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알림]

제10조【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전임자의 처우】 ⑤ 시교육청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법령 개정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근거(관련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3항, 제4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22.6.10. 개정, 2023.12.11. 시행)에 따라 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용노동부 고시)의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용

제11조【단체 교섭 활동 보장】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노사 간에 개최되는 협의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인사팀)	연락처	380-4118
---------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이행계획

- 공무상 요양 승인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의 활동 중 질병 또는 사고 등이 공무상질병 또는 공무상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제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겠음

□ 참고사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2조【교권 보호 정책, 교권 옹호를 위한 위원회】 ① 시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항

□ 이행계획

- 조합원과 관련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교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교권보호담당자 등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 처리

제12조【교권 보호 정책, 교권 옹호를 위한 위원회】 ② 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이행계획

- 시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시, 상기 규정에 따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계획임

제12조【교권 보호 정책, 교권 옹호를 위한 위원회】 ③ 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 치료(정신적 피해 포함) 및 법률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설치 및 기능)

□ 이행계획

-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원스톱지원시스템(교권부르미)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지원

제12조【교권 보호 정책, 교권 옹호를 위한 위원회】 ④ 시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 수집 및 교권 보호 관련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유하고, 교권보호정책에 반영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실태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실태조사)

□ 이행계획

- 교육활동 침해 현황 실태조사(연 2회)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 수집
- 교권 보호 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 교권침해 사례 및 만족도 결과를 노조측과 공유하고 교권보호 정책에 반영

□ 참고사항

- 현재 매년 연 2회 교육활동 침해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3월, 9월)

제12조【교권 보호 정책, 교권 옹호를 위한 위원회】 ⑥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원의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정보보호팀)	연락처	380-4409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원의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함

□ 근거(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이행계획

- 학교 교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 안내 공문 시행
-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배포
- 각급학교(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실시

□ 참고사항

- 교육자치과-6626(2020.8.4.) [(안내) 학교 교사 및 직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 안내] 공문 발송]
- 교육자치과-1966(2022.2.25.) [(안내) 2022년 상반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및 홍보 포스터 안내] 공문 발송
- 업무포털 학교 업무 매뉴얼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 안내

제12조【교권 보호 정책, 교권 옹호를 위한 위원회】 ⑦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졸업 앨범 제작 시, 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사진 등 개인 식별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정보보호팀)	연락처	380-4409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졸업앨범 제작 시, 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사진 등 개인 식별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함

□ 근거(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이행계획**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하여 각급 학교(기관) 안내 공문 시행
-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배포
- 각급 학교(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실시

□ **참고사항**

- 교육자치과-1966(2022.2.25.) [(안내) 2022년 상반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및 홍보 포스터 안내] 공문 발송
- 업무포털 학교 업무 매뉴얼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 안내

제3장 편의 제공과 협조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①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3
---------	--------------	-----	----------

□ **근거(관련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2022.6.28.)

□ **이행계획**

- 시교육청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 사용 중이며, 시교육청은 필요한 집기를 수요 조사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②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상호요청을 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 정보에 대하여 이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기록정보팀)	연락처	380-4514
---------	--------------	-----	----------

□ **해설**

- 교육자치과 기록관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제공함

□ **근거(관련규정)**

-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2, 제74조의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7조

□ 이행계획

- 기록물 열람 및 대여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물법에 의거 비공개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기록물을 공개
- 기록물의 공개절차는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기록물 공개 실시
 - 정보공개 청구서 온라인 (<http://www.open.go.kr>) 및 오프라인(우편, 방문 등) 수시 접수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③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각종회의, 연수, 교육, 행사를 위하여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재산관리팀)	연락처	380-4149
---------	--------------	-----	----------

□ 근거(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위임사무) 및 제21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 이행계획

- 교육행정 및 연수기관의 시설 사용 요청 시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④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1. 시교육청이 통지할 자료
 - 가. 시교육청 자치법규(자치법규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조직법무팀)	연락처	380-4644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22조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 > 사용자별서비스 > 법무행정서비스에 우리 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가 게재되어 있음
- 추후 공포·시행되는 자치법규도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④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1. 시교육청이 통지할 자료
 - 나. 시교육청 및 산하단체 조직표
 - 다. 교육수첩, 교육통계연보 등 시교육청 발간 각종 간행물(교육지원청 포함)
 2.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통지할 자료
 - 가. 규약·규정의 변경 사항
 - 나.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현황(조합기구표, 조합임원 명단, 전임자 보직 등, 매년 4월 1일, 10월 1일 현재 조합원 수)에 관한 사항
 - 다.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전교조광주지부 신문
- ⑤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서 발송 시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노사협력팀)	연락처	380-4842
---------	--------------	-----	----------

□ 근거(관련규정)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2022.6.28.)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 이행계획

- 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상호 통지할 자료에 대하여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서 발송 시 노조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통보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④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1. 시교육청이 통지할 자료
 - 라.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여건에 관련된 공문
 - 사.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간에 자료제공 요청 시 상호 통지 협조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교섭·협의 사항)

□ **이행계획**

-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여건에 관련된 공문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통지
-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정기전보 관련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통지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④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 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1. 시교육청이 통지할 자료
 - 바.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정책기획팀)	연락처	380-4242
---------	--------------	-----	----------

□ **해설**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자료를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함

□ **근거(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 **이행계획**

-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참석 요청(공문, 메일, 팩스 등)
- 주요업무계획 수립 후 자료 제공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④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1. 시교육청이 통지할 자료
 - 아.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적합한 시설로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할 수 있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재산관리팀)	연락처	380-4148
---------	--------------	-----	----------

□ **근거(관련규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부·매각 등)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이행계획**

- 폐교재산 대부 현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중
 - 시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마당 > 폐교재산활용 > 활용안내 및 폐교현황
- 사용 요청 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⑥ 시교육청은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 **이행계획**

-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2011년 개정)을 개정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연 4회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⑦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주관하는 분회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재산관리팀)	연락처	380-4149
---------	--------------	-----	----------

□ **근거(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위임사무) 및 제21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 **이행계획**

- 분회장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학교의 시설 사용 요청 시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안내

제14조【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교육행사 지원】 시교육청은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생대상 교육활동 또는 교사 전문성 신장 행사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43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2016.2.15. 제4679호)」 제2조, 제3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보조대상 및 금액)

□ 이행계획

- 보조금 사업 지원 절차에 따라 교원노조의 사업 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 성과 및 집행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제15조【교원 노조 참여 보장】 시교육청은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한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협의회, 공청회, 세미나 등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조직법무팀)	연락처	380-4644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 공모)

□ 이행계획

- 현재 각종 위원회 추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 위원 추천 의뢰 시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소관부서의 요구에 맞는 위원을 2배수 추천을 하고 있음
-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공개 모집 추진(2022년 9월 중)
-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인력풀 공개 모집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추천 의뢰 공문 발송

□ 참고사항

- 인력풀 인원: 총 276명
- 교육자치과-10534(2020.11.16.)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인력풀 구성 계획]
- 교육자치과-12229(2020.12.30.)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구성]

제4장 여비, 수당, 근로조건, 후생복지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각종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이행계획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② 시교육청은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한 교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경리팀)	연락처	380-4153
---------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 초과근무수당 등

□ 이행계획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③ 시교육청은 학생을 인솔(소풍,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야영 등)하는 교원의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제 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총무팀)	연락처	380-4112
---------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추진계획

- 교육활동(소풍, 수련활동, 야영, 수학여행, 교외 특별활동 포함) 및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된 각종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
- 출장 중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④ 시교육청은 소속 교원이 인사이동(시·도간 교류)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이전비 및 국내가족여비를 지급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소속 교원의 인사이동(시·도간 교류)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시 이전비 및 국내가족여비 지급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5.9. 타법개정)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인사혁신처예규 제49호(2018.2.1.)
- VI.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이행계획

-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우리시 교육청의 이전비 지급 계획을 수립 안내(3월, 9월) 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 요청하는 경우 계획에 따라 심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⑤ 시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VII. 교육훈련비 지급

□ 이행계획

- 자격연수 여비는 예산 범위 내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시행
- 직무연수 여비는 학교회계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학교에서 지급함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⑥ 시교육청은 출장명령에 의한 교원의 방학 중 연수 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총무팀)	연락처	380-4112
---------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9호 2018.2.1.)」

□ 이행계획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9호)」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 초과근무수당(384쪽 참조) 등에 근거하여 처리

(3)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이 아닌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연수는 출장 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할 수 없음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⑦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가 집행되도록 행정지도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67
---------	-------------	-----	----------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이행계획

- 학교에서 초과근무한 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지도함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⑧ 시교육청은 교원의 출장과 초과근무가 겹치는 경우 허가권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택일을 강요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해설

- 국내 출장 시 시간외근무 지급 여부에 대하여,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음
-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결재권자의 확인서, 대회 주관 기관(단체)의 인솔 학생들 일정 및 활동 시간을 알 수 있는 공문, 시간이 포함된 사진, 영수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이행계획

- 출장 명령 및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상의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게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동시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

□ 참고사항

- 교원인사과-4386(2018.4.24.) [국내 출장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내]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⑨ 시교육청은 각종 수당 및 출장·연수 여비 등에 대한 입금 시 입금기관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송금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경리팀)	연락처	380-4152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각종 수당 및 출장·연수 여비 등에 대한 입금시 입금기관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 ex) 시교육청재복, 동부초등, 교육연수원 등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7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 이행계획

- 재정복지과-17525(2022.7.19.) [2021 단체협약 체결 결과 이행 협조] 공문 시행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⑩ 시교육청은 직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 관련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시교육청은 보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청 주관 보수교육 등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시교육청은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해당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③ 보건교사의 직무

□ 이행계획

- 교육청 주관 보수교육을 위한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로 안내하겠음
-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학교예산으로 편성·지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학교로 안내하겠음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⑪ 시교육청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개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사수당 지급 단가를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1·2팀)	연락처	380-4141
---------	---------------	-----	----------

□ 해설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개정 시 본청 및 산하기관, 각급학교에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도 의견을 받아 검토함

□ 근거(관련규정)

-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IV.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3. 예산편성지침 기준 경비 라. 주요경비 단가 5)일반 강의 강사수당(63p)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방침)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0 (예산편성지침)

□ 이행계획

-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개정 시 의견 수렴(공문, 메일, 팩스 등)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요청(공문)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요청(공문)

□ 참고사항

- 행정예산과-5591(2022.7.4.)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 공동교섭단 전교조 정책실장 메일 송부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⑫ 시교육청은 새학기준비 연수로 복직교원 및 신규임용 교원이 발령 전 복무하는 경우, 합리적 지급 기준을 수립하여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43조 제3항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 이행계획

- 시교육청 주관 임용예정자(신규교사) 대상 연수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 해당 내용에 대해 학교회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해당 학교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겠음

□ 참고사항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280(2021.3.30.)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의견 회신]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⑬ 시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원연구비가 균등하게 10만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5
---------	--------------	-----	----------

□ 해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 기준을 결정함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이행계획

-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조정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필요하므로 교원연구비를 상향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임

□ 참고사항

- 교육부 교원정책과-7785(2021.1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에 대한 법제처 해석 질의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① 시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할 경우 개교하기 전에 개교 준비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2팀)	연락처	380-466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및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이행계획

-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개교시기 결정, 교명결정, 개교경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
- 비품 및 기자재구매위원회 구성·운영
 - 본청 5개과에 구성·운영, 개교 전 최적의 비품 및 기자재 구입
- 교장 및 행정실장 조기 발령
 - 충분한 개교준비를 위하여 교장 및 행정실장 조기(12월 겸임발령, 1월 정식발령) 발령
- 신설학교 개교업무 편람 보급
 - 개교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편람을 보급하여 개교준비
-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기준 개선 예정(2022.9.5.)

□ 참고사항

- 행정예산과-9122(2016.8.10.)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기준 및 비품 및 기자재구매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② 시교육청은 교실의 실내온도와 습도를 관련 규정(하절기 : 26-28℃, 동절기 : 18-20℃, 습도 30-80%)에 따른 적정온도와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신축 및 전면 개축 시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학교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규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설비팀)	연락처	380-4192
---------	--------------	-----	----------

□ 근거(관련규정)

- 노후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 이행계획

- 학교에서 현안사업을 요청할 경우 내구연한,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개선 여부 적극 검토
-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 지원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③ 시교육청은 도로와 소음 발생 시설이 인접한 학교는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을 준수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연락처	380-4885
------	--------------	-----	----------

해설

- 시교육청은 도로와 소음 발생 시설이 인접한 학교는 「학교보건법」 규정에 있는 교사 내 환경위생(소음 포함) 유지관리 사항을 준수함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이행계획

- 도로와 소음 발생 시설이 인접하여 소음 기준이 초과된 학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임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④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실의 조도는 300룩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차광막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설비팀)	연락처	380-4191
---------	--------------	-----	----------

근거(관련규정)

- 한국산업규격(KS) 조도기준(KSA 3011)에 의함
- 학교 교실조도 기준: 300룩스 이상

이행계획

- 신·증축 및 개축 보수공사 시 교실조도는 300룩스 이상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현안사업을 요청할 경우 내구연한,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개선 여부 적극 검토
-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 지원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보건실, 과학실험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컴퓨터실, 어학실, 시청각실 등을 학교 규모에 따라 시설 확충이 가능한 경우 적정 수준으로 확보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1팀)	연락처	380-4184
---------	---------------	-----	----------

근거(관련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건축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 이행계획

- 학교에서 요청 시 유희교실 및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확보함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⑥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의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1. 기존학교의 경우 교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규정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해소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연락처	380-4885
------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 이행계획

- 기존 학교는 체육복지건강과(현 안전총괄과)와 연계·협력하여 공기정화장치를 2021년까지 설치 완료함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⑥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의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2. 기존학교 시설 개·보수 시 교실 내장재를 친환경상품으로 교체하고, 신축학교는 개교 2개월 전에 완공하여 실내공기 오염 최소화에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1팀)	연락처	380-4198
---------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 교육시설과-10216(2020.12.11.)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기준(안) 수립]
- 노후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 이행계획

-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 사업 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공사 중 공기질 측정을 통해 실내 오염 최소화
- 교육환경개선 사업시 친환경 자재 사용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⑦ 시교육청은 교무실(학년 연구실 등)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확대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소관부서	교육시설과(시설기획팀)	연락처	380-4174
------	--------------	-----	----------

□ 이행계획

- 단위학교 예산 편성 시 사무기기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권장
 - ※ 교무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대상 학교는 사무기기 구매 가능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⑧ 시교육청은 단위학교가 각 교실에 연차적으로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여 교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연락처	380-4884
---------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이행계획

- 단위 학교 예산편성 시 진공청소기 비치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권장하여 학교의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⑨ 시교육청은 『학교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친환경소재로 교체하고,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매년 일반교실과 특별실 등의 실내 공기 오염 발암 유발 물질(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시설기획팀)	연락처	380-4196
---------	--------------	-----	----------

□ 근거(관련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 이행계획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2014년 전체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 석면사용 건축물에 대하여 ‘27년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중임
- 또한, 석면건축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0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 있으며, 석면 건축자재가 철거되기 전까지는 교육부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실내 공기질 매년 2회 이상 측정하여 안전학 학교 조성: 전체학교(측정항목: 18개 항목)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⑩ 각 학교별로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 공간(100명이상 수용 가능한)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진학팀)	연락처	380-4572
---------	------------	-----	----------

□ 해설

-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완전 선택제 시행에 따라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을 선택한 학생에 대한 독서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방과후학교 등을 선택하지 않고 자율학습을 참여하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 이행계획

- 학교 도서관 및 학교의 특정 공간(기숙사 등)을 리모델링하여 365-스터디룸 공간(100석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상 학교 선정(‘교육시설과’와 협조)
- ‘교육시설과’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확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 365-스터디룸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함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⑪ 시교육청은 학교를 신축할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설비팀)	연락처	380-4191
---------	--------------	-----	----------

□ 근거(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 이행계획

-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계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고 있음
- 노후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⑫ 시교육청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 취약대상(장애학생, 유치원생 등)이 있는 시설부터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시설기획팀)	연락처	380-4196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과-7454(2019.9.30.)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 수립]

□ 이행계획

- 관내 단설유치원 전체 및 특수학교(5교 중 4교)는 내진성능이 확보 완료
- 특수학교 1교는 2022년 내진보강사업 추진 중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⑬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사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간외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해설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VI.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 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3장 근무일과 공휴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 이행계획

- 시간외근무 명령 상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 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⑭ 시교육청은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1.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관리자 전용 주차구역 지정’을 비롯한 ‘법적 근거 없는 특정인을 위한 주차구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시교육청은 학교 시설 운영 시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1팀)	연락처	380-4182,198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과-10216(2020.12.11.)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기준(안) 수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계획」

□ 이행계획

-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 사업 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보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계획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정비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⑮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 청소용역 업체를 이용하여 단위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전반에 관한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연락처	380-4884
---------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이행계획

- 단위 학교 예산편성 시 학교시설 전반에 관한 대청소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권장하여 학교의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⑯ 시교육청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는 조속히 설치하고, 모든 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시설기획팀)	연락처	380-4196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과-9807(2021.11.15.) [2022~2026년 엘리베이터 미설치학교 설치 계획 수립]

□ 이행계획

- 2016부터 엘리베이터 미설치 학교 53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 엘리베이터 연도별 계획(2022~2026)에 따라 학교별 여건(특수학급 여부, 학교 배치) 및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⑰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체육관 겸 강당을 연차적으로 시설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2팀)	연락처	380-4175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과-10216(2020.12.11.)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기준(안) 수립]

□ 이행계획

- 현재 모든 학교가 체육관 겸 강당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고 통합으로 사용 중인 학교는 증축 부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설

제18조【업무 교육 환경 구축】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 등을 위하여 교사가 필요로 하는 설비와 교무업무의 편의를 위한 기자재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1. 시교육청은 교사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등) 보호와 업무시간 외의 과도한 민원 전화 근절을 위해, 교사에게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2항
-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생활 보장)

□ 이행계획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사업이 권장 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학교가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

제18조【업무 교육 환경 구축】 ②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시교육청은 1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된 내용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37 380-4315
---------	------------------------------	-----	----------------------

□ **해설**

- 연구 결과 및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

□ **근거(관련규정)**

- 「2022 광주교육 주요시책」 5-라. 안정적 교육 기반 조성

□ **이행계획**

- 교사들의 근무 환경개선 관련 정책 연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관련 정책 연구 결과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8조【업무 교육 환경 구축】 ③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사망 사건 등 교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학교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이행계획**

-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상담전문가, 협약된 전문상담위원(상담기관)·전문병원 연계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과 치료 지원
-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교원에게 안내

제19조【학교 시설 안전 진단】 ① 시교육청은 모든 공립학교 및 사업소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립학교는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② 시교육청은 제1항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상 및 위험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2팀)	연락처	380-4188
---------	---------------	-----	----------

□ **해설**

- 모든 학교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위험 요소 발견 시 신속한 조치 요청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이행계획**

- 학교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하여 매년 3회(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점검 결과 이상 및 위험 시설에 대하여 즉시 조치 및 조치 완료 때까지 관리

제20조【학교정보화 지원】 ① 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교무실 및 교원연구실을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하고, 해당 학교장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정보보호팀)	연락처	380-4494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무실 및 교원연구실에 무선AP를 설치하고, 해당 학교장이 운영·관리하도록 지도함

□ **근거(관련규정)**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 정보보안기보지침 제46조(무선랜 보안관리)

□ **이행계획**

- 2020년~2022년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으로 전체학교 교수학습공간(일반교실, 특별교실, 교과교실 등) 및 교원지원공간(교무실, 수업연구실 등)에 무선AP 설치를 완료함(2022년 사업은 2022.11월 완료 예정)

□ **참고사항**

- 교육자치과-7627(2022.8.8.) [2022년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공사 일정 안내 및 출입 협조 요청]

제20조【학교정보화 지원】 ②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원의 개인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각급학교에서 특정 업체에 학생·교원의 가입을 전제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정보보호팀)	연락처	380-4494
---------	--------------	-----	----------

□ **해설**

-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하여 학생·학부모·교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함

□ 근거(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이행계획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하여 각급 학교(기관) 안내 공문 시행
- 매년 각급 학교(기관) 개인정보보호 이행 실태 점검 실시
- 각급 학교(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실시

□ 참고사항

- 교육자치과-1886(2022.2.25.)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안내] 공문 발송
- 교육자치과-1966(2022.2.25.) [(안내) 2022년 상반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및 홍보 포스터 안내] 공문 발송
- 교육자치과-5512(2022.6.14.) [(안내)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및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 안내] 공문 발송

제20조【학교정보화 지원】 ③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원이 메신저·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을 허용하고, 웹하드와 P2P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시 '비업무용 사이트 접근 허용 신청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정보보호팀)	연락처	380-4493
---------	--------------	-----	----------

□ 해설

- ‘각급 학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활동 및 상담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 정책’에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 및 지원하도록 하는 것임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인터넷 사용제한)

□ 이행계획

- 각급 학교에 ‘비업무용 사이트 접근 차단 정책 안내’ 공문 발송 및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 목적으로 메신저, 클라우드 서비스, 상용E-Mail 허용(2018.3.29.부터 시행)

□ 참고사항

- 교육자치과-2694(2018.3.29.) [비업무용 사이트 접근 차단 정책 안내]
- 교육자치과-8323(2020.9.14.) [(알림)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업무용 사이트 접근 차단 정책 안내]

제20조【학교정보화 지원】 ④ 학교에 정보화기기 예산 지원 후에 통합구매를 원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희망을 받아 추진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자체 구매를 추진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정보보호팀)	연락처	380-4492
---------	--------------	-----	----------

근거(관련규정)

- 재정지원과-14751(2016.5.9.) [예산 절감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물품 통합계약 추진계획]
- 교육자치과-1315(2022.2.8.) [2022년도 노후 정보화기기 예산지원 및 통합구매 추진계획]

이행계획

- 2022년도 노후 정보화기기 예산지원 및 통합구매 추진계획 수립 후 공문으로 안내함

참고사항

- 교육자치과-1315(2022.2.8.) [2022년도 노후 정보화기기 예산지원 및 통합 추진 계획]
- 교육자치과-1388(2022.2.10.) [2022년도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지원을 위한 통합 구매 수요조사]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① 시교육청은 교원용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 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 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1팀)	연락처	380-4184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과-952(2012.2.10.) [각급학교 시설기준면적 조정(안)]

이행계획

- 신축 및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설 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예산을 확보 후 설치함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② 시교육청은 교원의 휴게실에는 필요한 비품(소파, 탁자, TV, 침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냉·난방, 안마의자 등) 등을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연초에 실태를 파악하여 휴게실이 없는 학교는 휴게실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1. 성별에 따른 교원 휴게실을 마련하고 정비하도록 지도한다.
2. 휴게실 정비 및 비품 구입에 있어서 교직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1팀)	연락처	380-4176
---------	---------------	-----	----------

□ 근거(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이행계획

- 매년 교원 휴게실 현황을 파악하여 공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원 의견수렴 등 학교의 요구에 따라 성별에 따른 교원 휴게실을 확보함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③ 시교육청은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체육 시설·기구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헬스실 등)을 설치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5
------	--------------------	-----	----------

□ 해설

- 여유 공간을 활용한 체력단련시설 설치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하여 학교 내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각급 학교장은 유휴공간을 파악하여 교육청에 보고

□ 근거(관련규정)

- 「2021 공동교섭단과의 단체협약」 (2022.6.28.)

□ 이행계획

- 학교 내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공간 확인 및 조사를 위한 공문 발송
- 유휴공간이 있으며, 체력단련시설을 설치 수요가 있는 학교에 한하여 체력단련시설 설치 예산 확보 권장 공문 발송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④ 시교육청은 「국민건강 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진단 항목에 성인병(4대 암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인사팀)	연락처	380-4118
---------	----------	-----	----------

□ 근거(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 **이행계획**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음

암 종	위 암	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연 령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여성	만20세 이상 여성
검진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 건강검진 비용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암검진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90%, 수검자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있음(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 부담)

□ **참고사항**

- 총무과-5816(2022.4.11.) [2022년도 건강검진 실시 협조 요청]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⑤ 시교육청은 교직원과 그 가족의 연수 및 휴양 복지를 위해 휴양시설과 계약을 맺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총무팀)	연락처	380-4104
---------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및 제86조(사업의 위탁)
-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26732(2019.5.23.)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 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 및 홍보 안내」

□ **이행계획**

- 공무원연금공단 제휴를 통해 공무원은 금호리조트, 더케이호텔 등 전국 68개의 숙박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
- 우리 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그 가족은 교육청 소속기관인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청풍수련장 포함),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숙박시설을 저렴한 가격(1박당 2~5만원)으로 이용 가능(매년 해당 기관 안내)
- 우리 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19.5.)’에 따라 서울학생교육원 등 전국 총 19개소 수련·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 가능(재안내 예정)

□ **참고사항**

- 공무원연금공단 제휴복지서비스 누리집 (<https://www.gwp.or.kr/coprn/coptSvcMainRn.jdo>)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⑥ 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복지비가 교육부의 규정대로 지급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 제도의 선택적 기본 항목(입원 의료비 보장 보험 등)의 적용 여부 및 보장 내역을 전 교직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인사팀)	연락처	380-4118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이행계획

- 사전에 전 교직원이 맞춤형복지입원의료비 항목 등을 맞춤형복지포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참고사항

- 총무과-12437(2022.8.22.) [2022년도 맞춤형복지 개인별 단체보험 선택 실시 안내]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⑦ 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교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 시 세부사업 표준안에 교직원의 후생복지비 예산편성 항목을 설정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67
---------	-------------	-----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행계획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명시
 -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세부사업) 교직원복지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⑧ 시교육청은 인후염·성대 결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연락처	380-4386
---------	--------------------	-----	----------

□ 해설

- 교사의 인후염·성대 결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과학실 등 특별실에 마이크 및 앰프를 설치하여 교사의 건강을 보호한다.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 교구·설비 기준」

□ 이행계획

- 수업공간이 큰 과학실에 마이크, 앰프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 교구·설비 기준에 권장사안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과학실 점검 시 방송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여 없는 경우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설학교 과학실 및 과학실 현대화 사업(창의융합형 과학실, 지능형 과학실 구축) 추진 시 방송장비(마이크 및 앰프) 설비 지원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⑨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영 및 위탁 경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의 이용 및 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교직원이 무료 입장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2
------	--------------------	-----	----------

□ 해설

- 시교육청에서 후원하는 각종 체육행사 시 교직원의 무료 참여 및 할인 혜택에 관한 사항을 관련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음

□ 이행계획

- 공모사업 또는 체육관련 위탁 단체 선정 시 교직원 무료입장 및 할인 혜택을 제시한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⑩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을 다음과 같이 연1~2회(동·하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1. 체육담당교사: 체육복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2
---------	--------------------	-----	----------

□ 해설

- 체육교과(전담)담당 교사의 체육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운영비에 편성하여 교과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함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이행계획

-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통한 관련 내용 안내
-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학교에 인쇄물 제공

참고사항

- 2022학년도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2022.2.)에 반영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⑩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 구입을 위해 적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연 1~2회(동·하계) 각 학교 기본운영비 등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2. 과학교사, 기술·가정교사, 전문교과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연락처	380-4386
---------	--------------------	-----	----------

해설

- 과학교사의 피복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권장 안내

이행계획

- 과학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실험복)는 학생 실험복 구입비와 함께 학교 예산의 과학실험·실습비에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교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과학실 안전계획에 명시하여 안내할 예정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⑩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 구입을 위해 적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연 1~2회(동·하계) 각 학교 기본운영비 등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2. 과학교사, 기술·가정교사, 전문교과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2
---------	--------------	-----	----------

해설

- 전문교과교사와 기술·가정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실험복)는 학교예산의 실험·실습비에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근거(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이행계획**

- 전문교과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실험복)는 학교예산의 실험·실습비에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4012(2022.2.16.)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안)]
- 중등교육과-662(2022.1.10.)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관리계획(안)]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⑩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을 다음과 같이 연1~2회(동·하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2. 과학교사, 기술·가정교사, 전문교과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7
---------	--------------------	-----	----------

□ **해설**

- 보건교사의 응급처치나 건강관리 시 혈액이나 오물 등으로 인하여 복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건실 운영 및 보건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운영비에 편성하여 학교보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함

□ **이행계획**

- 학교보건기본방향 수립 시 내용을 반영
- 학교보건기본방향 설명회를 통한 관련 내용 안내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⑩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 구입을 위해 적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연 1~2회(동·하계) 각 학교 기본운영비 등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2. 과학교사, 기술·가정교사, 전문교과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6
---------	---------------	-----	----------

□ **해설**

- 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계획 등 수립 시 급식전담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각급학교에 안내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 기본계획」
- 「학교 무상급식 추진계획」

이행계획

- 학교급식 기본계획 등 수립 시 급식전담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각급학교에 안내

참고사항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p.12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⑪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사 휴게실 확충 또는 개선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산을 지원해 교사휴게실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1팀)	연락처	380-4198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과-10216(2020.12.11.)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기준(안) 수립]
- 노후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행계획

-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 사업 시 남·여 교사 휴게실 설치
- 현안 사업 요청
- 노후시설에 대한 현안 사업 검토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⑫ 시교육청은 교원의 건강증진과 후생 복지를 위해 유급 안식년제 정책 연구 및 여건 조성 활동에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37 380-4315
---------	------------------------------	-----	----------------------

해설

- 교원 대상 안식년제도 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준비사항 추진

근거(관련규정)

- 현재 유급 안식년제 운영 근거 법령 없음

이행계획

- 교육공무원 안식년제 운영 법제화 추진 시 현장 교원 의견수렴
- 안식년제 운영 관련 정책 연구 추진 여부 검토
- 현행 법령에 근거한 유사 정책 지속 추진: 학습연구년(특별연수), 자율연수휴직 등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⑬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의 학교 운영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민주적으로 집행 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67
---------	-------------	-----	----------

해설

- 각급 학교에서 학년별 교재연구실에 손님 접대용 차 구입 등 교직원의 학교운영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적으로 집행 되도록 지도함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행계획

-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내 교육 및 회계역량 강화 교육 시 구체적 사용 예시 안내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⑭ 시교육청은 매년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편성할 시 1인당 맞춤형복지비를 전년도 17개 시도교육청 맞춤형복지비 평균액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인사팀)	연락처	380-4118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이행계획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맞춤형복지 예산을 17개 시도교육청 맞춤형복지비 평균액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3년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200점 인상(700→900점) 및 출산축하점수 100점을 신설할 계획임

<2022년 시도별 맞춤형복지점수 >

연번	교육청	기본	근속1)	가족					출산축하				난임지원(1회)	태아-산모검진(자녀당 1회)
				배우자	직계존속	첫째	둘째	셋째이상	첫째	둘째	셋째이상	넷째이상		
1	강원	900	150~350	100	100	100	200	300	1,000	3,000	5,000	-	500	100
2	인천	810	10/1년	100	50	50	100	200	1,000	2,000	3,000	-	500	100
3	울산	800	10/1년	100	50	50	100	200	-	2,000	3,000	-	500	100
4	충남	800	10/1년	100	50	50	100	200	1,000	3,000	5,000	-	500	100
5	충북	800	10/1년	100	50	50	100	200	1,000	2,000	3,000	-	500	100
6	대전	800	10/1년	100	50	50	100	200	-	2,000	3,000	-	500	100
7	경북	800	10/1년	100	50	50	100	200	1,000	2,000	3,000	4,000	500	100
8	광주	700	10/1년	100	50	50	100	200	-	2,000	3,000	-	500	100
9	서울	700	10/1년	100	50	50	200	300	-	2,000	3,000	-	500	100
10	세종	700	10/1년	200	50	50	100	200	-	2,000	3,000	-	500	100
11	부산	700	10/1년	100	50	50	100	200	-	2,000	3,000	-	500	100
12	경기	700	10/1년	100	50	50	100	200	-	2,000	3,000	-	500	100
13	전남	700	10/1년	100	50	50	100	200	1,000	2,000	3,000	-	-	-
									출산 후 1년 이상 거주시					
									+1,000	+1,500	+2,000			
14	전북	700	10/1년	100	50	50	100	200	1,000	2,000	3,000	-	500	100
15	대구	650	10/1년	100	50	50	100	200	-	2,000	3,000	-	500	100
16	경남	600	10/1년	100	50	50	100	200	-	2,000	3,000	-	500	100
17	제주	600	10/1년	100	50	50	100	200	-	2,000	5,000	7,000	500	100

□ 참고사항

- 총무과-3172(2022.2.22.) [2022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알림]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⑮ 시교육청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가가 사용·승인되도록 하고 별도의 조건(치료기간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학교장을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해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병가의 운영 방법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6조(병가)

□ **이행계획**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고, 운영 방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안내

제22조【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침해 방지】 ① 시교육청은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하는 범위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 사고로 인한 소송 발생 시 해당 교사가 교육청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관부서	교육자치과(조직법무팀)	연락처	380-4633
------	--------------	-----	----------

□ **해설**

-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하는 범위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 사고로 인한 소송 발생 시 해당 교사가 교육청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고문 변호사의 직무) 4호

□ **이행계획**

- 2022.3.22.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5명 위촉(위촉기간 2022.4.1.~2024.3.31.)
- 교육자치과-3110(2022.3.30.)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안내]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자치과-공개자료실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공동연수 시 안내

□ **참고사항**

- 민주시민교육과-6962(2022.5.2.) [교권보호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청구 안내] 참조

제22조【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침해 방지】 ②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에 응급을 요하는 학생에 대비한 응급구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 지침(비용부담, 처치요령, 이송교사의 복무처리 등에 대한)을 마련하여,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와 초진비를 모든 학교가 학교회계에 편성하도록 하고, 환자 이송 교사는 출장 처리 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6
---------	--------------------	-----	----------

□ **해설**

- 응급구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여, 학생의 후송비와 초진비를 모든 학교가 학교회계에 편성하도록 하고, 환자 이송 교사는 출장 처리 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함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이행계획**

- 응급구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과 학생의 후송비와 초진비를 모든 학교가 학교회계에 편성하도록 하고, 환자이송 교사는 출장 처리 하도록 공문 시행

제23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개선】 ① 시교육청은 안전사고로 인한 안전공제회에 대한 보상금지급 신청을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안전총괄과(안전관리팀)	연락처	380-4875
---------	--------------	-----	----------

□ **해설**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신청을 학교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 가능

□ **근거(관련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이행계획**

-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보상금 신청시 학교장을 경유하지 않고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에서 교사, 학부모가 '학부모 시스템 로그인' 또는 '공제급여 청구서 다운로드'하여 청구하고 있음
- 매년 학교안전공제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공제급여 청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음

제23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개선】 ②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각종 교외 교육활동 과정 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직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의 소송발생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안전총괄과(안전관리팀)	연락처	380-4875
---------	--------------	-----	----------

□ **해설**

- 교육활동 관련 학교안전사고 중 교직원 개인에게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 구상하지 않고, 교직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 되었을 시 소송비용에 대하여 보전

□ **근거(관련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교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도 없음
- 교직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전하고 있음

제23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개선】 ③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에 학교장의 사고발생통지서,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지급한다.			
담당부서(팀)	안전총괄과(안전관리팀)	연락처	380-4875

□ **해설**

- 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청구서 서식과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지급

□ **근거(관련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이행계획**

-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 청구서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지급하고 있음

제23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개선】 ④ 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심판위원회 위원 구성 시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할 경우 1인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담당부서(팀)	안전총괄과(안전관리팀)	연락처	380-4875

□ 근거(관련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제3항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전문직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6.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이행계획

- 차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임기: 2023.9.1.부터 2년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할 경우 1인에 한하여 위원으로 위촉

제5장 교육여건의 조성 및 지원

제24조【재난 시기 교육과정 운영】 ① 시교육청은 재난시기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부 지침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2
---------	----------------	-----	----------

□ 해설

- 교육청은 재난시기 교육과정 운영시 교육부 지침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근거(관련규정)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618(2022.2.7.)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알림]
- 중등교육과-3904(2022.2.15.) [2022학년도 1학기 오미크론 대응 중등 학사운영 방안 협의회 참석]
- 중등교육과-3976(2022.2.15.) [2022학년도 1학기 오미크론 대응 중등 학사운영 방안 알림]

□ 이행계획

- 재난시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 등 운영

제24조【재난 시기 교육과정 운영】 ② 시교육청은 재난시기 각급학교 지원방안에 대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안전총괄과(안전관리팀)	연락처	380-4872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재난 시기 각급 학교 지원방안에 대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조례」 제3조

□ 이행계획

- 재난 시기에 각급학교에 지원 사안 발생 시 의견 요청(공문, 메일, 팩스 등)
- 지원방안 수립 후 필요시 자료제공

제25조【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① 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상위 수준(최대 20명이내)이 되도록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하고, 학교당 학급수를 초등학교는 최대 36학급, 중등학교는 최대 24학급 이하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1·2팀)	연락처	380-4132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 이행계획

-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 수준(최대 20명 이내) 교원 정원 확보
 - 교원 정원 확보: 미래교육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정원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교육부 건의 등) 노력
 - 학급당 학생 수: 교원 현황, 각급 학교 배치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수 지속적으로 감소하도록 노력

○ 적정 규모 학급 유지

- 신규 대규모 주택개발지구는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경우 교실 증·개축 추진
- 초등학교는 통학구역 조정, 중학교는 학교군 내 분산 배정 등을 통해 학생 배치

□ 참고사항

- 행정예산과-9683(2021.9.13.) [2022~2026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 수립]

제25조【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② 시교육청은 유아배치여건, 연도별 유아수 추이, 교원수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1. 만5세 20명 이하
2. 만4세 18명 이하
3. 만3세 14명 이하
4. 혼합연령 16명 이하
5. 특수유아는 정원에 포함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2팀)	연락처	380-4663
---------	---------------	-----	----------

□ 근거(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수)

□ 이행계획

- 2022학년도에 학급당 유아 수를 만3세 18명에서 16명으로, 만5세 25명에서 24명으로 감축함
- 2023~2025년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유아배치 여건과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한 학급당 유아 수 기준 마련
 - 우리시 출생 유아 수 추이, 원아 모집 현황, 유아 수용 여건, 타시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선안 마련
 - 학급당 유아 수 감축으로 인하여 취원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유아배치 시설 확충 병행

□ 참고사항

- 행정예산과-11706(2021.10.29.) [(알림)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변경 알림]

제25조【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③ 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 편성기준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법정 정원 이하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단, 전공과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편성기준이 하향되었을 경우 학급을 증설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2팀)	연락처	380-4662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이행계획

- 유·초·중·고등학교·전공과 과정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준수하여 학급 편성하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배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각급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교육대상자가 이미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보다 주거지와 가까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 신설을 요청할 경우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수학급 신설 노력
-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편의 및 통합학급과의 교류가 원활하고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노력

□ 참고사항

- 행정예산과-13095(2021.12.3.) [2022학년도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유아특수교육과-11324(2022.8.8.)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운영 계획 수립]

제25조【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④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1팀)	연락처	380-4132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 이행계획

- 학급 배정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공동주택 입주 현황, 신입생 입학 현황, 학교 배치시설 현황,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 초등학교 학급 배정 전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

□ 참고사항

- 행정예산과-404(2022.1.11.) [2022학년도 초등학교 학급배정 관련 전교조와의 협의회 결과 보고]
- 행정예산과-690(2022.1.19.) [2022학년도 1학기 공립 초등학교 학급배정]

제25조【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⑤ 시교육청은 대규모 주거단지 신설에 따른 원거리 통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를 이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1팀)	연락처	380-4132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 이행계획

- 대규모 주거단지 신설 시 학생 배치
 -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인근학교 분산 배치가 어려울 경우 초등학교는 2개(4천세대 내지 6천세대)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중·고등학교는 3개(6천세대 내지 9천세대)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학교 신설
 -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나 증·개축 추진
- 학생 통학구역 조정
 -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하여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조정하여 학생 재배치

□ 참고사항

- 행정예산과-15393(2019.12.16.)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에 따른 신가초등학교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계획]
- 행정예산과-6318(2020.6.1.) [경양초 이전재배치 추진계획(안)]
- 행정예산과-1034(2022.1.27.) [(가칭)선운2초등학교 신설 기본 계획(안) 수립]

제25조【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⑥ 시교육청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별 학급수를 감축할 때는 사립을 예외로 두지 않으며, 원거리통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수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1·2팀)	연락처	380-4134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 이행계획

- 적정 규모 학급 유지
 - 중등학교 학생배치시설 여건에 따라 학교군별 학생배치지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배정(사립을 예외로 두지 않음)

□ **참고사항**

- 행정예산과-526(2022.1.14.) [2022학년도 중학교 학급 배정(안)]
- 행정예산과-1190(2022.2.4.) [202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 조정(안)]

제26조【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 ①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각급 학교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것과 학교 간 과목 간 수업시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및 학교 간 과목 간 수업시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61호, 2022.3.2. 일부개정)

□ **이행계획**

-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 순회(겸임)교사제 운영을 통한 수업 시수 균형 유지
-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

제26조【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 ②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교과전담 교사를 법정 정원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교과전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교과전담 교사를 법정 정원대로 확보하도록 노력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61호, 2022.3.2. 일부개정)

□ 이행계획

- 교육부 배정 정원 범위 내에서 학급담당교사 배치 후 남은 교사로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되, 학교별로 3학년 이상의 학급수, 교원들의 수업시수 경감과 업무 경감을 고려한 교담 교사 정원 추가 배정 사유를 참조하여 배정하며, 교육지원청은 배치 기준에 따라 학교별로 조정하여 배치함

제26조【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 ③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교무실무사가 연차적으로 배치되도록 지도하고,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5
---------	----------------	-----	----------

□ 근거(관련규정)

-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 이행계획

- 교장, 교감 연수 시 교무행정지원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안내
- 교무실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연수 실시

제26조【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 ④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실시를 위해 의무교육 대상 다음 학교에 영양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정원을 확보토록 노력한다.

1. 의무교육 대상학교
2. 신설 학교
3. 교육공무직 퇴직 및 퇴직 예정학교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334 380-4178
---------	-------------------------------	-----	----------------------

□ 해설

- 의무교육 대상 학교에 영양교사 우선 배치 및 정원 확보 노력
- 신설학교와 교육공무직 영양사 퇴직 학교 등에 영양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 **이행계획**

- 초등 125명, 중등 21명, 특수 3명 총 149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는 영양사 및 일반직이 배치되어 있음 기존 교육공무직원 배치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와 부칙을 준수하면서 영양교사 정원확보 노력 중
- 관련 부서와 함께 신설학교와 교육공무직 영양사 퇴직 학교 등에 영양교사 배치 추진 중

제26조【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 ⑤ 시교육청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 여론에 대응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정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교원정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며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61호, 2022.3.2. 일부개정)」

□ **이행계획**

-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제26조【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 ⑥ 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 구현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관하도록 노력하고, 학생참여 행사는 학교교육계획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482 380-4342
---------	---------------------------------	-----	----------------------

□ **해설**

- 학교업무정상화 구현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관하도록 노력하고, 학생참여 행사는 학교교육계획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적극 안내

□ 근거(관련규정)

- 「2022 광주교육 주요업무」 5-나-1 학교업무정상화 정착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②학교업무 효율성 제고’에 명시
 -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외 별도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양
 - 학교 행사 및 교육청 시책사업은 가급적 학년·학급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운영

□ 이행계획

- 방과후학교 및 돌봄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관하도록 노력
- 학교 내 각종 대회나 학생참여 행사는 학교교육계획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적극 안내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노력
-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방과후활동 모델 구상

□ 참고사항

- 정책기획과-1982(2022.2.22.) [(중요 알림)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안내]

제26조【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 ⑦ 시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이 보결수업 담당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학교 교육정상화에 만전을 기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보결수업 담당 강사 임용을 위해 학교회계에 예산 편성하도록 지도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이행계획

-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의 운영 지침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하여 이행 중

□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22.1.1.)」
-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27조【보결전담 교사제 확대 및 보결수업비 지급】 ①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의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순회기간제교사 연초인원을 1년 동안 유지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해설

-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하여 순회기간제교사 운영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이행계획

- 정규교원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고,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회기간제 배장(동부교육지원청 16명, 서부교육지원청 30명)
-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및 지원(1년 단위로 임용)

제27조【보결전담 교사제 확대 및 보결수업비 지급】 ② 시교육청은 중등학교 교사의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하여 기간제·강사 인력풀제를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5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임용)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이행계획

- 기간제인력풀 운영 중
 - 연 1회 선발전형을 통해 합격자 선발 후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 수시 등재
- 강사 인력풀 운영 중
 -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강사 인력풀 운영

제27조【보결전담 교사제 확대 및 보결수업비 지급】 ③ 시교육청은 유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 보결수업 담당 강사를 학교 규모에 맞게 임용하도록 지도하며,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업을 한 교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당 적정액(10,000원)의 보결수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통해 안내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보결수업 담당 강사 임용 및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 보결수업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보결수업수당 지급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이행계획**

-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의 운영 지침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하여 이행 중

□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22.1.1.)」
-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28조【상치교사제 폐지와 순회전담교사 배치 기준】 ① 시교육청은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교사를 순회전담교사로 배치하여 상치교사를 줄이도록 한다. 단, 순회학교는 가급적 2개교로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 **이행계획**

- 학교의 순회(겸임) 지원 요청 시수 및 지원 가능 시수를 고려하여 순회(겸임)교사를 배치하되, 가급적 2개교 이내 순회(겸임) 배치

제28【상치교사제 폐지와 순회전담교사 배치 기준】 ② 시교육청은 순회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지원청에 순회교사 연구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2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이행계획

- 학교의 순회(겸임) 지원 요청 시수 및 지원 가능 시수를 고려하여 순회(겸임)교사를 배치하되, 가급적 2개교 이내 순회(겸임)하도록 배치

참고사항

-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순회교사의 연구 공간 마련

제28조【상치교사제 폐지와 순회전담교사 배치 기준】 ③ 시교육청은 순회교사가 각종 직무연수 및 출장 관련 여비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2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이행계획

- 소속 학교장은 순회교사의 출장 근무를 근거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일비) 지급
- 시교육청은 순회(겸임)교사의 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에 지원

제28조【상치교사제 폐지와 순회전담교사 배치 기준】 ④ 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등 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해설

- 교과전담교사 확대 노력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학급담당교원)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61호, 2022.3.2. 일부개정)」

□ **이행계획**

- 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배정 정원 범위 내에서 학급담임교사 배치 후 남은 교사로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되, 학교별로 3학년 이상의 학급수, 교원들의 수업시수 경감과 업무 경감을 고려한 교담 교사 정원 추가 배정 사유를 참조하여 배정하며, 교육지원청은 배치기준에 따라 학교별로 조정하여 배치

제29조【기간제교사·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①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임용하되 그 임용비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 현황을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가 요청 시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에 자료를 제공한다.

③ 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수립 및 개정 시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계약제교원의 복무와 처우를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는 단위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치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중등에 있어 1개월 미만의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학교장이 시간강사를 임용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예산 편성시 시간강사 인건비를 반영토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시교육청은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의 해임이 불가피한 경우, 해임되는 기간제교사가 희망할 경우 우선 임용되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⑨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방학 중 임용과 보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2.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자라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라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3.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지만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 중 임용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에도 업무를 부여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단, '방학기간 중 업무 부여'는 근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41조 연수를 활용하여 기간제교원의 연수 기회를 보장한다.

⑩ 시교육청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제 교원관련 임용기간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⑫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퇴직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 퇴직금 지급

2.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3년 이내의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⑬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임용계약 기간 중 해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계약 해지 사유 중 임의 해직 사유 삭제

⑭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휴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연가: 계약 당해연도에는 계약기간에 따른 일수 산정, 재계약 후에는 재직기간으로 산정

2. 병가: 계약기간에 따른 최대 병가 일수1년 60일 기준, 1월 5일씩 산정

3. 특별휴가, 출산휴가 : 정규직 교원과 동일 적용

4. 출산예정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대한 차별적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5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임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이행계획

-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반영하여 이행 중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2.1.1.)」

제29조【기간제교사·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⑥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 대하여 직무연수 이수를 허용하고 일선학교에서 자율연수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5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5797(2017.8.11.)

이행계획

- 기간제 교사의 경우 직무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자율연수비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참고사항

- 「2022학년도 초·중등 인사업무 처리지침」

제29조【기간제교사·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⑪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복지 포인트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인사팀)	연락처	380-4118
---------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 이행계획

- 시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점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2022년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 지급 내역
 - 기본점수 700점 (교원과 동일, 2021년 대비 100점 인상)
 - 근속복지점수 300점 이내
 - (2022년 신설) 가족복지점수

□ 참고사항

- 총무과-3172(2022.2.22.) [2022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알림]

제30조【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 수당 지급】 시교육청은 표준수업시수(초등학교 20시수, 중학교 18시수) 법제화를 위하여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부에 건의하며 표준수업시수가 마련되면 이를 초과한 수업만큼 결·보강 수당을 지급하거나 강사채용을 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교육부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하여 건의하며 이를 초과한 수업만큼 결·보강 수당을 지급하거나 강사채용 노력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61호, 2022.3.2. 일부개정)

□ **이행계획**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제31조【유·초·중·고 학교평가제 개선】 ① 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평가 방법을 폐지하고, 학교 정보 공시 활용 및 설문평가 방법을 채택하되, 학교 자체평가 보고서는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를 서열화 하지 않는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 평가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인사가 특수, 유·초·중·고 급별로 1인씩 학교평가기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정책기획팀)	연락처	380-4243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평가의 기준)

□ **이행계획**

- 학교평가를 학교로 권한이양하여 학교에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 학교 방문 평가, 학교별 서열화, 설문평가, 학교자체평가 보고서, 학교평가기획위원회 모두 폐지하였음

제32조【교육양극화 해소】 ① 시교육청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아래 항을 이행한다.
 1.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학교(초,중)교육복지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배치한다.
 2.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팀)	연락처	380-4822
---------	------------------	-----	----------

□ **해설**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협력형학교)는 프로그램 진행비를 지원하고, 시교육청 교육복지사와 협력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근거(관련규정)**

- 교육부 훈령 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 (2020.5.1. 시행)
- 광주광역시교육청 제5630호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2.26. 제정)
- 「202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 시민참여담당관-603(2022.1.24)

□ **이행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협력형학교)는 시교육청 교육복지사를 지정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 시교육청 노동정책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제32조【교육양극화 해소】 ②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의 해당업무가 담당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팀)	연락처	380-4822
---------	------------------	-----	----------

□ **해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가 담당교사에게 집중되지 않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복지전담부서와 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거(관련규정)**

- 교육부 훈령 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 (2020.5.1. 시행)
- 광주광역시교육청 제5630호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2.26. 제정)
- 시민참여담당관-603(2022.1.24.) [202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

□ **이행계획**

- 전교직원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정책설명회를 강화함
- 학교내 교육복지전담부서와 교육복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

제32조【교육양극화 해소】 ③ 시교육청은 학생 1,000명이상 학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위클래스 상담인력을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이행계획**

- 위클래스 미설치교를 중심으로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1,000명이상의 학교에 상담 인력을 2인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
- 교육부에 위클래스 상담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 **참고사항**

- 위클래스 상담인력 중 전문상담교사 충원은 교육부의 인력충원 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제6장 교육활동 보장과 지원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① 시교육청은 교과교육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할 경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43 380-4307
---------	----------------------------------	-----	----------------------

□ **해설**

- 교과교육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할 경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하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초등 수업 혁신 추진 계획」, 초등교육과-1000(2022.1.25.)
- 「중등 수업 혁신 추진 계획」, 중등교육과-2735(2022.2.3.)

□ **이행계획**

- 현재 교과교육연구회를 공모하고 있지 않음
- 추후 교과교육연구회를 공모할 경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참고사항**

- 정책기획과-2291(2022.3.3.) [(중요) 2022학년도 교직원 대상 통합 공모사업 신청 안내]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② 시교육청은 교과연구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업무의 정상적인 추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한다.

1. 교과연구 모임
2. 창의적체험활동 지도를 위한 연구모임
3. 학급운영, 생활지도, 인성지도를 위한 모임
4.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공동체
5. 기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연구 활동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8조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기본 계획」

□ 이행계획

- ②항의 1~5호의 연구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고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하도록 함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③ 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주적 교육활동력의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8조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이행계획

-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학교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장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④ 시교육청은 각종 사업별 필수 반영 주간운영을 통폐합하고, '00주간' 운영실적 요구를 최소화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2
---------	----------------	-----	----------

□ 해설

- 교육청은 필수 사업 주간 운영을 지양하고, 학교 구성원의 필요와 합의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근거(관련규정)

- 「2022 광주교육」 2022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학년 교육과정 반영 사항

□ 이행계획

- 광주교육 책자 배부 및 광주교육 설명회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
-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한 안내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⑤ 교사의 교내외 연구회 활동을 교사 자율에 맡긴다. 교사의 수업공개 과목 및 주제를 교사의 자율에 맡긴다.

소관부서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7
------	-----------------	-----	----------

해설

- 교육청은 학교별 구성원간 협의를 거쳐 수업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괄 계획에 의거한 수업 공개 활동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근거(관련규정)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기본 계획」

이행계획

- ⑤항의 이행을 위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계획 등을 통해 학교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⑥ 시교육청은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충분한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6
---------	--------------------	-----	----------

해설

- 교육청은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충분한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 「2022학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이행계획

- 보건교사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대학 응급의료 센터 등과 연계하여 충분한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⑦ 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주체들과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진학팀)	연락처	380-4572
---------	------------	-----	----------

□ **해설**

-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한 단위학교의 건의가 있을 경우,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초·중·고·특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생활기록부 공동관리위원회(교육부 및 17개 시도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장학사)에 건의함. 별도의 건의 사항이 있을 시 교육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건의

□ **근거(관련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93호)
-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이행계획**

-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전달 연수,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직무연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현장 점검 등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건의를 종합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공동관리위원회에 건의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⑧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이행계획**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 후 실시하며, 보고서는 연수 목적에 반하는 비위 혐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⑨ 시교육청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의무 공개 수업을 지양하고, 공개 수업 방법의 결정은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⑩ 공개 수업 시, 공개 수업의 공개 범위(참관자 등)는 해당 교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4
---------	----------------	-----	----------

□ 근거(관련규정)

- 「수업혁신 추진 계획」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기본 계획」

□ 이행계획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별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수업 공유 (공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안내함

제34조【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제 확대실시】 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중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파견 대상자에게는 5년 동안 영어교담교사를 하도록 의무연한제를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6개월 이상 어학연수 파견 대상자에 대한 영어교담교사 의무연한제 실시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9조, 제25조
- 「2022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 제19조, 제25조

□ 이행계획

- 초등교사 중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파견자에게는 5년 동안 영어교담교사를 하도록 의무연한제를 실시함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① 시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 행정업무경감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세부운영계획은 별도로 합의한다.)

⑬ 시교육청은 교원업무경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원업무경감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초·중·고별 각 2명씩(총 6명)의 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홈페이지에 [규제완화 및 교원업무경감]란을 개설·운영한다.

⑳ 학교에서 업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시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접수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3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 정책 추진 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및 학교 컨설팅 지속적으로 추진
- 컨설팅(모니터링)단협의회, 교육(지원)청업무담당자협의회, 학교업무정상화추진협의회 등 교원, 직종별 대표,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협회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수시 협의 진행
-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성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초·중·고별 각 2명씩(총 6명)의 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 **근거(관련규정)**

- 「2022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주요시책 5-나-1 학교업무정상화 정착
- 정책기획과-1918(2022. 2. 21.)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안) 수립]

□ **이행계획**

-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운영계획 협의
-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초·중·고별 각 2명씩(총 6명)의 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자료마당 > 학교업무정상화란 운영 중에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
- 학교에서 업무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추진협의회를 통해 교원단체, 노동조합, 직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 모색

□ **참고사항**

- 정책기획과-3650(2022.3.29.)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② 시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업무경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3
---------	----------------	-----	----------

□ **해설**

-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축을 위해 노력

□ 근거(관련규정)

- 정책기획과-1918(2022. 2. 21.)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안) 수립]
- 정책기획과-3440(2022. 3. 24.)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모니터링) 추진 계획]

□ 이행계획

-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모니터링)단 구성하여 단위학교의 업무분장 분석 및 교원의 업무경감 모니터링 실시
- 교원·교감·행정실장 연수 및 협의회를 통한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안내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③ 시교육청은 법정장부 목록을 매년 11월에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지침(훈령)에 제시된 기타장부의 비치와 결재 여부는 교직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안내하며, 감사와 장학 등으로 학교 방문시 감사 착안사항 이외의 장부는 요구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3
---------	----------------	-----	----------

□ 해설

- 학교업무 분석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관례적인 업무를 통·폐합하고,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학교업무총량 감축
- 학교 장부 관리는 폐지·통폐합·간소화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필요를 기준으로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류와 관리 방법 결정

□ 근거(관련규정)

- 정책기획과-1918(2022.2.21.)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안) 수립]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시행 2022.3.1.)」

□ 이행계획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법정·비법정 비치 장부 목록 안내
- 학교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학교 장부 최소화하도록 안내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음
- 생활기록부 관련 연수 시 해당 내용 안내하고 학교 전달 연수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 감사와 장학 등으로 학교 방문 시 감사 착안사항 이외의 장부는 요구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④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선도(주변·당번)교사제를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해설

- 법적 근거가 없는 주변·당번 교사제가 운영될 시에 교원의 교육력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음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 이행계획

- 주변교사제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전교조의 합법화 이후 학교 분위기가 민주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만일, 학교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 아직 고수하는 학교가 있다면 대다수 학교들의 흐름에 기초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상향식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 자체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여기며, 단체협약에 의해 폐지하도록 지도할 예정임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⑤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모든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변형된 형태의 근무조 포함)을 운영하지 않도록 폐지하며, 단위 학교에서 방학 중 교원의 41조 연수가 보장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이행계획

- 방학 및 휴업일 중 자기연찬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 보장을 위하여 방학 중 근무조 제도는 폐지함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⑥ 시교육청은 학생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사항에 대한 공문생산을 억제하고, 이첩공문은 요약하여 발송하며, 단순공문은 공문게시를 적극 활용한다.

⑦ 시교육청은 보고 방법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당해 학교가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는 문구 ‘해당사항이 없을 시 보고 생략’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공문 생산을 억제한다.

⑧ 시교육청은 업무연락을 극소화시킨다.

⑨ 시교육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불필요한 공문의 이첩을 억제하고, 외부기관이 직접 학교로 공문 발송을 지양하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기록정보팀)	연락처	380-4512
---------	--------------	-----	----------

□ 근거(관련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이행계획

-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 계획’ 수립 및 알림

구 분	이행 및 준수사항
이첩 공문	○ 요약 발송 의무화 - 교육부 및 본청 계획 등 발송시 학교 필요 부분만 요약 발송
공문서 통합발송	○ 문서 성격이나 성질이 비슷한 문서 통합화 - 보고기일이 중복되거나, 동일사안 발생시 부서원간 또는 타부서간 협의를 거쳐 공문서 중복발송을 지양하고 단일건으로 통합 발송
단순 집계	○ 자료집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보고 공문 불필요) 예) “기안문 생략”, “자료집계시스템 활용 제출” 등
공문서 작성시 준수사항	○ 공문 성격 표시제 적용 - 신속한 공문 파악을 위해 제목 서두에 문서 성격 명시 예) [보고] [제출] [계획] [건설팅], [의견조회], [연수] 등 ○ 공문서의 파급 범위 명확화 - 해당 학교만 공문 발송 및 본문의 하단에 파급범위 지정 ○ 해당 없을시 “보고생략” 명시 및 “기한 내에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기재 ○ 보고 공문서의 경우 보고 기일을 최소한 5일(휴일제외) 이상 확보 - 부득이한 사안의 경우 제목 서두에 [긴급보고] 명시 ○ 공문서 경유기관 단축으로 신속성 유지 - 본청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공문 발송 시 수신자 동시 지정 -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만 교육지원청에서 재생산 ○ 관행적 월별, 분기별 실적요구 및 학교 자체계획 수립 요구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 '본 계획대로 학교에서 이행'등 - 지양: '본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 자체계획 수립 시행' 또는 '별도 계획 수립 요구' ○ 신규 사업 추진계획 시달 시 반드시 업무 매뉴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흐름, 절차, 예시(안), 서식 등 매뉴얼 제시 ○ 공문서 핵심 내용 전달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대상, 장소, 내용, 제출처, 제출방법 명시 - 공문서 본문(2쪽 이내)과 붙임(10쪽 이내) 문서의 양 적정성 - 붙임이 10쪽 이상인 문서는 반드시 요약본(서) 첨부 ○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 제5호 - 위반시 징계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보고방법의 다양화	○ 공문 보고 사안에 따라 내부메일, 업무관리, 메신저, E-mail, Fax 등을 통한 간편 보고
단순안내 공문지양	○ 연구학교, 연수홍보, 연구회 활동, 사무분장 통지 등은 홈페이지 활용 확대
외부공문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홍보성 공문을 교육청에서 검토한 후 해당 학교에 게시하는 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별도의 문서 접수 절차 없이 열람하는 방식)

□ 참고사항

- 교육자치과-1091(2022.1.28.) [2022년도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 계획 수립]
- 교육자치과-6800(2022.7.18.) [2022년도 1분기 학교 공문서 유통량 모니터링 결과 안내]
- 교육자치과-3574(2022.4.13.) [2022년도 2분기 학교 공문서 유통량 모니터링 결과 안내]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⑪ 시교육청은 학생교육활동이 아닌 행정 업무(시설관리 업무)는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3
---------	----------------	-----	----------

□ 해설

-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활동 중심 학교 문화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력 및 교육공동체 만족도 제고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학교담당교원)
- 「2022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주요시책 5-나-1 학교업무정상화 정착
- 정책기획과-1918(2022.2.21.)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안) 수립]

□ **이행계획**

- 전기관 및 학교 대상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을 통해 관련 사항 안내
-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업무 분장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 문화 조성 지원

□ **참고 사항**

- 정책기획과-9038(2020.11.3.) [(알림)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교직원 업무분장 도움 자료」 안내]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⑫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2. 각종 기자재(정보화·시청각 기자재 포함)의 수리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정보보호팀)	연락처	380-4493
---------	--------------	-----	----------

□ **근거(관련규정)**

- 재정복지과-26062(2021.11.25.) [광주광역시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 용역 계약]

□ **이행계획**

- 광주 4단계 스쿨넷서비스(학교 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에 보급된 장비는 통신사의 임대장비로 장애시 수리 및 교체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⑫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2. 각종 시설 관리(안전 시설 관리 등) 및 보수에 관한 업무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2팀)	연락처	380-4188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이행계획**

- 학교 안전점검은 행정실 시설업무 담당자를 안전점검반원으로 구성하여 시행 중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⑫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1. 일반 학적사무: 학생의 전출입, 휴학·퇴학에 관한 행정사무와 증명서 발급 사무
3. 교과서 관련 업무 중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진학팀)	연락처	380-4333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팀)		380-4309

□ 근거(관련규정)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3560, 2021.3.30.): ‘감사, 회계, 계약, 급여, 학교행저지원 등’은 행정실 담당업무로 분류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0조, 제31조

□ 이행계획

-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을 위해 일반 학적사무: 학생의 전출입, 휴학·퇴학에 관한 행정 사무와 증명서 발급 사무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함
-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을 위해 교과서 관련 업무 중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를 담당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함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⑫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4. 교육비 수납, 강사비 지출, 신원조회 등의 방과후 학교 관련 업무
5. 강사 공고 및 계약, 강사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업무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연락처	380-4482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380-4315

□ 해설

-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비 수납, 강사비 지출, 신원조회 등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 및 필요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 받기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문화혁신 기본 계획」

□ 이행계획

-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비 수납, 강사비 지출, 신원조회 등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노력
- 학교문화혁신 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 공문으로 안내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⑫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6. 학교 내의 인사 관련 업무(승진, 전보, 승급, 인사기록카드, 기간제, 호봉 등)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

□ 근거(관련규정)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3560, 2012.3.30)
 - ‘감사, 회계, 계약, 급여, 학교행정지원 등’ 은 행정실 담당업무로 분류
- 2022 광주교육 주요시책,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안내

□ 이행계획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수립 시 학생지도 중심의 교원 업무 반영을 위한 의견 제시

□ 참고사항

- 정책기획과-1982(2022.2.22.)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안내]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⑫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7.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업무

소관부서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연락처	380-488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 이행계획

- 교육환경보호구역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여 추진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⑭ 교육과정과 무관한 준거집단 관련 업무를 학교업무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며 해당 단체가 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단,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추가적인 학교업무로 부여할 수 있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3
---------	--------------	-----	----------

□ 해설

- ‘추가적인 학교업무’라 함은 학교의 공식 업무가 아닌 준거집단 소속된 자로서의 사적 업무임

□ 근거(관련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9조 제2항

□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⑩ 시교육청은 각종 외부 행사에 교원의 동원(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각종 시험감독, 학생경시대회의 학생 인솔 등)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⑮ 시교육청은 관행적인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지양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청 주관 각종 학생 참가대회에 의무참가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학생 입상 순위(급) 실적을 등급표창에 반영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3
---------	----------------	-----	----------

□ 해설

- 교육청은 각종 외부 행사에 교원의 동원을 최소화
-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 보장

□ 근거(관련규정)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정책기획과-1918(2022.2.21.)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안) 수립]

□ **이행계획**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회의 시 각종 외부 행사에 교원의 동원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 학교 및 교직원 대상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관행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사 지양
-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안내(매주 수요일 공문 및 출장 없는 날 운영, 학기 초 교육청 출장 및 회의 없는 달 운영, 새 학년 준비기 실시 등)
- 학생 참가 대회와 학생 입상 등위(급) 실적을 등급표창에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협의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⑯ 시교육청은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위 학교 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한다.

1.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로부터 각종 자료(단순반복 통계자료, 보고, 요구자료 포함)를 제출받을 시 업무 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⑰ 시교육청은 DB를 구축해서 조사, 통계, 보고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1. 시교육청은 각종 상급 기관 및 의원 요구 자료 등 조사, 통계, 보고 자료 관련 DB를 구성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기록정보팀)	연락처	380-4513
---------	--------------	-----	----------

□ **근거(관련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 국가시책사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지원체계 구축)

□ **이행계획**

- 공문서 감축을 위해 단순 통계성 자료취합을 위해서는 자료집계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며, 2024년 이후에는 (가칭)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교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⑰ 시교육청은 공문을 종이로 출력하여 결재·편철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학교교육계획서에 수록된 간단한 내용은 별도의 기안 없이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3
---------	----------------	-----	----------

□ **해설**

- 비효율적 업무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활동 중심 학교 문화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력 및 교육공동체 만족도 제고

□ 근거(관련규정)

- 정책기획과-1918(2022. 2. 21.)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안) 수립]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 「전자정부법」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 이행계획

- 공문을 종이로 출력하여 결재·편철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
- 학교교육계획서에 수록된 간단한 내용은 별도 기안 없이 시행하도록 안내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각급 학교 공문 결재 과정 중 사전 구두 결재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⑰ 시교육청은 공문을 종이로 출력하여 결재·편철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학교교육계획서에 수록된 간단한 내용은 별도의 기안 없이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1.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공문 결재 과정 중 사전 구두 결재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기록정보팀)	연락처	380-4514
---------	--------------	-----	----------

□ 근거(관련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행계획

- 학교 기록물관리 업무 매뉴얼 보급 시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안내
- 학교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및 기록물관리 교육 시 해당 내용 안내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⑰ 시교육청은 공문을 종이로 출력하여 결재·편철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학교교육계획서에 수록된 간단한 내용은 별도의 기안 없이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2.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로 하여금 개별체험학습 신청, 결재, 보고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팀)	연락처	380-4363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련 지침」(교육부 훈령 제393호)

□ 이행계획

- 교원 업무 경감 및 학부모·학생 신청 편이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온라인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임(공문발송 예정)

□ 참고사항

- 민주시민교육과-12293(2022.8.1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요령 알림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⑱ 시교육청은 각종 교육시설 및 기자재, 물품 등의 예상 단가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교직원에게 공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계약팀)	연락처	380-4164
---------	------------	-----	----------

□ 근거(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7.)」

□ 이행계획

- 물품, 기자재 등의 예상단가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3자단가계약 물품이나, 학교장터(S2B)의 즉시 견적을 활용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 가능하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홈페이지, 연락처 등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안내할 계획임
- 또한 시설공사 단가 조사 시 필요한 공사원가제비율 및 공사노임단가 등을 교육시설과와 협조하여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⑲ 시교육청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운영 및 식중독 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가. 학교급식 납품업체선정 등 행정 관련 업무
- 나. 교육공무직(조리사 및 조리원) 신규 채용 및 고용승계 관련 업무
- 다. 급수관 관리 및 저수조 청소 등 시설 관련업무
- 라. 수탁자부담경비(급식비, 우유비 등) 수납(징수) 관련 업무
- 마.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
- 바. 식생활관 시설 증, 개축에 관한 업무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6
---------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이행계획

- 법령에 명시된 영양교사의 직무내용을 학교급식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각 학교에 안내
- 2019.1.1.부터 저수조 청소와 방역(소독)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추진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p.10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㉔ 시교육청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근무상황결재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1. 시교육청은 교사가 연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가 사유 기재, 근무상황부 기재 보고 이외의 사전 구두 보고 의무화 등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어긋나는 보고방식을 요구받지 않도록 한다.
2. 시교육청은 교사가 조퇴, 지각, 외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 사유 기재 등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어긋나는 보고방식을 요구받지 않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해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근무상황부
 - ※ 비고
 -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근무상황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 이행계획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연가의 실시원칙, 승인 절차, 유의할 점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연가 신청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승인할 수 있도록 안내

-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근무를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되, 관련 예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안내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㉑ 시교육청은 원어민 담당교사가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국제교육부)	연락처	220-9749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EPIK 원어민 보조교사의 주거 임차계약 및 주거용 비품 구입 등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EPIK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시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을 통해 EPIK 원어민 담당교사가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함

□ 이행계획

- EPIK 원어민 보조교사 주거 이전 및 공인 중개 수수료, 주거 비품 구입비 등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주거 임차계약 등 주거 관리를 시교육청에서 전담하여 학교의 업무 경감
- 시교육청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EPIK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희망 신청 공문에 주택계약 및 관리 업무를 명시하고, 학교에서 배치 희망 신청서 제출 시 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요구
- 원어민교사 배치 시 업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 따른 업무를 설명
- 시교육청에 배치된 EPIK 원어민 코디네이터를 통해 고충 상담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EPIK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학교생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폭력 등 의무 연수 자료 개발 및 배부 등의 업무 지원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㉒ 시교육청은 학생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교통조직을 단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담당부서(팀)	안전총괄과(안전관리팀)	연락처	380-4873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교통조직을 단위 학교에 안내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5조(교육안전 범위)

-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이행계획

- 유관기관 각종 교통안전 조직 관련 사항을 단위 학교에 안내하겠음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㉓ 시교육청은 공모교장 채용 심사 시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과 학교업무정상화계획 또는 업무경감에 방안을 학교장 경영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2
---------	--------------	-----	----------

해설

- 공모교장의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및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 6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초등)」 제12조 ①,②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중등)」 제7조의2

이행계획

- 학교장 경영 계획서 작성 내용에 필수 기재 사항으로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학교에 안내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㉔ 시교육청은 매년 학교업무정상화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집행한다.

1. 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종합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2. 단위학교에서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따라,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교감, 비담임부장교사, 비담임교사, 교육공무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3
---------	----------------	-----	----------

해설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수립
- 교육활동 중심 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내실화

□ 근거(관련규정)

- 「2022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주요시책 5-나-1 학교업무정상화 정착
- 정책기획과-1918(2022.2.21.)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안) 수립]

□ 이행계획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수립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
- 현장 의견수렴 강화하여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사항 안내
- 교무행정지원팀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추진
-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㉕ 시교육청은 초등교원전보인사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체육교과전담교사 우대 조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초등교원전보인사시 동점자 처리 기준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9조
- 「2022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 제19조

□ 이행계획

- 초등 교사의 전보 시 동점자 순위 결정에서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은 2014.3.1. 부터 2019.2.28.까지 경력에 한하여 적용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㉗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매년 학교예산 편성 시에 교재배포지원을 위한 인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팀)	연락처	380-4309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2, 제30조의3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2조에 따라 단위학교의 예산편성시 교재배포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내한다.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 시교육청은 수익자부담경비를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납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67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학년초 학부모에게 납부방법 신청서를 받아 학부모가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되,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납 방법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이행계획**

- 학부모들이 납부 방법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안내 공문 발송하도록 지도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학교업무정상화협의회가 교육 활동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도록 학교장을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3
---------	----------------	-----	----------

□ **해설**

- 단위학교 「학교업무정상화협의회」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업무 분석, 분장에 대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갈등 등을 조정하는 단위학교의 협의체임

□ **근거(관련규정)**

- 정책기획과-1918(2022.2.21.)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안) 수립]

□ **이행계획**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학교업무정상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안내(반기별 1회 이상 실시, 민주적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 등)

- 교장·교감·행정실장 연수 및 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업무정상화협의회 운영이 교육 활동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도록 안내
-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제36조【교육청 주관 고사 관리 감독 수당 현실화】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관리 및 감독 업무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고시관리팀)	연락처	380-4129
---------	------------	-----	----------

□ 해설

-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관리 및 감독 업무 수당 현실화를 위해 노력함

□ 근거(관련규정)

-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 이행계획

-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시험 관리·감독 업무 수당 인상 요청

구분	현행		개정의견	
평일	4시간 미만	40,000	4시간 미만	60,000
	4시간 이상	60,000	4시간 이상	80,000
	8시간 초과	80,000	8시간 초과	100,000
휴일	4시간 미만	60,000	4시간 미만	80,000
	4시간 이상	80,000	4시간 이상	100,000
	8시간 초과	100,000	8시간 초과	120,000

제37조【학교의 민주적 운영】 ① 시교육청은 학교의 교직원회의를 매월 정례화하여 교직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민주적 학교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고, 세부 운영 규정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2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제7조(교직원회)

□ 이행계획

- 교직원자치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후 안내

□ **참고사항**

- 정책기획과-2128(2022.2.24.) [2022학년도 교직원자치 활성화 추진계획 안내]

제37조【학교의 민주적 운영】 ② 시교육청은 교장, 교감단이 주관하는 협의회가 단위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3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 **이행계획**

- 협의회 논의 사항이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는지 모니터링
- 교감단, 교장단 협의 시 해당 내용 안내

제37조【학교의 민주적 운영】 ③ 시교육청은 학교행정에 대한 사항과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사전에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연락처	380-4834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이행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추진 안내 시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안내
-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 시 해당 내용 점검

제37조【학교의 민주적 운영】 ④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현안사업비를 교육청에 요청할 시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1팀)	연락처	380-4143
---------	-------------	-----	----------

□ **근거(관련규정)**

- 행정예산과-199(2022.1.6.) [2022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계획 안내]

□ **이행계획**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지원 기준 수립 시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

제37조【학교의 민주적 운영】 ⑤ 시교육청은 학교문화혁신지수 평가에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4
---------	----------------	-----	----------

해설

- 학교문화혁신 지수에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관련 내용 반영

근거(관련규정)

- 2022 광주교육주요업무 계획 주요시책 역점1-나 학교문화혁신 내실화
- 정책기획과-2032(2022.2.23.) [2022학년도 학교문화혁신 기본 계획]

이행계획

- 학교문화혁신 평가계획 수립 시 협의
- 학교문화혁신지수 평가에 민주적 리더십 관련 항목 확대 반영

참고사항

- 정책기획과-6197(2022.6.8.) [2022학년도 학교문화혁신 만족도 조사 계획]

제37조【학교의 민주적 운영】 ⑥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내에서 민원을 공공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단위 학교 민원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이행계획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응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

제38조【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의견 수렴】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교원수급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1. 학과의 폐과
2. 학교의 신설, 이전 및 통·폐합
3.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학교계열 변동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2팀)	연락처	380-4661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 이행계획

- 학교의 이전 및 통·폐합 등의 경우에 교원수급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교원 인사 담당 부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계획임
- 협약에 근거하여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 의견 수렴 계획

제39조【교육활동 유해업소 단속】 시교육청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 필요 시 경찰서, 시청 등 유관기관 간 합동단속에 참여하여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에 노력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연락처	380-488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 이행계획

- 시교육청(교육지원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 단속 추진

제40조【학교운영위원회의 지도강화】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가급적 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되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당해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연도 학교교육계획 심의 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연락처	380-4834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3, 제59조의4
-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 이행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추진 안내 시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안내하고,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 시 해당 내용 점검

제41조【교육예산의 편성과 운용의 합리화】 ① 시교육청은 매 회계 연도마다 회계 지침과 전년도 결산, 신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내역을 시교육청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1팀)	연락처	380-4144
---------	-------------	-----	----------

□ 근거(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이행계획

- 예산편성지침과 전년도 결산, 신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내역을 지체없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할 계획

제41조【교육예산의 편성과 운용의 합리화】 ② 시교육청은 현행 초·중등 간 시설 설비 기준 유지와 각종 시설 공사에 적합한 공사비를 산정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2팀)	연락처	380-4186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이행계획

- 교육과정 운영과 물가인상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행정예산과에 요청하여 예산편성 단가를 인상, 공사비 산정에 반영
 - `22.8.30.: 2023년도 개·보수 시설단가 인상 요청 (교육시설과 → 행정예산과)
 - `22.9.13.: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지침 알림(행정예산과 → 교육시설과)
 - `22.9.~10.: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제41조【교육예산의 편성과 운용의 합리화】 ③ 시교육청은 학교의 각종 계약,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계약팀)	연락처	380-4164
---------	------------	-----	----------

□ 해설

- 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재정복지과-17246(2022.7.15.)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 업무 처리 지침 수립]

□ 이행계획

- 각급 학교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계약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 및 전자 견적 공고를 시행토록 하여 계약체결의 투명성 확보
- 1회 구매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계약) 물품·용역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비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 제품을 선정한 후 조달요청함
 - 고의적 분리 발주 금지
- 수의계약 내역 공개 철저
 -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1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행정 유도

제41조【교육예산의 편성과 운용의 합리화】 ④ 시교육청은 학교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초·중등 간, 공·사립학교 간 적정을 기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1팀)	연락처	380-4141
---------	-------------	-----	----------

□ 근거(관련규정)

-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 이행계획

-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각 부서의 요구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초·중등 간, 공·사립학교 간 차등 없이 적정하게 편성할 계획

제41조【교육예산의 편성과 운용의 합리화】 ⑤ 시교육청은 교육감과 각급 기관장(학교장 포함)의 업무추진비를 분기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경리팀)	연락처	380-4152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제5699호, 2021.6.1.)」

□ 이행계획

- 본청 각 부서 및 각급 기관(학교장 포함)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안내함 [재정복지과-13015(2022.5.13.)]
- 공개방법: 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 > 기관별 분류(시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각급학교)

제42조【학교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보장】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예산편성이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주적으로 구성된 예산 조정회의를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매점, 식당, 자판기와 농작물, 축산물, 공예품 등의 수익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게시판 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의 예·결산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67
---------	-------------	-----	----------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 이행계획

- 수익사업의 수입은 학교회계 세입과목인 사용료 및 수수료로 편입되고 세출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6조에 따라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세출의 재원으로 사용되나, 그 해당 내역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모두 포함되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여부를 교육청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음

제42조【학교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보장】 ④ 시교육청은 학교의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가 어떠한 명분으로든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834 380-4670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 이행계획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통해 학교에 안내
- 매년 초 실시하는 학교발전기금 자체 점검 시, 해당 사항 추가하여 점검 계획

□ 참고사항

- 행정예산과-1684(2022.2.2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제43조【학교장 업무추진비 지출 제한】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학교장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회 등)의 회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하여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67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이행계획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기 안내된 사항

제43조【학교장 업무추진비 지출 제한】 ② 각급 학교 업무추진비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수하고 엄중 문책한다.

③ 시교육청은 매년 '학교회계 결산분석'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행정지도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67
---------	-------------	-----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이행계획

- 상기 조례 및 지침을 통해 기 안내된 사항으로 ‘학교회계 운영실태 점검’, ‘학교회계 예·결산서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부득이하게 계약직 사서를 채용할 때는 처우를 개선하여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34 380-4324
---------	------------------------------	-----	----------------------

해설

- 각급 학교에 두는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연차적 확대 및 계약직 사서 채용 시 자격 소지자 채용 원칙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이행계획

- 교원의 법정정원이 확보되도록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결원(퇴직 등) 시 해당 학교에 사서교사 또는 기간제교사 배치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②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과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을 학교표준운영비의 3%이상으로 편성하고 학교 예산 실정에 따라 확대 편성을 권장하며, 그 외 도서실 운영예산은 별도로 책정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기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8조
-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년, 교육부)」

이행계획

- 학생들의 독서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학교도서관 도서구입예산을 학교 표준교육비의 3%이상 편성하고 학교 예산 실정에 따라 확대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도서구입비와 별도로 학교도서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편성 권장 안내

참고사항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96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③ 시교육청은 도서관담당교사나 사서교사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다른 업무는 경감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이행계획

- 학교도서관담당교사나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업무에 전념하도록 협조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④ 시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 담당교사의 직무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이행계획

- 매년 학교도서관 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안내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 등 수시 안내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 시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절차를 지켜 구입하도록 안내 및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이행계획

- 학교도서관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도서 구입 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절차를 지켜 구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⑥ 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원문 정보에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이행계획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구축된 원문DB는 없으며, 향후 원문DB 구축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안내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원문) 이용 가입을 위한 공문 안내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⑦ 시교육청에 구성하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 현장 사서교사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4조

이행계획

-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2021년~2023년) 사서교사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 운영 중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⑧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 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고, 독서교육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는 사서교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2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 「교육공무원법」 제5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초등)」 제28조 제1항,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중등)」 제22조 제1항, 제2항

이행계획

- 행정기관 배치 사서교사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도서관교육 담당부서 담당자 순차적 배치 노력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⑨ 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연수를 포함한 각종 자격 연수 또는 위탁하는 자격연수 및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시 학교도서관이나 독서 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⑩ 시교육청은 상담 및 교육정보화 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시 사서교사에게도 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8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이행계획

-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개설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⑪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연수를 개설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이행계획

- 매년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계획 수립 및 안내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지도, 독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⑫ 시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급당 일정시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 「도서관법」 제38조

이행계획

- 사서교사의 수업시간에 대한 사항은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독서교육 활성화와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 내에서 협업하여 도서관 활용 수업 등 학교의 실정에 맞춰 운영하도록 안내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⑬ 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시설·자료 기준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8조
-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년, 교육부)」

이행계획

-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2022학년도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안내 및 우리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관한 기준」 안내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⑭ 시교육청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사서교사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에게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이행계획

- 2022년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계획 수립 및 공문 안내하였으며, 각종 연수 시 학교도서관운영에 관한 안내 및 설명을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임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⑮ 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보대상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정원 증원을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교육공무직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석에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380-4324

해설

- 사서교사 정원 증원 요구 및 사서교사 우선 배치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 「2022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9조의5
- 「2022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 제19조의5

이행계획

- 교원의 법정 정원이 확보되도록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결원(퇴직 등) 시 해당 학교에 사서교사 또는 기간제교사 배치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⑯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방학 중(휴무일 포함)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이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 **이행계획**

- 방학 중(휴무일 포함) 학교도서관 개방은 학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위 학교에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 등 마련 후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⑰ 시교육청은 국회 도서관 등 원문제공 서비스 가능 기관과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원문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 **근거(관련규정)**

- 「도서관법」 제38조

□ **이행계획**

- 국회도서관과 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9년 6월)하여 이용 중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신청하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원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제7장 학생복지 및 자치신장

제45조【학생 인권, 학습권, 신체의 자유권 보장】 ① 시교육청은 매년 연도별 학생 인권 시행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1.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여 교육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방과 후 프로그램, 자율학습 등에 대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1.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 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행정지도한다.

2. 시교육청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시대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활동이 파행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자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학생이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체벌을 금지하고,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생의 반성적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교육방법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 ⑤ 시교육청은 학생이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학생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 ⑦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해당업무 담당교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모든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380-4593,5
---------	------------------	-----	------------

□ **해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참고
- 제45조 제1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시행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검토 및 의견권고를 받도록 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된 교원대표 자격으로 두 교원단체가 참여하여 협의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9조(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제10조(학습할 권리), 제11조(신체의 자유)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2항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교육청의 방침과 부합함
- 인권존중의 학교실현 기본 계획,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2년마다 진행되는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또한 점검함으로써 교섭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임

제45조【학생 인권, 학습권, 신체의 자유권 보장】 ⑥ 시교육청은 학교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도록 한다.

1. 사회봉사의 경우, 학부모·학생이 기관(학교가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이수 후 학교에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2. 특별교육운영시스템의 경우 학생의 접근성과 교원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8
---------	-------------------	-----	----------

□ **해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게 부과된 사회봉사가 실질적·교육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특별교육운영시스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요구

□ **근거(관련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 **이행계획**

- 학교가 제시하는 조건을 기반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사회봉사 기관을 정하여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
- 1365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VMS),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정보 서비스 e청소년 활용 방안과 행정(유의)사항 안내
- 특별교육운영시스템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한 사용자 의견 수렴 및 개선 노력

제46조【사생활,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 ① 시교육청은 학생의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원 및 지도한다.

1.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졸업앨범에 불필요한 학생 정보를 기재하여 개인 정보가 침해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가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이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하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언론 활동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생이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학교를 지도 및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인권존중형 생활 교복’ 도입 및 교육 자유화를 포함한 교복 자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380-4593,5
---------	------------------	-----	------------

□ **해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참고
- 제46조 제1항~제6항 전구(前句)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참고

- 제46조 제6항 후구(後句) ‘인권존중 생활교복 도입 권고 사항’ 참고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제13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제14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15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제3항
- 민주시민교육과-773(2022.1.13.) [교복학교주관구매 매뉴얼 및 품질검사 시험성적 관련 수정사항 알림] - ‘인권존중 생활교복 도입 권고 사항’ 안내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교육청의 방침과 부합함
- 인권존중의 학교실현 기본 계획, 2년마다 진행되는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또는 점검함으로써 교섭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임
- 교복 관련 안내 공문 발송시 ‘생활교복 도입 및 학생의 참여를 통한 교복 자율화 권장’ 안내하겠음

제46조【사생활,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 ② 시교육청은 학교가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이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시교육청은 학생건강조사 설문지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항을 만들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6
---------	--------------------	-----	----------

□ 해설

- 학생건강조사 설문지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적는 문항을 만들지 않는다.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이행계획

- 매해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수립 시, 보건교사 및 보건교육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학생 건강조사 설문지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내용을 적는 난을 만들지 않도록 반영하고 있음

제46조【사생활,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 ④ 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존중받는 정도’와 ‘결사 집회의 자유를 누리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380-4593
---------	------------------	-----	----------

□ 해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된 권리의 구체적 이행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실태 확인을 통해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학생인권실태조사 측정 지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함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참고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제14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2년마다 조사하는 학생인권실태조사에 해당 지표 반영
-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차년도 인권계획 수립에 반영

제46조【사생활,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 ⑦ 시교육청은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성적 확인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별 성적확인표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출력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3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학생 성적 확인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별 성적확인표’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함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9조 제7항

□ **이행계획**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7조 제7항에 명시하여 이행하고 있음
 - 7항.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결과(학기말 포함)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할 때에는 ‘개인별 성적 일람표’ 등을 활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학생 본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개하여 확인한다.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9918(2022.4.11.) [(중요/안내) 2022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및 1학기 수행평가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
- 중등교육과-18274(2022.7.15.) [(중요/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학생평가 세부 운영 방안 안내] 공문 발송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①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기구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관련 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사용 지원 및 행·재정적 지원(컴퓨터, 프린터 등 비품)을 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1. 시교육청은 학생회 운영비(회의비, 공약사업비, 선거사무비)를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으로 책정한다.

2. 학교 예산계획 수립 시 학생회 운영비와 그외 학생회 주관 자치활동을 예산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구조(급식소위원회, 체육복 및 교복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학생대표의 참여 또는 의견제출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복지, 인권, 학생회, 동아리 활동, 체육문화행사 등 교내행사의 기획·운영 및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 의견의 대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토론회와 공청회 등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성적, 교사의 추천 여부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기구 임원 선거가 비밀, 평등, 보통, 직접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학생회를 지원한다.

④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함께 학생복지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협의 결과를 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가 학교규칙과 학교규칙에 따라 위임된 규정 등 학생의 생활과 밀접한 제반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매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학교 단위의 기념식과 계기교육이 의미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380-4592,3
---------	------------------	-----	------------

□ **해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참고
- 제47조 제5항의 ‘제반 규정’은 학생회 회칙, 임원 선출 규정, 학생 생활 규정, 용의·복장 규정, 출결 규정, 봉사활동 규정 등을 의미함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5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교육청의 방침과 부합함
- 인권존중의 학교실현 기본 계획, 학생자치 활성화 추진 계획, 계기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2년마다 진행되는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또는 점검함으로써 교섭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임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학교시설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휴식, 공연, 전시, 축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⑬ 시교육청은 산하 청소년 관련 각종 시설물을 각급 학교의 학생회, 동아리, 청소년 준거 집단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380-4593
---------	------------------	-----	----------

□ **해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참고
- 교육청은 학교시설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휴식, 공연, 전시, 축제 공간을 확보하도록 안내·권장하고, 산하 청소년 시설물을 학생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7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제19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교육청의 방침과 부합함
- 인권존중의 학교실현 기본 계획, 2년마다 진행되는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또는 점검함으로써 교섭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임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②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4
---------	----------------	-----	----------

근거(관련규정)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이행계획

- 차기 연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과 협의하고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 및 안내 공문 발송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③ 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유관 단체가 협업하는 교통안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안전총괄과(안전관리팀)	연락처	380-4873
---------	--------------	-----	----------

해설

- 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안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근거(관련규정)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20조(협격 체계의 구축)
-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이행계획

-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및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교통안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④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한 등교 중지 상태에서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급식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1. 지자체와 협력하여 보급 체계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6
---------	---------------	-----	----------

□ **해설**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의 각종 재난 상황에서 등교가 중지되었을 경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1조(영양관리)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 **이행계획**

- 「학교급식법」 제9조제3항에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가정으로 배송(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⑤ 시교육청은 학교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학교에서 경쟁 입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교회계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고, 수익금을 학생복지비로 우선적으로 지출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경리팀)	연락처	380-4152
---------	------------	-----	----------

□ **근거(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 **이행계획**

- 관련 법령 및 조례 상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및 수익계약 사유를 제외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알림[행정예산과-12622(2021.11.23.)]을 통한 안내로 수익금을 학생복지 세출과목을 편성 권장하도록 이행 중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⑥ 시교육청은 매점, 식당, 자동판매기 등의 수익사업은 그 수입과 지출 명세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경리팀)	연락처	380-4152
---------	------------	-----	----------

근거(관련규정)

- 행정예산과-12622(2021.11.23.)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알림]

이행계획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 수익사업의 수입과 지출명세 공개내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행 중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⑦ 시교육청은 급식 시설을 연차적으로 현대화하며,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해설

-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급식시설·설비를 현대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이행계획

- 학교급식 급식시설·설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22년 시설개선 사업: 조리실바닥, 트랜치보수, 관리실 및 휴게실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
 - 2022년 급식기구 지원: 전기 인덕션 조리기구, 위생관리시스템, 오븐,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등 지원
- 교육지원청 주관 정기점검: 연 2회 실시
 - 상반기(3월~7월), 하반기(9월~12월) 위생·안전 점검 실시

참고사항

- 교육부 「위생관리지침서」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⑧ 시교육청은 전담 용역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각급학교의 화장실 등 학교시설의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연락처	380-4884
------	--------------	-----	----------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80

□ 이행계획

-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청소인력지원, 위생용품 구입)사업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필수사업으로 반영하여 이행 중
 - 중·고등학교 청소인력 지원비(BTL학교 제외)
 - 중학교: 교당 9,600천원
 - 고등학교: 교당 12,000천원
 - 특성화·특수목적고등학교: 교당 20,000천원
 - ※ BTL학교 중 (증축 초·중·고등학교)
 - 10학급 이하: 교당 2,200천원
 - 11~23학급: 교당 4,400천원
 - 24학급 이상: 교당 6,600천원
 - 위생용품 구입비(BTL 포함 초·중·고·특수학교)
 - 초·특수학교: 학급당 59천원
 - 중학교: 학급당 70천원
 - 고등학교: 학급당 84천원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⑨ 시교육청은 신설 및 개축 학교의 경우 설계 시부터 반영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 탈의실 및 샤워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기존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2팀)	연락처	380-4186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과-10216(2020.12.11.)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기준(안) 수립]

□ 이행계획

- 신축 및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여 시설하고 있으며, 기설학교는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예산을 확보 후 설치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⑩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노후화된 책걸상 및 학생의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연차적으로 교체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시설기획팀)	연락처	380-4172
---------	--------------	-----	----------

□ **해설**

-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노후화된 책걸상 및 학생의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연차적으로 교체

□ **근거(관련규정)**

- 교육환경개선비 집행

□ **이행계획**

- 노후 책걸상 등은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편성 시 학교의 요구를 받아 현장 점검 후 책걸상 교체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⑪ 시교육청은 화장실 용변기 개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의 경우 가능한 여학생용 변기 개수는 남학생 변기 개수 대비 1:1.5배를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 시설은 학생들의 체형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되도록 노력한다.

- 시교육청은 노후 된 화장실 시설을 점진적으로 교체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2팀, 학교설비팀)	연락처	380-4186,192
---------	----------------------	-----	--------------

□ **이행계획**

- 화장실 전면 보수 사업과 화변기 교체 사업을 통해 노후 화장실 개선
- 전면 개축,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연계하여 개선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⑫ 시교육청은 샤워실이 구비된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샤워실 이용수칙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2팀)	연락처	380-4186
---------	---------------	-----	----------

□ **이행계획**

- 각급 학교에 단체협약 내용을 안내하고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 공문 발송
 - `22.9.: 단체협약 내용 안내 공문 발송
 - `22.12.: 샤워실 이용수칙 제정 결과 수합
 - `23.1.~: 미제정 학교 지도 및 점검

제49조【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① 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학교의 각종 임원 선출, 위원회 구성 등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있어서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고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380-4593
---------	------------------	-----	----------

해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참고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21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교육청의 방침과 부합함
- 인권존중의 학교실현 기본 계획, 2년마다 진행되는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또는 점검함으로써 교섭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임

제49조【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② 시교육청은 급식 제공에 있어 채식, 종교적 신념,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6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학교급식 기본계획」

이행계획

-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학생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임

참고사항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p.42 ~ p.46

제49조【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③ 시교육청은 학생 실내화 착용 규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1층에 학생 신발장 설치를 희망하는 단위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시설기획팀)	연락처	380-4172
---------	--------------	-----	----------

해설

- 교육청은 학생 실내화 착용 규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1층에 학생 신발장 설치를 희망하는 단위학교에 예산을 지원

근거(관련규정)

- 교육환경개선비 집행

이행계획

- 노후 신발장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편성 시 각급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 신발장이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음

제50조【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① 시교육청은 수련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준비금 등의 지원 및 교육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363 380-4072
---------	----------------------------------	-----	----------------------

해설

-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예산 편성하여 시행 및 지원하고 있음(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향상 지원, 무상급식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체험학습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자유수강권, 초등돌봄교실,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학습준비물 지원, 광주 희망교실,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작은학교 지원, 다문화교육 지원)
- 2022년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지원하고 있음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 **이행계획**

- 매년 수련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지원금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음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교육복지사업 운영 계획(안) 심의
- 해당 부서의 사업 내용 및 예산 계획에 의해 지원

□ **참고사항**

- 「202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학여행비 등 현장체험학습비 편성 안내
- 재정복지과-27475(2021.12.13.)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 재정복지과-3817(2022.2.10.)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 안내]

제50조【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② 시교육청은 앨범제작, 교복·체육복 공동구매 또는, 수학여행, 야영 경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진행 할 때에는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라 공동구매 또는 공개 입찰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학부모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자문)를 거치게 하여 사업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계약팀)	연락처	380-4164
---------	------------	-----	----------

□ **해설**

- 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 **이행계획**

- 앨범 제작, 교복·체육복 공동구매, 수학여행, 야영 경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 집행 시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라 공동구매 또는 공개 입찰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학부모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치도록 안내
- 수익자부담 경비 집행과 관련한 사업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직무연수 시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회계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및 매뉴얼(민주시민교육과)」
-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공개방 공지사항 및 자료실

- 재정복지과-29402(2021.12.30.) [졸업앨범 업무 운영 관련 협조 안내]
- 재정복지과-9394(2022.3.25.)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 이용 안내]
- 민주시민교육과-773(2022.1.13.) [교복 학교주관구매 매뉴얼 및 품질검사 시험 성적 관련 수정사항 알림]

제50조【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③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본 학습 자료를 제외한 실험실습 자료 및 소모성자료는 학교예산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46
---------	----------------	-----	----------

해설

- 기본학습 자료를 제외한 실험실습자료 및 소모성자료 학교예산에서 제공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행정예산과-12622(2021.11.23.)

이행계획

- 학교회계예산편성 운영지침 수립 및 안내 시 실험실습자료 및 소모성 자료를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안내 및 확인

제51조【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① 시교육청은 모든 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중·고·특수학교 급식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1층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1층이 아닌 경우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2팀)	연락처	380-4175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과-10216(2020.12.11.)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기준(안) 수립]

이행계획

- 현재 모든 학교가 급식실을 보유함
- 1층(지상층)이 아닌 층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승강기 설치 검토

제51조【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② 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 정착된 학교(또는 전년도 위생관리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 시교육청은 정기 위생점검을 통하여 상호장학(연수)와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현장전문가를 구성·운영하기 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 **해설**

-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하고 있어 위생관리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점검 최소화 실시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8조

□ **이행계획**

-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결과 등급 낮은학교 및 위생취약시설 학교에 대해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22년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급식점검을 위한 영양교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그린급식현장지원단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린급식지원단 모집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2023년 구성·운영시 협의토록 하겠음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 교육부 「위생관리지침서」

제51조【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③ 시교육청은 조리실 급수시설의 보완, 개선과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학교조리실 상수도관이 노후 되어 자체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설비팀)	연락처	380-4192
---------	--------------	-----	----------

□ **근거(관련규정)**

- 노후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 **이행계획**

- 학교에서 현안사업을 요청할 경우 누수 여부,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개선 여부 적극 검토
-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 지원

제51조【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④ 시교육청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여 학교급식의 식재료 검수 및 식생활관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 **해설**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복수검수를 실시하고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이행계획**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급식소위원회 의무 구성: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 등 구성하여 납품업체 점검 및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도록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안내하고 있으며, 운영평가지 지도·점검하고 있음
- 식재료 검수시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참여하여 복수 대면검수 실시토록 「학교급식 기본방향」 안내하고 있으며, 운영평가지 지도·점검하고 있음

제51조【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⑤ 시교육청은 급식납품 계약 시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79
---------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이행계획**

-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시청 및 각 구청의 지원을 받아 일반 식재료를 친환경 인증품 및 우수 식재료로 사용하는데 따른 추가비용 지원

□ **참고사항**

- 「2022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p.32, p.58

제51조【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⑥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78
---------	---------------	-----	----------

□ **해설**

-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는 학교급식 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근거(관련규정)

- 재정복지과-1569(2022.1.13.) [2022년 학교급식 제도개선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이행계획

-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 중
- 학교급식 청렴도 제고 및 학교급식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운영중 학교급식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 노력 계획

제51조【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⑦ 시교육청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급식 예·결산 내역과 납품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등 구체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8
---------	---------------	-----	----------

□ 해설

- 각급학교에서는 식단표(알레르기 유발식품 및 원산지 표시 등), 급식품 구매계약 현황, 현품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 학교 급식비 집행 결과를 매 학기 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급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이행계획

- 학교급식 예·결산 관련 및 식재료 원산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매년 학교 급식 기본방향에 안내

□ 참고사항

- 「학교급식 업무편람」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제51조【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⑧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가공된 모든 식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 (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79
---------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 이행계획

- 학교급식 식재료는 GMO(유전자변형식품) 없는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장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사용을 권장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콩제품(두부,콩나물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GMO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 GMO제품으로 판정되면 학교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안내함
-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된 전통장류를 구매하도록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식재료비 지원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p.32, p.59

제8장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제52조【인사위원회】 ① 시교육청에 유·초·중등별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고 인사규정 제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380-4313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380-4289

□ 해설

-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교원단체와 협의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초등, 중등, 유치원)」

□ 이행계획

- 시교육청 인사자문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하여 반영하고 있음

제52조【인사위원회】 ②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한 자를 각 노조별 1인 이상 참여시킨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2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380-4311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380-4287

□ **해설**

- 인사위원회 구성 시 교원단체와 협의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7장

□ **이행계획**

-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추천을 받아 위원 위촉

제52조【인사위원회】 ③ 시교육청에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1. 각 학교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가. 학급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면에 관한 사항
 - 나. 교무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다. 연수, 상벌, 연수 파견, 훈·포장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라.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의 기준 설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마. 기간제 교사 및 특기 적성 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과 교무회의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 인사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다. 인사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4. 학교교원인사(자문)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신상 등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5.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학교장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전체 교원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규칙의 제·개정은 교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학교장이 공포한다.
7.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교감과 심의위원들은 정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교사들의 업무분장 희망원 원천 자료 등)을 공유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2
---------	--------------	-----	----------

□ **해설**

-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초등, 중등, 유치원)」

□ 이행계획

-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말 각급 학교에 협조 요청

제53조【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 ①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주거지와 교통편의를 고려한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신규교사가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보특례 조항을 최소화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④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기 전보 인사를, 가급적 발령일 전달의 초순에 발표하여, 사무분장과 학사일정 및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교 만기자 및 전보희망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인원을 내신 희망원 제출 마감 1주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⑦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인사 시 인사클린센터를 통해 인사민원을 접수하고, 명백한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차기 인사에 반영한다.

⑧ 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가산점과 인사전보와 관련된 규정 개정 시 사전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⑨ 시교육청은 전보인사에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⑩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교장·교감의 경우 2년의 근무 기간을 채우도록 권장한다.

⑪ 시교육청은 전보유예, 전입요청 및 초빙교사제를 최소화하여 정기전보의 일반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⑫ 시교육청은 초등전보인사 시 신뢰성이 있는 연령대별 배치 인원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⑬ 학교에서 매년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명부 작성에 있어서 항목을 최소화한다.
(비상연락망은 교원명부가 아님)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32, 334 380-4311, 313
---------	------------------------------	-----	--------------------------------

□ 해설

- 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초등, 중등)」
-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초등, 중등)」

□ **이행계획**

- ①항: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군을 조직하여 인사구역 지정
- ②항: 신규교사의 집중 배치 해소를 위해 교사의 서열 명부를 연령대별로 작성하여 연령대별 배치 기준범위 내에서 교사 전보(초등) 신규교사는 가급적 지역과 학교급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며, 학교 간 교육 경력별 균형 배치를 위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중등)
- ③항: 교원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교원 및 각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원의 전보특례조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사관리기준을 전보일 6개월 전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인사클린센터/인사정보/초·중등 인사정보에 공개하고 있음
- ④항: 사무분장과 학사일정 및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3.1.자 정기인사는 2월 초순에 조기 발표하고 있음
- ⑥항: 3.1.자 정기 인사 시 기교 만료자 및 희망 내신자를 제외한 학교별 재임 예상 연령대 비율을 공개하고 있음(초등) 내신서 작성 전 학교별, 과목별 만기자 예상인원을 공개하고 있음(중등)
- ⑦항: 교원 정기인사에 명백한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희망을 고려하여 차기 인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⑧항: 승진가산점과 인사전보와 관련된 규정 개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추진
- ⑨항: 전보인사에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⑩항: 교장·교감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전보하고 있으나, 가급적 학교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⑪항: 초·중등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 및 초빙교원 지침 개정 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 ⑫항: 초등전보인사 시 기교 만료자 및 희망 내신자를 제외한 학교별 재임 예상 연령대 비율을 공개하고 있음
- ⑬항: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원명부를 작성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통계자료 작성과 각종 추천(포상, 위원) 및 인사(전보 등)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학교별 소속 교원 비상연락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함

제53조【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 ⑤ 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3
---------	----------------	-----	----------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유치원)」

-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 이행계획

- 특수교사의 인사관리 원칙에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에 대한 임용 및 전보 기준을 제시함

제53조【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 ⑦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인사 시 인사클린 센터를 통해 인사민원을 접수하고, 명백한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차기 인사에 반영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장 전보임용
-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4장 교사 전보

□ 이행계획

- 교사의 동일 직위 장기 근무에 따른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절차에 의해 확정 공고된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기준에 의해 전보
-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보 임용의 공정성 확보
- 교원 정기인사에 명백한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희망을 고려하여 차기 인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제53조【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 ⑭ 시교육청은 교원의 겸임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시교육청은 학교별 평균 수업 시수 등에 있어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원 1인당 원적교를 포함한 2개교를 초과하는 겸임 발령을 하지 않는다.
2. 시교육청은 급간 겸임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급간 겸임 근무하는 경우 전보내신접수에 해당 내용이 산입 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 이행계획

- 학교별 평균 수업 시수 등을 고려하여 교원 순회(겸임)제도를 운영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내 교과목별 평균 수업 시수 격차,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른 학기 당 수업 시수 편차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원 1인당 원적교를 포함한 2개교를 초과하는 겸임 발령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함
-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순회(겸임)교사 근무 가산점 반영

제53조【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 ⑮ 시교육청은 중등전보예외비율과 초빙총량제 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장 전보임용
-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4장 교사 전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11조의2(초빙 임용)
- 「중등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지침」

□ 이행계획

- 「중등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지침」 및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해 확정 공고된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해 전보

제53조【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 ⑯ 시교육청은 신규 교사, 미발령 기간제교사를 균형 배치하되, 정규 교원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예측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내부의 자체 기준을 최소화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미발령 기간제 교사 배치 최소화 노력			
2. 전보내신서 작성 전 신규 교사 및 미발령 기간제교사 우선 배치 학교 명단 공개			
3. 미발령 기간제교사의 동일교 근무 3년 이상 근무 제한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2, 315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5조(배치원칙)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6조(기간제 교원 임용)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신규임용교사 배치)

□ 이행계획

- 전보 내신서 작성 전 학교별 만기자 현황 및 신규교사 및 미발령 기간제 교사 우선 배치 학교 명단 공개
- 학교별 미충원결원대체 교사 사전 배치 시 동일 교과 3년 이내로 제한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기간제 교사 채용 안내

제54조【초빙 교원】 초빙교원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전체 교직원회의의 민주적 절차(연구학교 수준의 동의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초빙 교과목, 초빙인원 등 초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초빙교원제를 신청하도록 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청한 초빙교원제 학교의 선정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초빙교원의 임명은 시·지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교원의 초빙에 관한 심사 요건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시·지역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시교육청은 초빙된 교원이 초빙 목적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강화한다.
- ⑤ 시교육청은 초빙교사(전입요청 포함)비율을 단위학교 교사정원의 5% 이내로 한다. 단, 작은학교와 혁신학교는 별도로 정한다.
- ⑦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시행하는 교원의 초빙에 관한 자격요건 및 목적에 부당노동 행위적 요소가 담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초빙교원제 운영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 「2022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 이행계획

- 초빙교원 지침 개정 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 초빙교원의 목적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 마련

제54조【초빙 교원】 ⑥ 시교육청은 교장초빙제 및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 6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제12조①,②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7조의2

□ 이행계획

- 공모교장의 임기가 만료된 자는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제54조【초빙 교원】 ⑧ 시교육청은 일반고 이외의 학교에서의 초빙·전입요청의 비율을 일반고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초빙, 전입요청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장 전보임용
-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11조의2(초빙 임용)

□ 이행계획

- 일반고 이외의 학교에서의 초빙·전입요청 비율은 관련 근거 및 시교육청 「초빙 교사 임용 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추진

제55조【국립학교 근무 교원의 특혜】 ① 시교육청은 국립학교 근무 당시 상급 자격(교감) 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공립학교로의 전입을 근속 만기 후 2년간 제한한다.

② 시교육청은 국립학교 근무 교원이 공립학교로 전보할 시 타시도 전입자와 동일시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해설

- 국립학교 근무 교원의 상급(교감) 자격 취득 시 근속 기간 및 공립학교 전입 기준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③(전보계획)
- 「2022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20조

이행계획

- 국립학교 교사로 교감 자격증 소지자는 현임교 근속 만기 후 2년 이상 근속자를 전입토록 하고 있음
- 인사관리기준에 근거하여 국립학교에서 전입하는 자는 타시도 전입자와 동일한 인사기준에 의해 배치하고 있음

제56조【부부교사의 시·도간 인사교류】 시교육청은 소속 교원 중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교원이 희망하는 동일 시·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킨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해설

- 희망하는 부부교사에 대한 시·도간 인사교류 활성화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 시·도 교류(전·출입, 파견) 추진 계획

이행계획

- 교육공무원 시·도 교류(전·출입, 파견) 추진 계획에 따라 타시·도 교육청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제57조【학교민주화를 위한 승진제도의 개선】 ① 시교육청은 교원전문직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1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5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제28조 제1항,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22조 제1항, 제2항

□ 이행계획

- 교육전문직원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인원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예정

제57조【학교민주화를 위한 승진제도의 개선】 ② 시교육청은 승진 가산점 항목의 개선을 위한 TF팀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장 임용(중임 포함) 및 교감 자격연수 심사 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332 380-4311 380-4287
---------	--	-----	----------------------------------

□ 해설

-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승진제도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58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41조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기준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제11조, 제28조 제1항,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7조, 제22조 제1항, 제2항

□ 이행계획

- 승진 가산점 항목의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또는 기존 조직된 위원회, TF팀 활용)하여 승진 가산점 항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 교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강화하여 학교 현장의 이해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제58조【인사제도 효율성 강화 및 각종 대회 심사위원 제척】 ① 시교육청은 교원들이 인사 관련 법률과 시행령, 예규와 규정들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7
---------	--------------	-----	----------

□ 해설

- 교원들의 인사 관련 규정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 활성화

□ 근거(관련규정)

- 「2022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 5-가-3. 공정한 인사 관리

□ 이행계획

-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 내 인사관련 법규 및 주요 계획 안내 및 탑재
 - 인사관련 법률, 시행령, 예규, 규정 등 개정사항 안내
 - 주요 업무 추진계획 탑재

제58조【인사제도 효율성 강화 및 각종 대회 심사위원 제척】 ② 시교육청은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각종 사업 진행 시, 참여 교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력풀 제도 등)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연락처	380-4505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각종 사업 진행 시 현장 교원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 참여 교원 구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

□ 이행계획

-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참여 교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제58조【인사제도 효율성 강화 및 각종 대회 심사위원 제척】 ③ 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 행사에서 심사계획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척,회피 사유를 공문으로 안내한다.

④ 심사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청탁 관련 혐의를 적용하여 조치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조직법무팀)	연락처	380-4644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이행계획

- 학년초에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척, 회피 사유를 공문으로 안내

제9장 교원 연구·연수활동 개선과 전문성 보장

제59조【부전공연수 및 과목불일치교사 해소】 ① 시교육청은 과원과목 교사와 자격증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교수해야 하는 교사의 복수전공(부전공) 연수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교사의 연수 희망을 받아 실시한다.

② 시교육청은 과원과목 교사와 자격증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교수해야 하는 교사의 복수전공(부전공)연수에 따른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과원과목 교사가 희망하는 교과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전공 교과와 복수전공(부전공)연수 교과의 계열이 상이한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복수전공(부전공) 연수의 비용 및 시간을 보장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사의 심리적 위축과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한 부전공연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④ 시교육청은 부전공 연수를 공·사립학교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제4조

이행계획

- ①, ③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 교원 수급 계획에 근거하여 복수(부)전공 대상 과목 및 인원을 선정하여 실시
- ②항: 201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복수전공연수는 750(50학점*15)시간, 부전공연수는 450(30학점*15시간)시간 운영
- ④항: 복수(부)전공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복수(부)전공 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사립 구분 없이 선발하고 있음

참고사항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제60조【전문직 공채의 개선】 ① 시교육청은 여성 교원의 교육전문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임용 시 보건·영양사·전문상담 교사에게도 전문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1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5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제28조 제1항,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22조 제1항, 제2항

□ 이행계획

- 여성 전문직원의 비율이 2022. 3. 1.자 현재, 현원 기준 51.29%이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수급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 다양한 교원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

제61조【교원연수 제도 개선】 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시교육청 산하 각종 교원연수원 및 교육대학·사범대학, 일반대학교의 연수기관을 활용하며, 교원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직무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 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 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를 교원 1인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5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출장 처리한다.

③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경우 교원의 연수경비 및 연수여비를 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다.

④ 시교육청은 모든 2급 정교사가 교육경력 3년에서 4년 사이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시교육청은 연수 대상 교원에게 가급적 연수개시 15일 이전에 연수계획을 통보하여 연수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⑦ 시교육청은 교원의 해외연수(북한지역 포함)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하며, 경합이 있을 때 선발시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갖지 못한 교원을 우선한다.

⑧ 시교육청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에 대한 연수 참가 경비를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에 의거 합당하게 지급한다.

⑨ 시교육청은 교원이 야간·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출장(연수)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경비 및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 이행계획

- ①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의 협력을 통해, 자격, 직무(특수분야 포함) 연수 운영 시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과 협력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목표를 두고 추진

- ②항: 특수분야직무연수 지원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하고 있으며, 직무연수경비 지원액을 교원 1인당 25만원 이내로 편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지원경비의 운영은 학교 자체 내규에 따라 운영함
- ③항: 시교육청 주관 직무연수의 경비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여비는 학교회계 예산 범위 내 지급하고 있음
- ④항: 1, 2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가 정해진 시기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연수 실시 전년도에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경비 및 여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희소과목도 연수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⑤항: 연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있음
- ⑦항: 우리 시 교원의 해외연수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선발 단계서 자격요건을 최근 3년 이내 교육청 추천 연수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⑧항: 시교육청 지정 자격 및 직무연수의 경비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음
- ⑨항: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 가능 「2022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업무 처리 지침」 (p.208)

제61조【교원연수 제도 개선】 ⑥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교육실습생의 원활한 연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5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 이행계획

- 각급 학교에서 사범대학 학생들의 교육실습이 수용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실습 지도실적을 승진 가산점으로 부여하여 교육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제61조【교원연수 제도 개선】 ⑩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개설 시 다음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 관련 연수 등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연수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380-4595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35조(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6조(교원 연수) 제1항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교육청의 방침과 부합함
- 인권존중의 학교실현 기본 계획,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함으로써 교섭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임

제61조【교원연수 제도 개선】 ⑪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 이행계획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 후 실시하며, 보고서는 연수 목적에 반하는 비위 혐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제61조【교원연수 제도 개선】 ⑫ 시교육청은 퇴직 1년 미만의 교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1. 시교육청은 “교원 퇴직 전 사회적응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해당 교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대상자들이 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⑬ 시교육청은 정년퇴직을 앞둔 교원이 6개월의 공로연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제6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

□ **이행계획**

- 광주교육연수원에서 퇴직예정교원에 대한 사회적응 역량 강화 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시교육청은 퇴직예정교원의 은퇴지원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

제62조【컨설팅장학 및 장학위원 활동】 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컨설팅장학계획 수립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② 컨설팅장학은 장학위원의 시범수업, 유용한 교수-학습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공개 수업은 희망 학교와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243
---------	----------------	-----	----------

□ **해설**

- 컨설팅 장학 계획 수립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
-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컨설팅장학 실시하고, 공개 수업은 희망 학교와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하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초등 수업 혁신 추진 계획」, 초등교육과-1000(2022.1.25.)
- 「중등 수업 혁신 추진 계획」, 중등교육과-2735(2022.2.3.)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교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 및 교사 중심 컨설팅으로 전환하였음
- 별도의 컨설팅 장학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장학위원제를 운영하지 않음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① 시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③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1.17.)
- 「광주광역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이행계획

- 교육과정 편성·운영 담당자 연수를 통해 단위학교 안내
-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도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유의 사항] 등 공문 안내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④ 시교육청은 시교육과정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2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구성 시(2023.3.1.) 적용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⑤ 시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만을 임의 선발하여 운영하는 특별반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감독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팀, 진학팀)	연락처	380-4603, 571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2-1호)」

□ 이행계획

- 교육과정 편성·운영 담당자 연수를 통해 단위학교 안내
-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도
- 민원사항 점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특별반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⑥ 시교육청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기 시작 전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편법·운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팀)	연락처	380-4603
---------	---------------	-----	----------

□ 근거(관련규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21.7.20.)」

□ **이행계획**

- 2023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근절 담당자 연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연수 자료 제작 보급
-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출제(교육과정 및 평가 문항) 근절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⑦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학예회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이 되도록 권장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42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18호)」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보급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내실화 지원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편성·운영 지원
-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⑧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과정운영과 교재 제작 및 활용을 지원하며 교원이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할 때 지도수당을 현실화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45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4항
- 「기초학력 보장법」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 2022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계획

□ **이행계획**

-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 기초학력 책임지도비 편성 및 지원(기초학력 지도수당 포함)
- 광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 기초학력 관련 사이트 활용 안내

- 통합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특별교부금 지원)
- 기초학력 보정지도 자료 제공 및 학생 이력관리 지원
- 기초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초학력 향상 교원 연수 지원(상시 19개 강좌 및 한글문해력, 기초수학)
-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⑨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법령에 따라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위반 시 실사를 통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팀)	연락처	380-4603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2-1호)」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보급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내실화 지원
-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연수 시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강조하고, 민원 발생 시 단위 학교 방문 지도 점검
-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표 점검을 통한 편법 운영 방지
- 편법 운영 시 감사청구 등을 통해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⑩ 시교육청은 학교가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경우 교육청은 교과간 균형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1.17.)
- 「광주광역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지침 안내
- 교육과정 편성·운영 담당자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의 균형 있는 편성 강조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⑪ 시교육청은 교과(군) 수업시수 20% 증감과 집중 이수제의 적용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과원교사 발생 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비정기 전보, 순회전담교사, 부전공연수, 과목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2~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장 전보임용
-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 이행계획

- 과원 예상 교과에 대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수 기회 제공
- 순회(겸임) 교사제 활용을 통한 수업시수 균형 방안 마련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⑫ 시교육청은 전입 학생이 공통 교과의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보충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팀)	연락처	380-4309
---------	---------------	-----	----------

□ 해설

- 전편입학 및 집중이수제로 인해 발생한 과목 미이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 수급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과목의 학생 선택권 보장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고시 제2020-248호)」 등

□ 이행계획

- 매년 전입생 등 미이수 보충학습과정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 발송
- 중·고등학교의 경우 온라인보충과정 지원

□ 참고사항

-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보충과정 운영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⑬ 시교육청은 각급 단위 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3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함

□ 근거(관련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2조 제2항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7조 제1항

□ 이행계획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2조 제2항에 명시하여 이행하고 있음
 - ②항: 학교는 지역 실정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7조 제1항에 명시하여 이행하고 있음
 - ①항: 교과 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 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과정중심 학생평가를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학생평가지원포털(<https://stas.moe.go.kr>)을 통한 학생평가 도구 활용 안내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1900(2022.1.21.) [(중요/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학생평가 세부 운영 방안 안내] 공문 시행
- 중등교육과-18274(2022.7.15.) [(중요/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학생평가 세부 운영 방안 안내] 공문 시행

제64조【학업성취도 평가와 직업기초능력 평가 개선】 ① 시교육청은 국가 주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 평가결과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 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3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국가 주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 평가결과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 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제3항 제4호

□ **이행계획**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표는 응시 학교에서 온라인 출력 후 응시학생 본인에게 배부하며, 본인 이외에는 비공개 자료임
- 시교육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결과 자료를 취합하지 않으므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가 부존재함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학교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어 시교육청은 신청학교 명단 및 결과 자료도 부존재함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31549(2021.11.22.) [(중요/안내)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표 온라인 출력 안내]
- 중등교육과-11750(2022.5.2.) [(중요/안내) 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i성취) 지원 기본 계획 안내]

제64조【학업성취도 평가와 직업기초능력 평가 개선】 ② 시교육청은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있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3
---------	--------------	-----	----------

□ **해설**

- 교육부 주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대상 직업기초능력평가 자가진단평가(1학년) 및 본 평가(3학년) 시행 시 응시 여부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 반영 필요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9조」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22-2호)」 학교는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이행계획**

- (1학년) 자가진단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영역의 조기 진단 및 보정학습 지원 ☞ 학생 개인별로 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율적으로 평가 응시
- (3학년) 직업기초능력 본평가를 학교 교육계획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으로 반영하고, 학급별·학과별 평가 일을 정하여 단체 응시 권장 ☞ 학교는 평가장을 개설하고, 응시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으로 전달

□ **참고사항**

- 행정 사항 [2022학년도 직업계고 직업기초능력 신장 지원 계획(중등교육과-10462)]
 - (유의사항) 평가 전 평가방법, 평가시간, 평가결과 활용도 등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응시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 (주의) ① 직업기초능력평가장 개설 필수, ②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않은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또는 미 응시 지양
 - (학사일정 반영) 2022학년도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일을 연간 학사일정에 반영 필요

제65조【방학 중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운영】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2021.03.)’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운영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해당 계획과 지침 변경 사유 발생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① 사전에 학생 희망을 조사하여 순수 희망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방학시기의 계절적 조건에 따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이 선행된 후에 실시하며,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③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한다.

④ 방과후학교 시수는 여름방학은 고 1.2.3학년은 최대 60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겨울방학은 고 1학년 100시간, 고 2학년은 최대 1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하루 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4
---------	----------------	-----	----------

□ **해설**

- 교육청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자율적인 선택권 및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을 안내하고, 학교급별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보고 제출함.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전반적 점검(행·재정조치)하여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0조, 제18조
-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 이행계획

- 차기 연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과 협의하고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 및 안내 공문 발송

제65조【방학 중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운영】 ⑤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은 오후 9시 30분 이후는 실시하지 않는다.
 1. 단, 3학년의 경우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고 1, 2, 3학년은 오전 8시 이전 강제 조기등교를 금지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진학팀)	연락처	380-4572
---------	------------	-----	----------

□ 해설

- 시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에서 방학 중은 고3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6시까지만 자율학습이 가능하며, 고 1, 2학년은 방학 중에는 자율학습을 미실시함. 학기 중에는 3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10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6시까지만 가능, 지속적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함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 이행계획

- 2022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을 통해 안내함
- 고등학교의 자율학습 완전 선택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 및 관리로 자율학습의 강제성 해소

제66조【학기 중 방과 후 학교교육 활동 정상운영 등】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2021.03.)’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운영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해당 계획과 지침 변경 사유 발생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 ③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EBS시청 및 사이버학습을 강제로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④ 고등학교의 수준별 보충수업은 정규수업 전(0교시)과 오후7시 이후,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⑨ 차기 연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4
---------	----------------	-----	----------

□ 해설

-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자율적인 선택권 및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을 안내하고, 학교급별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보고 제출함.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전반적 점검(행·재정 조치)하여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0조, 제18조
-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 이행계획

- 차기 연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과 협의하고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 및 안내 공문 발송

제66조【학기 중 방과 후 학교교육 활동 정상운영 등】 ②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장이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실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연락처	380-4482
---------	---------------	-----	----------

□ 해설

-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함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 이행계획

- 2022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통해 2021년 12월 안내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포함하여 2022년 12월 중 안내

- 단위학교 자체점검(전체학교) 및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

□ 참고사항

- 2022년 시·도 공동개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길라잡이
- 2022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제66조【학기 중 방과 후 학교교육 활동 정상운영 등】 ⑤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은 오후 10시 이후는 실시하지 않는다.

1. 단, 3학년의 경우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고 1, 2, 3학년은 오전 8시 이전 강제 조기등교를 금지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진학팀)	연락처	380-4572
---------	------------	-----	----------

□ 해설

- 시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에서 학기 중에는 3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10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6시까지만 가능, 지속적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함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 이행계획

- 2022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을 통해 안내함
- 고등학교의 자율학습 완전 선택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 및 관리로 자율학습의 강제성 해소

제66조【학기 중 방과 후 학교교육 활동 정상운영 등】 ⑥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지도비 등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⑦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관리수당(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은 학생부담 경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진학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572 380-4304
---------	------------------------------	-----	----------------------

□ 해설

-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자율학습지도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음. 아울러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 이행계획

- 자율학습 지도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며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는 일체의 자율학습 관련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방과후학교 운영 관리수당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수용비 사용 불가 항목으로 명시함

제66조【학기 중 방과 후 학교교육 활동 정상운영 등】 ⑧ 학부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의로 이외의 수용비는 5%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연락처	380-4482
---------	---------------	-----	----------

□ 해설

- 학부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의로 이외의 수용비는 5%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2013-7호, 제2015-74호)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6호

□ 이행계획

- 2022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통해 2021년 12월에 안내 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2023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포함 하여 2022년 12월 중 안내
- 단위학교 자체점검(전체학교) 및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

□ 참고사항

- 2022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제67조【연구·시범학교 등 운영의 개선】 ① 시교육청은 5.18민중항쟁, 평화통일,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교육 및 연수활동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380-4079, 4592,5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이행계획

-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개발한 교육자료 및 교육활동을 학교에 안내하는 등 교육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시교육청은 5.18민중항쟁, 평화통일,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교육 및 연수활동 운영 시 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함께 협의하여 공동 추진하겠음

제67조【연구·시범학교 등 운영의 개선】 ② 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타부처 요청, 시교육청 자체지정 연구학교 운영 주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15% 범위내에서 지정·운영한다.

③ 시교육청은 연구·시범·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추진할 경우 당해 학교장이 교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교원수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 신청하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연구학교 선정 시 교원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 행정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연구학교 지정운영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5
---------	----------------	-----	----------

□ 근거(관련규정)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일부개정 2022.4.11.)」

□ 이행계획

-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본청 각 과 및 직속기관 협의회 운영
- 연구학교의 신규 지정은 공모제에 의하며 각 부서별 ‘연구학교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시행

- 「연구학교 지정·운영계획」에 연구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
- 시범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사업 부서에 제67조 제2항 안내

□ **참고사항**

- 2020년 연구학교 지정 수: 20교 (6.4%)
- 2021년 연구학교 지정 수: 24교 (7.6%)
- 2022년 연구학교 지정 수: 27교 (8.6%)

제68조【교사의 자율성과 수업권 보장】 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사의 교재 선정과 재구성, 수업방식, 평가, 교육 방법의 적용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
- 「광주광역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1.17.)」
- 「2022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보급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내실화 지원
- 2018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 안내
- 교육과정 및 과정중심 학생평가를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자료 개발 보급

제69조【감사 제도의 개선】 ① 시교육청은 매년 공·사립학교 등에 대한 감사 결과 공통 및 주요지적사항을 각급 학교에 통보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②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분기별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감사 중 교육활동분야는 교육전문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투명한 교육행정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감사 제도를 적극 추진·활용한다.
 ⑥ 감사 착안사항을 간소화하고 감사를 진행할 때 상세화된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에 교부하여 수감준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감사는 권위적이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 또는 광주교사노조가 요청한 감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감사관(청렴총괄팀, 감사1팀, 감사2팀, 감사3팀, 감사4팀)	연락처	380-4212,216,225,232,233,235,239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매년 감사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을 각급 학교에 통보, 홈페이지에 탑재 하고 감사 시 교육전문직 참여, 시민참여 감사 제도 활용, 피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며, 전교조광주지부 또는 광주교사노조의 감사 요청 시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지), 제7조(감사의 방법), 제9조(자료제출 요구), 제21조(감사의 공개)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이행계획**

- 매년 감사결과 공통 및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집[감사길라잡이]으로 발간하여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책자로 보급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감사 결과를 분기별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음
- 학교 감사 시 교육활동 분야는 교육전문직이 참여하고 있음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사립유치원 포함) 워크숍(권익위 주관)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음
- 감사 착안사항은 간소화하도록 하고, 감사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감사는 권위적이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전교조광주지부 또는 광주교사노조의 감사 요청 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제69조【감사 제도의 개선】 ④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무업무분야 감사를 담당할 교육 전문직을 감사담당 팀당 1인 이상 감사 부서에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1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5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제28조 제1항,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22조 제1항, 제2항

□ **이행계획**

- 감사부서의 교무학사 전담 교육전문직원 3명 배치

제70조【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급 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학급신문·학급문집 발간 등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 예산에 학년교육과정 운영비와 학급운영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학급 운영비의 경우, 학급당 30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학급운영비 집행 시 담임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은 학급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관 신용카드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이 용이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급교육 활동경비를 학급 담임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용도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특정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46
---------	----------------	-----	----------

□ **해설**

-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30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학급운영비 집행의 용이성, 자율성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행정예산과-12622(2021.11.23.)

□ **이행계획**

- 학교회계예산편성 운영지침 수립 및 안내 시 학급신문·학급문집 발간 등에 따른 비용을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안내 및 확인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립 시(권장사업) 반영 예정(학급 운영비 30만원 이상 편성 등)
- 2023년 학급운영비 집행 매뉴얼 안내 예정

제70조【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 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활동, 각종 실습 및 견학활동,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방과 후(토요일, 공휴일 포함)의 학급별 과외 활동에 대해 출장 처리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 초과 근무를 인정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다문화교육팀)	연락처	380-4313 380-4368 380-4363
---------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이행계획

- 출장 명령 및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게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동시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
-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안내
-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 참고사항

- 교원인사과-4386(2018. 4. 24.) [국내 출장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내]
-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3회)

제10장 사학의 공공성 보장

제71조【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보조금 회수 등】 ①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정관을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4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변경 등)
- 정책기획과-3879(2022.4.4.) [학교법인 정관 개정 및 공개 방법 안내]

□ 이행계획

- 정관 이력 관리를 위해 학교법인 정관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자료마당-사립학교 자료실에 탑재하도록 지도·관리 시행 중

제71조【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보조금 회수 등】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예·결산서와 세부항목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5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31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이행계획

-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시행 중

제71조【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보조금 회수 등】 ③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보조금이 보조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70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 이행계획

- 보조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에 명시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할 예정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①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신규교사위탁채용권고 조례안을 준수하여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에서 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선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3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1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 이행계획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 교원 위탁채용제(제53조의2 ⑩항) 확대를 위하여 학교법인과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②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지침을 마련하며 1차 필기시험을 공립임용고사로 위탁하고 공·사립 동시지원도 가능하도록 채용안을 개선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3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1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이행계획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 교원 위탁채용제(제53조의2 ⑩항) 확대 및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지침 개선을 위해 교원단체와 사전 협의 실시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③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이 관계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원을 신규 채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임용 취소 또는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3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과 감독)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1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 정책기획과-3347(2022.5.17.) [2022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

이행계획

- 학생수 급감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규 교사의 채용은 반드시 교육청과 채용계획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재정결함 지원을 받지 않는 신규교사를 채용하여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등의 제반 사항에 따른 책임은 해당 학교법인에 있음을 사전 공지함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④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자체에서 실시한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의 민원수렴 창구(홈페이지 등)를 개설하여 응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 부조리를 예방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3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이행계획

-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공개채용 응시 지원자 민원수렴 창구(홈페이지 등) 마련하여 시행 중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에 규정한 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이행계획

-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운영되고 규정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행정지도 및 학교장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지도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⑥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 학교장의 징계의결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4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이행계획

-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학교의 장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이행을 촉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임원 승인 취소 검토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⑦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정년퇴직 교원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교장 급여 등 재정적 지원을 중지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 p.14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⑧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을 준수토록 하고, 다수득표자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이행계획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교원 중에서 다수득표자가 선출되도록 지도하고 있음

참고사항

- 교육자치과-1907(2018.3.8.) [2018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추진 안내]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⑨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감연수 지명자 추천이 인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교감자격연수 지명을 반려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이행계획

-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안 시행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⑩ 시교육청은 교감연수 지명 추천자에 대한 검증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자격 미달자에 대해 교감자격연수 지명을 반려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이행계획

-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시험 개선 방안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면접시험 엄정 시행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⑪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 임용 계획을 사학법인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 후 정교사 정원을 부여한 법인에 한해, 교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3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과 감독)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1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 정책기획과-3347(2022.5.17.) [2022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

□ 이행계획

- 학생수 급감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 지원을 받는 신규교사의 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탄력적인 교원 정·현원을 관리하고 있음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⑫ 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보고할 시에는 임용보고를 반려 처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3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과 감독)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1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 정책기획과-3347(2022.5.17.) [2022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

□ 이행계획

-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재정결함 지원을 받지 않는 신규교사를 채용하여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등의 제반 사항에 따른 책임은 해당 학교법인에 있음을 안내하였음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⑬ 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광주교육의 중등공립학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
- 「사립학교법」 제34조(해산 사유)

□ 이행계획

- 사립학교의 유형 전환 및 통·폐합 등으로 법인의 해산 및 합병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학교 설립 부서, 중등교원인사 담당 부서 등 관계 부서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⑭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신규교사 채용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지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법인 중, 기간제교사 비율이 과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학급 수 배정에서 우선 감축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3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1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 정책기획과-3347(2022.5.17.) [2022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

□ 이행계획

- 학교법인 내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매년 줄여 나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고,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

제73조【학교법인의 전보인사】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내 학교 간 전보인사원칙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마련하고, 재단 내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 이행계획

- 학교법인 내 학교 간 전보 있을 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마련된 전보인사원칙에 의해 시행하고, 교사본인의 서면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①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산하 사립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교사 수급 현황을 장기적으로 파악해서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이행계획

- 사립학교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채용 시 채용과목, 인원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 현재 시행 중
- 학교법인의 과원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순회교사, 복수전공 취득을 통한 과목변경 등으로 과원교사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과원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 정원 승인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 등 공동 노력하고, 사립학교의 통·폐합, 학급 감축, 학과 폐지, 학교의 유형 전환, 기부채납 등으로 발생하는 과원 교사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등)
- 「사립학교법」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 이행계획

- 사립학교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채용 시 채용과목, 인원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 현재 시행 중
- 사립학교 과원교사 특별채용은 공립학교 교원의 정원과 공립중등 신규교사 채용의 지속적 감소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기준 마련하여 법령과 예산 범위내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임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③ 시교육청은 과원 교사의 공립 채용 시 객관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을 공개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등)

□ 이행계획

- 사립학교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채용 시 채용과목, 인원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 현재 시행 중
- 학교법인의 과원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순회교사, 복수전공 취득을 통한 과목변경 등으로 과원교사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다만, 사립학교 과원교사 특별채용은 공립학교 교원의 정원과 공립중등 신규교사 채용의 지속적 감소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기준 마련하여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임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④ 시교육청은 사립 과원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 시 해당 교과목 및 필요 인원수를 포함한 계획을 해당 학교에 사전 공지하고, 해당자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이행계획

- 사립학교 과원교사 특별채용은 공립학교 교원의 정원과 공립중등 신규교사 채용의 지속적 감소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기준 마련하여 법령과 예산범위내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임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⑤ 시교육청은 사립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 과원 교사 중 공립학교에 해당 교과목이 없는 경우 부(복수)전공 연수 등을 통해 전과한 후 동일 법인에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3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 「사립학교법」 제4장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 **이행계획**

- 사립학교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채용 시 채용과목, 인원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 현재 시행 중
- 학교법인의 과원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순회교사, 복수전공 취득을 통한 과목변경 등으로 과원교사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다만, 사립학교 과원교사 특별채용은 공립학교 교원의 정원과 공립중등 신규교사 채용의 지속적 감소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기준 마련하여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임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⑥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상급 자격 취득, 각종 연수 및 포상 등에 있어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3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 **이행계획**

- 사립학교 교원이 상급자격 취득, 연수, 포상 등에 있어 공립 교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및 근무조건에 관한 정관 변경 시 교원 의견 수렴하도록 행정 지도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⑦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행정 지도와 관련한 사항은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해 불이행 시에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공문에 명시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2장 제6절 지원과 감독, 제43조(지원)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 제73조의2(벌칙)
-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 **이행계획**

- 사학기관 지도지원 사업 시 ‘사학기관 경영평가’ 공문 시행 시 관련 내용 명시
-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 시행 시 관련 내용 안내
- 사립학교 교직원 연수 시 관련 내용 연수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⑧ 시교육청은 교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감축, 교육과정변경, 학교의 유형 전환, 학교통폐합 등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이행계획

- 학급 배정, 학교 유형 전환 및 통·폐합 등 교원 신분에 영향이 있는 정책 수립·추진 시 교원인사 담당 부서 등 관계 부서 및 전교조광주시부와 협의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⑨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근무조건과 관련한 정관 변경 시 당해 학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4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변경 등)
-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이행계획

- 교원의 신분보장 및 근무조건과 관련한 정관 변경 시 당해학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행정지도
- 정관 이력 관리를 위해 학교법인 정관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자료마당-사립학교 자료실에 탑재하도록 지도·관리 시행 중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⑩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수급상 과목불일치교사가 발생한 경우 공립-사립, 사립-사립 간 순회 또는 파견근무를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제55조(복무)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겸임), 제7조의3(파견근무)
- 정책기획관-10389(2018.11.30.) 「자녀가 동일교에 재학·입학예정인 사립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상피제 운영 계획」

□ 이행계획

-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간, 교과간 교원의 수업 시수 격차 완화를 위해 순회 및 파견교사제를 운영함
- 학생수 감소 및 교원정원 감축에 따른 과원교사 발생에 능동적 대처
- 사립법인 내 순회, 사립법인간 순회 및 파견, 공립학교 또는 교육기관 순회 및 파견으로 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 노력할 것임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⑪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민주화 활동,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해직된 교사의 원직 복직을 권장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 이행계획

- 사립학교의 민주화 활동, 공익제도와 관련된 해직 교사의 원직복직을 위해 노력할 것임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⑫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부당하게 징계된 교사들이 본인이 입은 행·재정적 손실의 구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고문변호사 또는 관련 부서의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부당하게 징계(자체 징계)된 교사들이 본인이 입은 행·재정적 손실의 구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고문변호사 또는 관련 부서의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고문 변호사의 직무) 4호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6명 위촉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자치과-공개자료실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공동연수 시 안내

□ 참고사항

- 교원인사과-4743(2018.5.4.) [교권보호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청구 안내]

제75조【교권보호조례시행규칙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 ① 시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사와 법인 간에 발생하는 교육분쟁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2
-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6조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육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시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사립학교 교사와 법인간에 발생하는 교육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제75조【교권보호조례시행규칙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 ② 시교육청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에 대해 관할 행정을 엄격히 하고, 정상화 추진 시 교육청의 정이사 추천 권한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행사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4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 **이행계획**

- 매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에 대해 정상화 추진 실적 점검 및 보고
-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의 정상화 추진 시 정이사 추천 권한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시행

제75조【교권보호조례시행규칙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 ③ 시교육청은 초·중등 사립학교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양받기 위한 법적 노력을 경주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4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이행계획

-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 협의

제76조【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 ① 시교육청은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경영평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우선지원제도를 실시한다.

1. 교비회계의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의 합리성 여부
2. 학교운영지원체계 회계의 예산편성 과정과 합리성 여부
3. 법인의 학교운영비 비율의 적정성 여부
4. 법인의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4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 정책기획과-502(2022. 1. 12.) [2022년 사학기관 운영평가 기본계획 수립]

이행계획

-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행중
- 2022년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10월 예정)를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제76조【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 투명한 인사에 대해 지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및 시설지원을 위해 해당 국, 과 및 사학정책팀의 역할을 강화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교원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이행계획

- 사립학교 관련 각종지침 및 지원기준 협의, 추진상황 점검 등 사립학교와 관련된 재정지원 및 시설지원에 대하여 사학정책팀과 사전 협의 현재 시행 중

제76조【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 ③ 시교육청은 부정 채용하여 임용 취소된 교원의 인건비를 회수 조치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70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이행계획

- 부정 채용하여 임용 취소된 교원의 경우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에 명시함

제76조【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 ④ 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2팀)	연락처	380-4661
---------	---------------	-----	----------

□ 참고사항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없음(2022. 8. 현재)

제76조【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 ⑤ 시교육청은 학교표준운영비에서 법정 부담금을 전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70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보고와 감독)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2항

□ 이행계획

- 법인이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한 인건비(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운영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연2회 정산을 통해 보조금의 신청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감독하고 있음
 - * 기준재정수입액: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일정기준액을 초과한 순세계잉여금, 기타수입 등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예·결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음

제76조【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 ⑥ 시교육청은 법인전입금과 연동하여 재정 결함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70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1항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

□ 이행계획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비례한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함
 -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율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고 지원하고 있음

제76조【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 ⑦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과 관련된 지침 개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예산2팀)	연락처	380-4670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

□ 이행계획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 등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의견을 수렴하겠음

제76조【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 ⑧ 시교육청은 적정 정교사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학급조정, 행·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연락처	380-4252
---------	--------------	-----	----------

□ 근거(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교원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이행계획

- 사립 중등학교 적정 정교사 비율 유지 위한 사립 중등학교 교원 정·현원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청 위탁채용을 적극 권고하고, 이행여부에 따른 학급조정, 행·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 마련

제11장 성평등 학교 문화 구축과 유아·직업·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육의 공공성 확보

제77조【성 평등】 ① 시교육청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 성별과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보직교사 임명 및 업무분장을 할 때 여성 및 성소수자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7
---------	--------------	-----	----------

해설

- 인사 제도 운영상의 성 평등 실현 방안 마련

근거(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초·중등)」

이행계획

- 법령에 따라 성에 대한 제한 사항 없는 공개채용
- 휴직 및 휴가 사유 발생에 따른 휴직제도 및 휴가 이용 지도
- 전보 시 동점자 우선순위에 ‘만3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 우대 조항 포함

제77조【성 평등】 ③ 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배치 시 여학교는 여교원 1인 이상을, 남학교는 남교원 1인 이상을 가급적 배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1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19조, 제20조

이행계획

- 교장, 교감의 수급 요건과 희망을 감안하여 여학교에 가급적 1인 이상, 남학교에 1인 이상의 교장 또는 교감 배치함
- 추후 공립 남학교, 여학교에 교장 교감 배치 시 가급적 같은 성별의 관리자를 배치 하도록 노력함

참고사항

- 관내 공립 여학교 4교에 4인의 여교원, 남학교 3교에 5인의 남교원 배치(2022.3.1. 기준)

제77조【성 평등】 ④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 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팀)	연락처	380-4081
---------	-----------------	-----	----------

□ 근거(관련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 광주광역시교육청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계획
- 광주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이행계획

- 현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시교육청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관련 단체 및 전문가 협의 후 업무계획 수립
- 주요업무계획 수립 후 자료 제공

제77조【성 평등】 ⑤ 시교육청은 여학생의 생리에 의한 결석이나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에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진학팀)	연락처	380-4572
---------	------------	-----	----------

□ 해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항목에서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결석)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

□ 근거(관련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93호)」
-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이행계획

- 여학생의 생리 등으로 인한 결석은 성 평등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규정을 유지하면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제77조【성 평등】 ⑥ 시교육청은 학생의 생리로 인한 학교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7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여학생들이 생리현상 시 학교에서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3조

□ **이행계획**

- 고등학교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 학교보건기본방향 설명회 등을 통한 보건실 약품구입 예산에 생리용품 구입 예산 수립 안내

제78조【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①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 차별 및 성폭력(성희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학교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성범죄 발생을 인지한 학교장은 지체없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여 상급 기관에 보고한다.
2. 학교장은 성범죄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교원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시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사(감사) 시 피해자 관점의 법률 지원과 성폭력 사안처리, 피해자 2차 모니터링 및 학교 회복프로그램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⑤ 시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가해 관련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한다.

⑥ 시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관련 2차 가해자가 징계 또는 고발한다.

⑧ 위의 각 항의 실천을 위해 시교육청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단위 학교를 지원한다.

⑨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고충 상담방법과 구제 절차,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⑩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 여성혐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내 성범죄를 근절시킨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팀)	연락처	380-4081
---------	-----------------	-----	----------

□ 근거(관련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신고의무)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4조 (피해자의 권리)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7.차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한 징계)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 광주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이행계획

- 현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시교육청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관련 단체 및 전문가 협의 후 업무계획 수립
- 주요업무계획 수립 후 자료 제공

제78조【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⑦ 징계요구권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행위를 한 사안이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를 요구한다.

담당부서(팀)	감사관(감사3팀)	연락처	380-4022
---------	-----------	-----	----------

□ 해설

- 징계요구권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행위 사안이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여야 함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이행계획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행위 사안 발생 시 비위의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음

제79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① 시교육청은 임신 중의 여교원이 유산, 조산, 사산한 경우에도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 이행계획

-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교원이 출산휴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제79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②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대책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1.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은 매년 관내 교사들의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실질적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2.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를 통해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이행계획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교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가 요건에 부합한 교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내
-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를 통해 관내 교사들의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실질적 사용 보장 노력

제79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③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후(유산 포함) 3년 미만의 여성교원에 대하여 정규수업과 회의 참여 등 기본적인 근무 이외의 근무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퇴근 등 산모와 태아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이행계획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적 분위기 조성 및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실천 방안 강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휴가 요건에 부합한 경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내
-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단위 학교 내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자를 위한 배려(업무분장 등) 여부 협의 권고

제79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④ 시교육청은 여성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방학으로 인해 1월 미만인 경우, 그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315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결원된 기간 동안 기간제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79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⑤ 시교육청은 출산 휴가 및 보건 휴가 등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 이행계획

- 출산휴가, 보건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은 법령에서 정한 휴가이므로 학교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춰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제79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⑥ 시교육청은 관계법령에 의거 교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 이행계획

- 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부여받는 경조사휴가로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에 의해 보장받는 휴가임
- 학교장의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교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승인하도록 함

제79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⑦ 시교육청은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연수에 산입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4
---------	--------------	-----	----------

□ 해설

- 육아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입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이행계획

- 법령에 따라 육아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제79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⑧ 시교육청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이 성과급, 다면평가 기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315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42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이행계획

- 다면평가 시행 계획 및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안내 시,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 여부가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평가 감점 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내하겠음

제79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⑨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내에 수유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제반 시설(수유실, 냉장고, 임산부용 간이침대 등)이 확보되도록 권장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총무팀)	연락처	380-4104
---------	----------	-----	----------

해설

- 학교 내 수유실 확보 및 운영 물품 예산 등은 내부 수요 및 공간 확보 가능 여부, 자체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가능함

이행계획

- 각급 학교에 수유 대상 교직원이 있는 경우 수유실과 제반시설 확보 권장

제80조【교원 육아지원을 위한 탁아시설】 ①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 시 연수 장소에 교원의 유아용 탁아방을 설치 운영하며,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탁시설을 선정하여 재정지원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이행계획

- 교원의 연수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는 연수과정 계획 단계부터 유아가 있는 교원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에서도 연수과정 계획 단계부터 유아가 있는 교원의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에 안내하겠음

제80조【교원 육아지원을 위한 탁아시설】 ② 시교육청은 교직원 자녀 중 적정 인원 이상의 거점별 영아전담(0~2세)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총무과(총무팀)	연락처	380-4104
---------	----------	-----	----------

근거(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이행계획

- 보육시설 설치 수요 있을 시 거점형 시설 확보 등 제반 여건 검토

제81조【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 및 차별행위 금지】 ①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위하여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 차별 근절 등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내용을 전 교직원에게 공지한다.
 ②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연 1회 이상 해당 자격을 가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③ 시교육청은 유치원장 및 초·중등학교장 회의 시 성평등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팀)	연락처	380-4081
---------	-----------------	-----	----------

근거(관련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 「광주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이행계획

- 현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시교육청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제81조【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 및 차별행위 금지】 ④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신규 교사 연수 과정에 성평등 연수를 1시간 이상 배치한다.
 ⑤ 시교육청이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모든 연수 과정에서 모든 강사에게 성 인지 감수성이 높을 것을 요청하고, 강사에 의해 야기되는 혐오나 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의 내용을 담은 원고나 강의를 없도록 사전 안내·지도하며, 연수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내용의 유무를 점검하고 조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제6조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의 교육 연수 운영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시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연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운영 방향 안내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음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332(2022.1.5.) [2022년 교원 연수 운영 방향 안내]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숲, 생태 등)을 위한 유치원 건립을 추진하고, 무리한 병설 유치원 신·증설을 지양한다.

1. 유치원 건립 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전문가, 교원, 실무담당자, 학부모 등으로 학교시설사업 협의회를 구성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2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1팀)	연락처	380-4663 380-4176
---------	--------------------------------	-----	----------------------

□ 근거(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 이행계획

- 유치원 취학 수요 및 해당 권역 유아배치 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적절한 유치원 신·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유치원 건립 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회 등을 구성 시 사용자를 포함하여 구성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②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단순보고 공문 등을 교감 또는 원감이 지원하도록 한다.
2. 시교육청은 인사 관련 업무(채용, 신원조회, 채용 결과 보고)는 교사가 처리하지 않으며 (겸임)원감이 하도록 지도·감독한다.
3.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원에게 유아학비와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4
---------	----------------	-----	----------

□ 해설

- 유치원 교사가 유아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

□ 근거(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 이행계획

-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 (겸임)원감은 교무행정지원팀으로서 업무 총괄 및 실질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유치원(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팀 구성을 위한 업무정상화컨설팅 실시
- 교감연수 시 (겸임)원감이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안내
- 유치원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학교문화혁신 컨설팅 실시

□ **참고사항**

- 정책기획과-2103(2022.2.24.) [2022학년도 학교문화혁신 기본계획 안내]
- 정책기획과-1982(2022.2.22.)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안내]
- 유아특수교육과-10847(2021.7.9.) [2021학년도 유치원 교직원회 운영 컨설팅 계획 안내]
- 유아특수교육과-19825(2021.12.31.) [2021학년도 유치원 교직원회 운영 컨설팅 결과 보고]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②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이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4. 3학급 이상 유치원에서는 전임원감이 보결수업을 담당하며, 겸임 원감이 있는 유치원에 시교육청에서는 보결강사를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8
---------	----------------	-----	----------

□ **해설**

- 수업결손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 순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여 교사들이 3일 이상 공석 시 보결수업 지원

□ **근거(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이행계획**

- 수업결손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 순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여 교사들이 3일 이상 공석 시 보결수업 지원
- 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업 결손 시 전임원감이 보결 수업 담당

□ **참고사항**

- 유아특수교육과-6628(2022.4.14.) [(안내) 2022학년도 유치원 순회 기간제교사 운영 안내]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③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원아에게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6
---------	---------------	-----	----------

□ **해설**

- 공립유치원은 2012학년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실시

□ **근거(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에 대해 2012학년도부터 무상의무급식 실시

이행계획

- 매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실시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④ 시교육청과 유치원 평가 시 일일교육안 평가를 당일 일일교육계획안으로 대체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2
---------	----------------	-----	----------

해설

- 평가 당일 일일교육계획안만 작성

근거(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이행계획

- 유치원 자체평가 시행으로 일일교육계획안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사항

- 유아특수교육과-3532(2020.2.27.) [제5주기('20~'22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 수립]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⑤ 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에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유치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근무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7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근무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

이행계획

- 유치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근무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 근절 담당 부서(감사관)에서 각 유치원에 갑질 근절계획 수립·이행 및 자체 예방교육(연2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안내·점검하고 있음

참고사항

- 감사관-4404(2022.6.30.)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 알림]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⑥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7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의 근무평정, 교원성과급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이행계획

- 병설유치원 교사의 경우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급 산정 시 초등교사와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음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15148(2022.6.13.) [2022학년도 교사 다면평가 시행 계획 안내]
- 유아특수교육과-4433(2022.3.10.) [2022년도 유치원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급 지급 지침 및 지급 결과 제출 안내]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⑦ 시교육청은 교육부 배정 정원 내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정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1. 유치원 정규교사가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 중에는 41조 연수를 쓸 수 있도록 한다.
2. 방학 중에는 강사를 채용하며, 운영에 따른 강사비를 유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규교사가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7
---------	----------------	-----	----------

해설

-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음
- 방학중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정규교사를 대체할 강사를 채용할 수 있음
- 정규교사가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근거(관련규정)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 「2022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직교원 운영지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 이행계획

- 유치원 교사 배치기준에 따라 일반학급 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남은 정원을 방과후 과정 교사로 배치할 수 있음
- 교사는 방학 중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있음
- 원장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유치원 교사 배치기준」(광주광역시교육청)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⑧ 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7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위해 노력함

□ 근거(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 이행계획

- 현재 전체 단설유치원(12개원)에 보건교사 배치되어 있음
- 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적극 개선

□ 참고사항

-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⑨ 시교육청은 유치원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1.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함께 유치원 갑질 문제 해결과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회(교육전문직과 교사 포함)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7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함께 유치원 갑질 문화 근절 및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함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

□ 이행계획

- 갑질 근절 담당 부서(감사관)에서 각 유치원에 갑질 근절계획 수립·이행 및 자체 예방교육(연2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안내·점검하고 있음
- 갑질 근절 담당 부서(감사관)에서 조직 내 갑질 근절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운영
- 시교육청은 유치원 갑질 문제 해결과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

□ 참고사항

- 감사관-5298(2021.7.16.) [갑질 근절 기본계획 알림]
- 감사관-4404(2022.6.30.)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 알림]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⑨ 시교육청은 유치원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2. 시교육청은 유아교육 전문직 및 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갑질 문화 근절과 예방을 위한 연수를 연2회 이상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4
---------	----------------	-----	----------

□ 해설

- 유치원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연수 실시 노력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8)
-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

□ **이행계획**

- 유치원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학교문화혁신 컨설팅 실시
-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주관 유치원 관리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갑질 문화 근절과 예방) 연2회 이상 계획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

□ **참고사항**

- 감사관-4404(2022.6.30.)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 알림]
- 유아특수교육과-19953(2020.12.28.) [2021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관리자 역량강화 직무연수 1~2기 운영 계획]
- 유아특수교육과-11458(2021.7.21.) [2021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신규원장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계획]
-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과-1430(2022.7.4.) [2022년 유치원 관리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안내]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⑨ 시교육청은 유치원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3. 전교조광주지부 또는 광주교사노조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진상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7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관련 진상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함

□ **근거(관련규정)**

- 「갑질 근절 매뉴얼」

□ **이행계획**

- 갑질 발생 시 시교육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하고 있음
- 시교육청은 갑질문화 근절,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관련 진상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감사관-4404(2022.6.30.)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 알림]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⑩ 시교육청은 유치원 보결수업비 지급 기준 시간을 초등학교에 준하여 적용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연락처	380-4289
---------	----------------	-----	----------

□ **해설**

- 유치원은 단위 수업시간이 없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초등학교(한 교시 40분 수업 기준) 보결수업비에 준하여 60분 수업에 해당하는 보결수업수당 지급
- 각 유치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결수업수당 지급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수당의 지급)
- 「202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이행계획**

- 「2023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 예정
- 2023 유치원교육과정 설명회, 원장, 원감 협의회 등에서 안내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특성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정책협의 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5
---------	--------------	-----	----------

□ **해설**

- 직업교육 정책협의 시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협의함

□ **이행계획**

- 직업교육 주요 현안 및 정책 수립시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을 연 2회 협의(직업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전교조광주시부 직업교육 위원장과 광주교사노조 위원이 포함되어 있음)하고 있음
- 직업교육 별도 협의 사안에 대해서는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수시 협의(협의회 운영 또는 유선 및 서면 협의 등)할 예정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20082(2022.8.8.) [2022 직업교육 발전협의회 역할 및 구성(안)]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② 시교육청은 특성화고의 실험 실습시설 및 학교 환경 개선, 장학금 확대, 학생 및 교사 실습복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2
---------	--------------	-----	----------

□ **해설**

- 직업계고(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에 대해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 구축, 기자재 구입, 유해환경 개선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 **근거(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 「2022년 광주교육」 3-가-3 직업교육 내실화
-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이행계획**

- 광주 직업교육 추진업무 수립시 단위학교 의견 충분히 반영
- 학기초 및 예산 편성시 단위학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 필요한 예산 편성
- 단위학교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해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위학교 지원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4012(2022.2.16.)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안)]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③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2
---------	--------------	-----	----------

□ **해설**

- 2015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 시 교육부 및 시교육청의 교육과정 고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 학교별 특성화고의 특색 및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 「2022년 광주교육」 3-가-3 직업교육 내실화
-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이행계획**

-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지원
- 직업계고 학점제 및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 지원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8137(2022.3.24.) [2022년 NCS 기반 교육과정 지원 계획]
- 중등교육과-6210(2022.3.7.) [2022년 광주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
- 중등교육과-8438(2022.3.28.) [2022년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④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 전공별 산업체 현장 견학 및 실기 연수를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2
---------	--------------	-----	----------

□ **해설**

- 특성화고 전문교과의 교육과정 운영상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에 필요한 맞춤형 교원 연수가 필요하여,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공별 산업체 현장 견학 및 실기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 「2022년 광주교육」 3-가-3 직업교육 내실화
-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이행계획**

-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해당 내용 포함
- 단위학교 및 지역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연수 개설 지원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11598(2022.4.28.) [2022년 직업계고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운영 지원 계획]
- 중등교육과-10364(2022.4.15.) [2022학년도 직업계고 교원연수 대상자 추천]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⑤ 시교육청은 전문 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업체 파견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5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 「2022년 광주교육」 3-가-3 직업교육 내실화
-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이행계획

-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해당 내용 포함
- 단위학교 및 지역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연수 개설 지원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11598(2022.4.28.) [2022년 직업계고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운영 지원 계획]
- 중등교육과-10364(2022.4.15.) [2022학년도 직업계고 교원연수 대상자 추천]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⑥ 시교육청은 광주 직업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용역을 할 때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5
---------	--------------	-----	----------

□ 해설

- 광주 직업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용역을 할 때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와 사전 협의 실시

□ 이행계획

- 직업교육을 위한 연구 용역 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위원이 포함된 직업교육발전협의회 안건 상정 또는 수시 협의 체제(협의회 운영 또는 유선 및 서면 협의 등)를 통해 협의 실시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966(2022.1.12.) [2021년 발전협의회(정기 2차) 결과 보고]
- 안건 (1-2)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⑦ 시교육청은 학교의 예산 중 전공별 실험실습비가 기능반 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기능반 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5
---------	--------------	-----	----------

□ 해설

- 전공심화동아리(구. 기능반) 프로그램 운영비로 실험실습비가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와 학생의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노력 요청

□ 근거(관련규정)

- 「국내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이행계획

- 전공심화동아리 운영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사용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 전공심화동아리 활동으로 교사나 학생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월 점검과 함께 7~8월 학교 방문 컨설팅을 통해 점검하고 있음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10858(2022.4.21.) [2022년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1차 훈련지원비 교부]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⑧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 전공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규교사 충원률이 낮은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정규 교원을 선발하여 배치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2
---------	--------------	-----	----------

□ 근거(관련규정)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정원의 배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 이행계획

- 학과재구조화 및 중기 학생 수급·배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과 정규 교사를 적기에 선발 충원
- 전공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규교사 충원률이 낮은 전문교과의 정규 교원 선발 배치 노력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⑨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급편성은 내실 있는 실험실습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2
---------	--------------	-----	----------

□ 해설

- 전년도 신입생 입학 현황, 각급학교 배치시설 현황,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성화고 학급을 배정하며, 학급당 학생수가 22명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 이행계획

- 학령인구 감소 및 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2025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내외 배치 예정
-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는 학급당 18명이며, 1개학과 3개학급(1,2,3학년 전체)의 경우 산업수요맞춤형고에 준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배정함

□ 참고사항

- 행정예산과-9697(2021.9.13.) [2022~2026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 알림]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⑩ 시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기능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1. 학교는 기능반 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청에 보고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5
---------	--------------	-----	----------

□ 해설

- 전공심화동아리(구. 기능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 근거(관련규정)

- 「국내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이행계획

- 전공심화동아리 활동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월 점검한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음
- 시 교육청은 보고된 자체 체크리스트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 발생시 해당 방문을 시정하고 있음. 또한 학교 자체 체크리스트 점검과 함께 6~8월 학교 방문 컨설팅을 통해 추가 점검을 하고 있음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15940(2022.6.22.) [2022년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컨설팅 결과 보고]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⑩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실습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실습교육과정에 맞는 안전장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적정 예산을 지원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4
---------	--------------	-----	----------

□ 해설

- 실험·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 사용의 필요성 강조

□ 근거(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 「2022년 광주교육」 3-가-3 직업교육 내실화

□ 이행계획

- 광주 직업교육 추진업무 수립시 단위학교 의견 충분히 반영함
- 안전장구(귀마개, 방진마스크, 보호복, 보안면, 안전장갑, 안전화 등) 기준에 따라 학교별 안전장구 수요조사를 실시함
- 학교별 실험실습 안전장구 수요조사에 따른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4012(2022.2.16.)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안)]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⑪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과 협력, 실습실 유해 환경을 전수조사 하여 산업현장에 준하는 정도의 실습실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4
---------	--------------	-----	----------

□ 해설

- 직업계고 실험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방지

□ 근거(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 2022년 광주교육 3-가-3 직업교육 내실화

□ **이행계획**

- 작업환경측정 예산 편성 후 산업안전법을 준용하여 실험실습실 유해물질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건강진단 예산을 편성하여 특수건강 진단 사업을 추진함
- 실습실 유해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4012(2022.2.16.)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안)]

제84조【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① 시교육청은 직업계고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2학기 이전에 조기 파견할 경우는 해당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570-2970
---------	--------------	-----	----------

□ **해설**

- 직업계고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 시작 시기와 기간을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학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제5741호)」 제8조(학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제9조(현장실습지원위원회)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9조(현장실습의 운영 시기), 제10조(현장실습의 기간)

□ **이행계획**

- 매월 취업담당부장교사 회의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 안내
- 학교 취업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대상 현장실습 관련 규정 연수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21155(2022.8.22.) [2022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확정 알림]

제84조【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②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제 단체와 ‘현장실습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하고, 각 학교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안전한 현장실습이 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570-2970
---------	--------------	-----	----------

□ 해설

- 직업계고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안전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교육청은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제5741호)」 제8조(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제9조(현장실습지원위원회)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4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 이행계획

-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확인
- 2022학년도 교육청 현장실습 지원위원회 구성(완료) 및 수시 개최를 통하여 현장실습의 주요 사안을 심의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16308(2022.6.27.)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습중심 현장실습 위원회 구성(안)]

제84조【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③ 시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선도 기업 인증, 현장실습 업체 발굴 및 확인, 노동인권 보장, 산업재해 사고 예방 및 대처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보장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570-2970
---------	--------------	-----	----------

□ 해설

-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 근거(관련규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제5935호)」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등)

□ **이행계획**

- 취업지원관을 증원(총 6명)하여 취업지원센터에 배치(완료)
- 시청-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체 선정
-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센터에서 산업안전 보건교육, 현장실습 직전 교육 실시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9483(2022.4.7.)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2021년 결과 보고 제출]
- 중등교육과-24223(2021.9.8.) [2022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채용 및 배치 계획(안)]

제84조【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④ 시교육청은 현장실습 학생의 노동권 보장과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실습 전에 학교에서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을 10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570-2970
---------	--------------	-----	----------

□ **해설**

- 학습중심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고, 산업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전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제5741호)」 제13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15조(현장실습생 지도) 1.(사전교육)

□ **이행계획**

- 학습중심 현장실습 전 학생들이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일선 학교 지도 점검
- 특성화고 포털(HIFIVE)에서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이수 현황을 확인
-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통해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21155(2022.8.22.) [2022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확정 알림]
- 중등교육과-12150(2022.5.9.) [2022년 현장실습생을 위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안내]

제84조【특성학교 현장실습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⑤ 시교육청은 특성학교 교원 대상 연수에서 노동인권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시간을 반드시 편성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2
---------	--------------	-----	----------

□ **해설**

- 직업계고 교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를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을 확보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2022년 광주교육」 3-가-3 직업교육 내실화
-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이행계획**

- 매년 직업계고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직무연수 운영
- 전체 직업계고에서 ‘노동인권’교과를 편성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노동인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설명회 실시 및 자료 제공
- 매년 직업계고 교원을 대상으로 단위학교마다 ‘노동인권교사동아리’ 운영비 지원

□ **참고사항**

- 중등교육과-6964(2022.3.14.) [2022년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사동아리 지원 계획]
- 중등교육과-11792(2022.5.2.) [2022년 노동인권 교육감 인정도서 수정 계획]
- 중등교육과-16548(2022.6.29.) [2022년 교사가 알아야할 노동인권 직무연수 운영계획]
- 중등교육과-19267(2022.7.26.) [202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워크숍 운영 계획]

※ (추진실적)

- 전체 직업계고 2022년 신입생 대상 ‘노동인권’ 교과 편성(50학과중 43학과)
- 2022 교사가 알아야할 노동인권 직무연수 실시(2022.8.8.~8.9., 11명 이수)
- 202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워크숍 실시(2022.8.10.~8.12.)
- 2022년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사동아리 운영 지원(학교별 2,000천원 지원)
- 2019년 개발된 ‘노동인권’ 교육감 인정도서(교과서,지도서) 수정(진행 중)

제84조【특성학교 현장실습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⑥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청 단위의 노동인권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력하여 강사 양성, 교재 개발, 교원 연수, 학생 교육 등의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380-4595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학생 교육), 제6조(교원 연수)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력하여 진행할 것임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함으로써 교섭 합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임

제85조【특성화고 학생 유치 지원】 ① 시교육청은 직업교육 홍보 및 특성화고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중학교 교사 및 학생, 학부모들에게 보급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특성화고 신입생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학교별 신입생 홍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3
---------	--------------	-----	----------

□ 해설

- 학령인구 감소, 직업계고 선호도 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업계고의 강점을 부각하는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필요

□ 근거(관련규정)

- 「2022년 광주교육」 3-가-3 직업교육 내실화
-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이행계획

- (학교주도 → 교육청주도) 직업계고등학교 홍보를 학교 중심에서 교육청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정보제공 홍보관 구축) 중학교 학생·교사,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구인 기업 등에 직업계고 및 고졸 기술기능 인재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성장경로 모형 제시) ‘직업계고 입학(학과 정보 등) → 교육과정(현장실습 등) → 취업 → 후학습’ 성장경로에 따른 촘촘한 정보 서비스 필요
- (홍보활동의 다양화) 정보획득 경로의 급격한 변화(아날로그 → 디지털, 포털사이트 → SNS)에 대응하여, 다양한 소통(연수, 체험, 영상 등)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 참고사항

- 2022년 직업계고 학과체험 및 홍보활동 예산(중등교육과-11512)
 - 학교별 예산 교부액: 130,000천 원(교당 10,000천원×13교)
 - 홍보 및 체험활동 거점학교*: 60,000천 원(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추가 교부
 - * 교육청과 별도 협의를 통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체 직업교육 홍보활동에 활용

제85조【특성학교 학생 유치 지원】 ② 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포함하여 특성학교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연락처	380-4353
---------	--------------	-----	----------

□ 해설

- 중학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및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성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직업교육 진로지도 방향 제시 및 인식 제고

□ 근거(관련규정)

- 「2022년 광주교육」 3-가-3 직업교육 내실화
- 2022년 광주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이행계획

- 관리자 대상 연수: 동서부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정지원과와 협업으로 관리자 대상 직업교육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대상 진로 아카데미: 교육연구정보원 진로교육부와 협업으로 학부모 대상 진로 아카데미 개최를 통한 직업교육 이해 토크콘서트 운영(2022.7.21.)
- 교원 대상 연수: 중학교 진로상담교사 및 3학년 부장(담임) 교사 대상 직업교육 이해를 통한 진로상담 역량강화 현장맞춤형 연수 개설 운영
* (실시 예정) 9월~10월 / (교육청) 직업교육이해 연수

□ 참고사항

- ※ (추진실적) 관내 중학교(93교) 관리자 연수 실시
 - 서부교육지원청: 2022. 4.19.(화), 21.(목), 22.(금), 13:00~16:30 / 59교
 - 동부교육지원청: 2022. 5.26.(목), 27.(금), 14:00~16:30 / 32교
 -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취업지원센터-공동실습소
 - 내용: 직업계고 졸업생이 들려주는 토크콘서트 - 공동실습소 견학 등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특수학교(급) 교실 크기를 법정 규모로 확보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2팀)	연락처	380-4175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시설과-10216(2020.12.11.)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기준(안) 수립]

□ **이행계획**

- 신설 및 전면 개축 사업시 특수학교(급) 교실은 일반학교 보통교실 크기로 설치 (초등 60.75㎡, 중등 63㎡)
- 기설학교 특수학급 교실 증설 시 50㎡이상 설치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② 시교육청은 신설 특수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하여 개교 준비팀을 6개월전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3
---------	----------------	-----	----------

□ **근거(관련규정)**

- 유아특수교육과-4393(2020.3.9.) [선운2지구 특수학교 설립 운영 기본 계획(안)]
- 행정예산과-10277(2021.9.30.) [신설학교 개교경비 2022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 추가 알림]

□ **이행계획**

- 신설 특수학교 개교 준비 TF팀 교육과정 편성·운영 분과를 구성(2022.4.12.)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신설 특수학교 개교 연기(2023.3. → 2024.3.)로 TF팀 교육과정 편성·운영 분과를 2024. 2.까지 연장 운영

□ **참고사항**

- 유아특수교육과-6485(2022.4.12.) [(가칭) 선운특수학교 개교 준비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 행정예산과-6190(2022.7.18.) [광주선운2지구 내 가칭)선운특수학교 개교 예정일 연기 알림]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③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운영 예산으로 학교 예산 표준운영비 1% 내외로 확보토록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한다.
 ④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현장실습비 및 현장학습비를 증액하도록 공문시행 등을 통해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2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이행계획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특수교육 운영 예산을 편성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특수교육 운영 예산 현황 제출 안내 공문 발송
- 교육전문직 학교지원 방문, 특수학교 교장(감) 협의회 시 직업교육 및 사회적응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관련 예산 확보되도록 적극 권고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⑤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언론 활동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2
---------	----------------	-----	----------

□ 해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참고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4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교육청의 방침과 부합함
- 인권존중의 학교실현 기본 계획, 2년마다 진행되는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또는 점검함으로써 교섭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임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⑥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활성화한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한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 운영한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교조광주지부와 특수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	717-6802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이행계획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지원 업무 수행
- 전교조 등 교원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연수 지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 2022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⑦ 시교육청은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각종교구 및 학습보조기지원, 통학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특수학교(급)의 장애학생에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	717-6802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이행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규정 및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에 의해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지원,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통학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수립
- 2022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⑧ 시교육청은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부족한 차량을 증차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특수운영팀)	연락처	380-4433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이행계획**

- 특수교육 담당팀(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팀)과 논의하여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영 실태 조사 실시
- 특수학교에서 증차 요구 시 증차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⑨ 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의 진로 및 직업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담당교사 확대배치, 직업교육실 설치, 전공과 신·증설 등을 포함한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717-6803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 **이행계획**

-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 및 취업 현황 등 실태 조사 매년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5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완료, 2024년 신설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예정임
-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진로진학상담 및 진로교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전담교사가 학생, 학부모와 진로진학상담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시설과 설비 지원
-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시설 개선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 특수학교에 노후화된 직업교육실 현대화를 위하여 2022년 추경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거점학교(광주전자공업고)에 특교 확보하여 시설개선 추진 중임
- 향후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를 위하여 교육감 공약으로 연차계획에 의하여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임

□ **참고사항**

- 기존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증설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 있어 추후 특수학교 신설 시 적정규모의 전공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⑩ 시교육청은 가정, 병원,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중복장애 및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장애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순회학급, 재택학급 등을 설치·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5
---------	----------------	-----	----------

해설

-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순회학급, 재택학급을 운영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이행계획

- 가정, 병원,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중복장애 및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에 순회학급 설치
- 특수학교 순회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참고사항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⑪ 시교육청은 직속산하기관의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2
---------	--------------	-----	----------

근거(관련규정)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이행계획

- 현재 송정도서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으로 향후 직속기관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 개설되도록 노력
- 현재 교육감이 지정(2021.3.1.~2023.2.28.)한 평생학습관 중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4개 기관으로 향후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때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확대하도록 노력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⑫ 시교육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정보보호팀)	연락처	380-4497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이행계획**

- 홈페이지 개편 시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현하고,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접근성 여부 점검
- 매년 웹사이트 접근성 및 호환성 수준진단을 통한 정보 접근성 관리

□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4982(2020.12.24.) [2020년 공공 웹사이트 품질 관리 수준진단 결과 최종보고서 송부]
- 교육자치과-9831(2021.9.30.) [2021년 시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 교육자치과-13191(2021.12.22.) [2021년 시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사업 검수 결과 보고]

제87조【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① 시교육청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유·초·중·고등학교에 균형 있게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5
---------	-----------------	-----	----------

□ **해설**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기 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립 및 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한 학교에 특수학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이행계획**

- 특수교육대상자 진급(입학) 선정·배치 계획 수립 전 수요조사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

제87조【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② 시교육청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1. 시교육청은 특수 유아 통합학급에 학기 중 학생이 배치될 경우 지원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5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통합학급에 학기 중 배치될 경우 특수교육실무사 또는 사회복지요원을 지원하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이행계획

- 특수교육실무사 정수 확대 및 사회복지요원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 동·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가 통합학급에 학기 중 배치될 경우 필요 시 지원하도록 함

제87조【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③ 시교육청은 장애학생 교육 보조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 실무사 및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상황 관리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5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병역법」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 이행계획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따른 각 학교의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제87조【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④ 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및 학습보조를 위해 특수교육실무사를 시교육청 자체에서 채용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연수 후 해당 학교에 배치한다.

담당부서(팀)	노동정책과(공무직인사팀)	연락처	380-4852
---------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규정」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실무사를 자체 채용, 교육훈련 후 해당 학교에 배치

제87조【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⑤ 시교육청은 통합학급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	717-6802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 이행계획

- 국립특수교육원 위탁을 통해 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 통합교육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의 교육 연수 운영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 「2022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제87조【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⑥ 시교육청은 학교 평가 항목으로 통합교육 지원 부문이 지표나 설문 항목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정책기획팀)	연락처	380-4243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평가의 기준)

□ 이행계획

- 학교평가를 학교로 권한 이양하여 학교에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 학교 자체평가 계획 수립 시 해당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제87조【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⑦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확충한다.

⑨ 시교육청은 장애 청소년 및 성인이 교육문화수련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법정 규모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시설과(학교시설2팀)	연락처	380-4188
---------	---------------	-----	----------

□ 해설

- 모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확충하고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설치 노력하여야 함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2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행계획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2004년부터 일반 학교에 적용되어, 그 후 법규 강화 및 2004년 이전 준공된 학교는 현 법령에 맞게 100% 설치하는 구조적으로 불가한 학교가 많은 실정임
- 2014년 이후 신설되는 학교는 장애인편의시설(BF인증) 의무 취득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100% 적정 설치하고 있음
- 시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적정 설치율 상향을 위해 예산 확보 및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음

제87조【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⑧ 시교육청은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717-6803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이행계획

- 모든 학교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공문 안내
- 장애이해 인식개선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 장애이해교육 수업자료(신문, 동영상 등) 학교 보급 및 안내
- 학교별 장애인식개선 행사 및 장애체험활동 등 추진

□ **참고사항**

- 2022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교육부)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 2022년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계획
- 2021년부터는 장애이해교육 수업자료(신문)를 매년 2회 발간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 교육청 산하 기관까지 보급하고 있음

제88조【특수교육의 전문성 신장】 ① 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원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3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 **이행계획**

- 초·중·고 특수학급 담임교사와 특수학교 교원은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교원으로 100% 임용하고 있음

제88조【특수교육의 전문성 신장】 ②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 실시를 위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내에 진단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 내 진단평가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2. 차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부터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 교육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있을 시 수시로 개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선정 및 배치 등의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결과는 공개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2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14호)

□ **이행계획**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교육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추천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선정배치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있을 시 수시로 개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회의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공개

□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14호)」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제88조【특수교육의 전문성 신장】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④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직무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과목을 개설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	717-6802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 **이행계획**

- 특수교육담당 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과정 개설 운영
- 직무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과목을 개설 운영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 안내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 「2022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제88조【특수교육의 전문성 신장】 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업무담당 전문직을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업무담당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을 특수교육전공자로 배치하고, 특수교육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1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5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제28조 제1항,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22조 제1항, 제2항

이행계획

-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전공 업무담당 전문직 배치 완료

제89조【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정상화】 ① 방과후 교육비 중 개별지원의 경우 카드결제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	717-6802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이행계획

- 타시도 사례, 업무경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방과후 교육비 중 개별 지원에 대한 카드결제 도입 검토

참고사항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제89조【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정상화】 ② 시교육청은 특수교사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요원 업무는 특수교사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5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병역법」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이행계획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따른 각 학교의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참고사항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제89조【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정상화】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사가 교육 중에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하여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2항

□ 이행계획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특수교사가 교육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특별휴가 등으로 보호조치
-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전문상담사, 협약된 전문상담위원(상담기관)·전문병원 연계를 통한 정신적 상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제90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①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연계 체재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 선정하고 학부모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홍보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	717-6802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이행계획

- 지역사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체육시설업,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선정 및 홍보

□ 참고사항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제90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②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산하에 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1. 구성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유·초·중·고 특수교사의 참여를 보장한다.
2. 특수교육정책소위원회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주최하고 회의 결과는 특수교육정책소위원회 위원 협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2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이행계획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산하에 정책소위원회 구성
 -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유·초·중·고 특수교사를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
- 특수교육정책소위원회 회의 실시
- 회의 결과는 협의를 거쳐 공개여부 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공개

□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14호)」

제90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특수교육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학급당 법정 정원을 준수하고 정원 초과시 학급을 증설하도록 노력한다.
2. 특수학교 초등교사를 2022학년도 특수학교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3
---------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유아특수교육과-1662(2022.1.27.)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 이행계획

-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학급당 법정 정원 4명을 준수하고, 정원 초과시 행정예산과와 협조하여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증설
- 특수학교 초등부(유치부 제외)에는 3학년 이상 2학급마다 1인씩 교과전담교사 배치(2022학년도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

제90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④ 시교육청은 지체장애를 동반한 중증중복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학급)를 중증중복장애 특수학교(학급)으로 지정하고, 중증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5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지체장애를 동반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선정·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하도록 노력함

- 시교육청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배치된 특수학교(급)은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가급적 지원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이행계획

- 2023학년도 진학(입학)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공문 시행 시 중도 중복장애 선정 배치 계획도 함께 안내하며, 희망자에 한해서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실시
- 교육부의 시도별 특수교육교원 정원 배정을 고려하여 자체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 배치하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배치된 특수학교(급)은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

제90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5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이행계획

- 특수교육실무사 정수 확대 및 사회복지요원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 동구 자활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분야 사업을 서구, 남구, 광산구 자활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 요청

제91조【통합교육지원】 ① 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운영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운영은 독자적인 업무로 인정하여 학교 내에서 타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2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이행계획

-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에 안내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따른 각 학교의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참고사항

- 「2022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 「2022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

제91조【통합교육지원】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통합유치원을 신설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행정예산과(학교설립2팀)	연락처	380-4663
---------	---------------	-----	----------

해설

-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일반 유아를 완전통합으로 교육하는 통합유치원 신설 요구

근거(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통합교육)

이행계획

- 통합유치원 신설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선정·배치 여건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적합한 설치 형태와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따른 교원배치 등을 검토
- 유아의 장애정도와 배치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유치원 설립 요인이 생길 경우 통합유치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

제91조【통합교육지원】 ④ 시교육청은 통합교육 지원 및 특수학급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연락처	380-4295
---------	----------------	-----	----------

근거(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사 정수 확대 및 사회복지요원 배치를 위해 노력
- 동구 자활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분야 사업을 서구, 남구, 광산구 자활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 요청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2인을 배치한다. 특히 학생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2
---------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정원의 배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정원의 배정)

□ 이행계획

- 보건교사 정원 배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2인 배치 추진
- 학생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위한 예산을 지원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②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지원 인력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보건교사가 병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원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7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유고 시 보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지원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 이행계획

- 기간제 교원 및 강사 등의 운영 지침에 반영하여 이행 중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③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연구실적 가산점, 교생실습지도 가산점,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유공교원 포상기회에서 다른 교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2
---------	--------------	-----	----------

□ 해설

- 일반교사와 보건교사의 동일한 근무 여건 제공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41조 등
- 「교육공무원법」 제5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제28조 제1항,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22조 제1항, 제2항

□ 이행계획

-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한 교과별로 차별하고 있지 않으며, 유공교원 포상 등에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④ 시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보건교사에 의해 1개 학년 이상,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7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이 1개학년 이상, 17차시 이상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9조

□ 이행계획

- 초등학교의 경우 관련교과 및 창체 시간등을 활용하여, 중·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교과등을 활용하여 보건수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컨설팅단 등을 운영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⑤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연수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연 1회 이상 개설한다.
2.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법상 면허자격유지를 위한 직무연수를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3.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보수교육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7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역량강화 연수 및 의료인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근거(관련규정)

- 「의료법」 제25조, 제30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 이행계획

-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위한 본예산 편성
- 체육예술융합교육과-25954(2021.12.24.) [보건교사 의료인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각급학교 공문 안내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⑥ 시교육청은 학교 보건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장학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 담당부서를 정하여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이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연차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1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5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제28조 제1항,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22조 제1항, 제2항

□ 이행계획

- 학교 보건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시교육청 보건교육 담당 부서에 보건교사 출신 교육 전문직원 배치 완료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⑦ 시교육청은 보건교육과 보건업무지원을 위한 (가칭) 보건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7
---------	-------------------	-----	----------

해설

- 시교육청은 보건교육자료 개발 및 정보 제공, 학교현장의 보건교육 운영 지원 등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칭)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추진함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
- 「광부광역시교육청 학교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6조

이행계획

- (가칭) 보건교육지원센터와 같은 성격의 학생건강증진센터를 구축 운영 중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⑧ 시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업무는 학교장이, 저수조 청소, 방역(소독)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한다. 단, 수질검사 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6
---------	--------------------	-----	----------

해설

- 시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저수조관리, 방역(소독) 등의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노력함

근거(관련규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이행계획

- 2017 단체협약 체결 후 시교육청은 2019.1.1.부터 수질검사업무는 학교장이, 저수조 청소와 방역(소독)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도록 공문 시행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⑨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고 기설학교는 시설확충이 가능한 경우 보건교육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6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연차적으로 보건교육실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⑩ 시교육청은 보건실의 현대화 미추진학교 및 노후학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6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3조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연차적으로 보건실 현대화 예산을 확보하여 현대화 사업 추진
- 예산 수립 및 학교 지원은 동·서부 지원청에서 실시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⑪ 시교육청은 교감 이상의 자격연수에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과 보건교사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매년 최소 1시간 이상의 연수를 실시한다.

⑭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제6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42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의 교육 연수 운영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다면평가 시행 계획 및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안내 시,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⑫ 방학 중에 보건교사의 근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이행계획**

- 방학 및 휴업일 중 자기연찬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 보장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하고 있음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⑬ 시교육청은 최근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가산금6)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한다.

담당부서(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연락처	380-4397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코로나19 등 보건교사의 근무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 등 특수업무 수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이행계획**

-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가산금6)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겠음

제93조【사서교사 인사 및 근무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모든 2급 사서·보건 교사가 교육경력 3년에서 4년 사이에 1급 사서·보건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315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42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이행계획**

-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가 정해진 시기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연수 실시 전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경비 및 여비를 산정하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희소과목도 연수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다면평가 시행 계획 및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안내 시,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제93조【사서교사 인사 및 근무여건 개선】 ② 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방과 후 개방, 지역사회 개방은 안전, 보안, 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해설

- 학교도서관 방과 후 개방은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자율적인 권한으로 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 후 개방하도록 지도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이행계획

- 학교도서관 지역개방학교는 안전, 보안 등의 대책 마련 후, 학교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도록 안내하고 필요 경비 지원

제93조【사서교사 인사 및 근무여건 개선】 ③ 시교육청은 사서교사가 휴업일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지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13,324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이행계획

- 방학 및 휴업일 중 자기연찬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 보장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하고 있음

제93조【사서교사 인사 및 근무여건 개선】 ④ 시교육청은 1,000명 이상의 과대 학교의 도서관에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인력 지원 또는 업무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연락처	380-4324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이행계획**

- 과대학교의 도서관 교육서비스와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p>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영양상담 활성화, 영양교육의 전문성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p> <p>1. 시교육청은 학교의 내실있는 식생활·영양교육 운영 및 영양교사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에 영양교육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p>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1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58조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호(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전직)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제28조 제1항, 제2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22조 제1항, 제2항

□ **이행계획**

- 영양교육 및 영양교사 지원을 위한 시교육청에 영양교육전문직 배치 관련 협의를 통해 임기제 영양 교육전문직원 선발을 고려하여 추진

<p>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②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p> <p>1. 식생활 및 영양교육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한다.</p> <p>2. 식생활 및 영양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p>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074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 「학교급식법」 제14조(영양상담)
-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 **이행계획**

- 식생활 및 영양교육 담당부서 지정 운영(재정복지과)
- 식생활 및 영양교육 전문인력 배치를 요청하고 있음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③ 시교육청은 교감 이상의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시 학교급식 및 영양교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⑬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제6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42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이행계획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장, 교감 자격연수 과정에 영양교사 업무에 대한 연수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다면평가 시행 계획 및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안내 시,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④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의 병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급식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5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임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이행계획

- 기간제 인력풀 운영 중
 - 연 1회 선발 전형을 통해 합격자 선발 후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 수시 등재

□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의 운영 지침(2022.1.1.)」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⑤ 시교육청은 급식실이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공간으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행사에 대여되지 않도록 하되, 투표장 대여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해설

- 학교급식실은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공간으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이행계획

-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학교급식 관련 없는 행사 식생활관 사용 금지 권고를 명시하여 안내함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⑥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및 기존 학교의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양상담실을 확보하고, 영양상담실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부구조 및 설비기준 등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해설

- 영양상담실을 확보하여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식생활 개선 유도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 설비)
- 「학교급식법」 제14조(영양상담)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이행계획

- 신설학교 계획 시 영양상담실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
- 2015년 학교급식 시설설비 매뉴얼에 영양상담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간 보급함. 시설설비 매뉴얼 개정시 구체적인 영양상담실 시설·설비기준이 포함되도록 하겠음

참고사항

- 「학교급식 시설·설비 매뉴얼」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⑦ 시교육청은 급식시설 현대화(오븐기, 냉·난방시스템 등) 사업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대·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급식기구 단일품목 천만원이상 물품구입시 희망학교 통합구매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해설

- 학교급식 시설·설비를 현대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 부담 등)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4592(2022.4.25.) [2022년도 학교급식기구 통합구매 추진계획]

이행계획

- 학교급식 시설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학교급식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추진계획 수립 및 교체 대상 기구 희망조사 받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후 예산 지원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 급식기구 지원사업 통합구매 대상 5종(오븐, 식기세척기, 온수제조기, 애벌세척기, 냉·난방기)은 통합구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단, 자율구매 희망학교는 사유를 제출 후 개별 구매 가능함
 - 2022년 동부교육지원청 통합구매 대상 해당없어 미추진, 서부교육지원청 추진함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⑧ 시교육청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위생 점검과 학교에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해설

- 위생안전점검 강화 차원으로 교육청에서도 점검 실시
-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사전 불시에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급식체계 구축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2022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이행계획

-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점검단 구성하여 납품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농·축·수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조사는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前 산지출하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적 검사방식으로 개선(‘13. 국정감사 지적사항)됨에 따라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쇠고기 DNA동일성검사 실시를 협조 요청하여 실시 결과를 통보받아 공개하겠음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⑨ 시교육청은 무상 의무급식 실시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의무급식 지원기준 산정 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적절한 단가로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6
---------	---------------	-----	----------

□ 해설

- 시교육청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토대로 물가인상률을 검토하여 무상급식 단가를 책정하고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
- 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를 통해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를 인상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 추진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 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학교 무상급식 추진계획」
- 「친환경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지원 계획」

□ 이행계획

- 시교육청은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적절한 급식단가 인상 기준률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 시교육청은 우수 식재료비를 단계적 인상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지속하여 꾸준히 인상할 계획임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⑩ 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우유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유급식 업무를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공문으로 시행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074
---------	---------------	-----	----------

근거(관련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

이행계획

- 우유 바우처 카드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지자체 이관 추진
- 우유급식업무를 학교급식업무 추진계획에서 분리하여 별도 공문으로 시행

참고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3831(2022.7.19.) ['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가 공모계획 알림]
-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4139(2022.2.11.) [2022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추진 안내]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⑪ 시교육청은 영양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7조 및 41조에 의거 근무지 외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방학 중 근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 「교육공무원법」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이행계획

- 방학 및 휴업일 중 자기 연찬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 보장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하고 있음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⑫ 시교육청은 순회기간제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334 380-4178
---------	-------------------------------	-----	----------------------

해설

- 순회기간제 영양교사 배치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서 순회교사 배치)
- 교원인사과-4599(2018.4.27.) [순회기간제 영양교사 선발 및 운영 협조 요청]

□ 이행계획

- 학교급식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순회기간제 영양교사 정원을 배정하고 현재 운영 중임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⑬ 공동조리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경우 권장영양량, 학사 일정 등이 달라 급식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독 조리를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한다.(단, 여건이 불가한 경우 학교급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학사일정 등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 해설

- 학교급식 공동급식 학교의 운영 관련 어려움 해소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이행계획

- 공동조리 학교는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급식실 신축의 어려운 점이 있으며, 공간이 확보되면 단독조리 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음
-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조리교는 학사일정, 교육과정 편성 시 비조리교와 상호 협의하여 가급적 급식일수 및 급식일을 동일하게 운영토록 안내하고 있음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⑭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생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시교육청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 식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 해설

- 위생안전점검 강화 차원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 점검실시

□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 설비)
-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이행계획**

- 교육지원청의 급식점검단 활동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공개하고 있음. 점검결과 점검기준 미준수 업체는 식약청 합동점검시 점검대상으로 요청하여 합동점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⑮ 시교육청은 교과연구 및 교육 활동 관련하여 영양교사가 충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연락처	380-4304
---------	----------------	-----	----------

□ **근거(관련규정)**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기본 계획」, 중등교육과-6548(2022.3.10.) [2022학년도 전문적 학습공동체 추진 계획 안내 및 운영 개요(결과) 제출]
- 「2022 전문적학습공동체 추진 계획」, 초등교육과-2906(2022.3.11.)
- 「중등 수업 혁신 추진 계획」, 중등교육과-2735(2022.2.3.) [2022 중등 수업 혁신 추진 계획]
- 「초등 수업 혁신 추진 계획」, 초등교육과-1000(2022.1.25.)

□ **이행계획**

- 학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학교 밖 교원 수업나눔 활동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참고사항**

- 정책기획과-2291(2022.3.3.) [(중요) 2022학년도 교직원 대상 통합 공모사업 신청 안내]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⑯ 시교육청은 차년도 학교 급식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문을 통한 전체 급식학교 의견수렴
2. 상시 업무 모니터링 결과 반영
3.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영양교사 2인이상이 포함된 협의회 운영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 **해설**

-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시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을 위함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이행계획

-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시 각급학교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2인 영양교사 포함한 협의회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함
- 제도개선 협의체를 비롯한 직군별 의견개진사항, 단체교섭을 통한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참고사항

- 재정복지과-891(2022.1.10.)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재정복지과-1569(2022.1.13.) [2022년 학교급식 제도개선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⑰ 시교육청은 식재료 검수 업무 등을 위해 매일 조기 출근하는 영양교사의 경우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활용토록 지도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3
---------	--------------	-----	----------

해설

- 교육공무원 복무관련 규정 및 예규에 따라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하나,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함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 유연근무제

이행계획

- 영양교사의 경우,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형) 시행하고 있음

참고사항

- 교육부 교원정책과-4168(2016.7.21.) [영양교사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허가 관련 사항 통보]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⑱ 시교육청은 영양관리실의 시설,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한다.

1. 적정사무공간, 사무적정온도를 위한 냉난방시설 등, 전기배전판 제거 등

담당부서(팀)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연락처	380-4167
---------	---------------	-----	----------

해설

- 영양관리실의 시설, 설비기준을 마련하여 근무 환경 개선

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 설비)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학교급식 시설·설비 매뉴얼」

□ 이행계획

- 「학교급식 시설·설비 매뉴얼」에 영양관리실의 시설설비 기준을 포함하여 발간 보급함. 「학교급식 시설·설비 매뉴얼」 개정시 영양관리실의 구체적인 시설·설비 기준이 포함되도록 하겠음
- 신설 및 재배치 학교의 영양관리실은 「학교급식 시설·설비 매뉴얼」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학교에 대해서도 시설공사 등이 가능한 학교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95조【상담교육활성화 지원】 ① 시교육청은 학교 내 예방·처치·사후관리를 통한 학생 상담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미배치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근거(관련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1항

□ 이행계획

-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원 배정에 따라 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 대상으로 우선 배치 예정

□ 참고사항

- 현재 전체 중학교 및 공립 고등학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완료

제95조【상담교육활성화 지원】 ②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심리적 지원의 즉시적 효과 및 사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의 인사에 있어, 학교 내 위(wee)클래스에 우선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의 배치를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2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17조의3(전문상담 순회교사 임용)

□ **이행계획**

- 신규임용자의 학교내 위(wee)클래스 배치 관련 협의 추진
- 교육행정기관에 배정된 인원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고 학교 내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순환 배치를 위한 협의 진행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 단계적 축소 관련 논의 추진

제95조【상담교육활성화 지원】 ③ 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를 교육행정기관보다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 **이행계획**

- 교육부 교육공무원 배정에 따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교원 수급 정원 배정에서 전문상담교사가 학교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제95조【상담교육활성화 지원】 ④ 시교육청은 특수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할 경우,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전문상담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2
---------	--------------	-----	----------

□ **근거(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 **이행계획**

- 전문상담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있을 경우 우선배치하도록 노력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가 전문상담 교사로의 전직을 희망할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전직 추진

제96조【상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의료적 개입 및 외부 전문기관 의뢰가 필요할 위기 상황 학생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근거(관련규정)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행계획

-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예산편성 안내 완료(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권장사업)
- 위기 상황 학생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사업 내용 보완

제96조【상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② 시교육청은 위(wee)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wee센터 실장 및 부실장)에 대하여 업무의 곤란도가 반영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별표11]

이행계획

-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 업무곤란도가 반영된 수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참고사항

- 교육공무원 수당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급되고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당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96조【상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③ 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의 업무곤란도에 적합한 교직수당가산금에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연락처	380-4367
---------	-------------------	-----	----------

해설

- 전문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다른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과 차이가 발생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별표11]

이행계획

- 전문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

□ **참고사항**

- 전문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 업무수당)에 따라 지급되고 있음

제96조【상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④ 시교육청은 상담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4, 315
---------	--------------	-----	---------------

□ **근거(관련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42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이행계획**

- 다면평가 시행 계획 및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안내 시,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제97조【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착 노력】 ①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제를 발굴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안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정책기획팀)	연락처	380-4244
---------	--------------	-----	----------

□ **근거(관련규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제6조 제2항

□ **이행계획**

- 총회 안건 제출 요구 시 교육의제 발굴 안내
-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운영 및 다양한 의견수렴(원탁토론회, 정책협의회 등) 등으로 발굴·제안

제97조【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착 노력】 ②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교육자치과(조직법무팀)	연락처	380-4644
---------	--------------	-----	----------

□ **근거(관련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이행계획

-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견을 제출

제97조【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착 노력】 ③ 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선진적인 정책 및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정책기획팀)	연락처	380-4244
---------	--------------	-----	----------

□ 근거(관련규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제6조 제2항

□ 이행계획

- 선진적인 정책 및 현장 사례 공유를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 제안 및 시도정책협의회 참여 안내

제97조【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착 노력】 ④ 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교원의 신분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정책기획팀)	연락처	380-4244
---------	--------------	-----	----------

□ 근거(관련규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제6조 제2항

□ 이행계획

-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총회 상정 안건 담당부서에 검토서 요구 시 협약 사항을 공문에 안내

제97조【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착 노력】 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 권한이 시교육청에 이양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정책기획과(정책기획팀)	연락처	380-4244
---------	--------------	-----	----------

□ 근거(관련규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제6조 제2항

□ 이행계획

-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안건 제안 노력

제98조【불합리한 교원 정책 폐지 노력】 ①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노력한다.

담당부서(팀)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연락처	380-4315
---------	--------------	-----	----------

근거(관련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행계획

-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건의하였음

제98조【불합리한 교원 정책 폐지 노력】 ② 시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담당부서(팀)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연락처	380-4337
---------	--------------	-----	----------

해설

- 현장 교원 의견을 반영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운영

근거(관련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29호, 2020.1.1.)

이행계획

- 교육부에서 의견 제출 요청 시 학교 안내 및 의견을 수렴하겠음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및 교육부훈령 개정 등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6개월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 갱신】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 누구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준용】 ① 본 협약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는 법률 개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협약서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5부를 작성하여,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2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신고한다.

[부록 1]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 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2021 단체협약서

2022. 6. 28.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목 차

2021 단체협약서

전문	243
제1장. 총칙	243
제2장. 조합 활동	245
제3장. 편의 제공과 협조	248
제4장. 여비, 수당, 근로조건, 후생복지	249
제5장. 교육여건의 조성 and 지원	254
제6장. 교육활동 보장 and 지원	258
제7장. 학생복지 및 자치신장	265
제8장.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270
제9장. 교원 연구·연수활동 개선 and 전문성 보장	273
제10장. 사학의 공공성 보장	279
제11장. 성평등 학교 문화 구축 and 유아·직업·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육의 공공성 확보	282
부칙	294

전 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이하 ‘전교조광주지부’라 한다.)·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광주교사노조’라 한다.)은 「헌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 범위】 ① 본 협약은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그리고 공립 유, 초, 중, 고 교원인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조 【협약의 존중】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협약사항에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에게 유리하게 해석, 적용한다.

제3조 【단체협약 이행】 ①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각각 노사 동수로 단체협약 이행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기별 1회 운영하며 구성 및 진행방법은 제4조 정책협의회에 준해서 운영한다.

② 시교육청은 제1항의 단체협약 이행협회의 협의·점검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학교장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에 접수한 후 그 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한다.

③ 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이행점검표를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다.

④ 시교육청은 상·하반기(6월, 10월)별로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이행점검 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서면 통보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단체협약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전체 교사들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다. [수정]

⑤ 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를 한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한다.

⑥ 시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협의회 합의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단위 기관장(학교장)에게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수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한다.

⑦ 시교육청은 본 협약의 내용 중 교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한다.

⑧ 시교육청은 협약 체결 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동으로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시교육청은 학교관리자 및 행정실장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담당자(분회장) 등 업무 관계자에게 공동연수를 실시한다.

제4조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단체협약의 이행점검과 광주교육정책, 교육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각 노조별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며, 해당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때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양측 합의하에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건은 상호 7일 전에 통보한다. 정책협의회는 본교섭의 교섭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광주 교육정책 및 현안
2.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
3. 기타 교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③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학기별 1회 이상 정책협의를 개최하도록 지도하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은 본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수정]**

제5조 【협약기준 저하에 따른 합의】 ① 시교육청은 단체 협약을 갱신 체결하면서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내용 등 기존의 협약이 정한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 협약기준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수정]**

②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칙과 행정지침이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그 규칙 및 행정지침을 개정하되, 그 개정 방향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수정]**

③ 시교육청은 다른 단체와의 협약으로 인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

제6조 【규칙의 제개정 및 정관 승인 시 의견존중】 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의 제·개정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학교법인이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정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당해 법인 소속 전체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지도하고 의견수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7조 【조합 활동의 보장】 ① 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그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모든 근무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제반 홍보 활동을 위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홍보활동이란 인쇄물 배포, 홍보물 부착(현수막 등)을 말한다.

③ 시교육청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학교의 제반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월 3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위한 조합원 교육을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에 포함하고, 해당 노조 조합원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⑥ 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생산한 각종 문서를 성실히 접수 처리하고, 각 학교로 이첩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서 중 교육적 가치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한다. **[수정]**

⑦ 시교육청은 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정]**

1. 단체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석
2. 노사간 개최되는 협의회 참석
3. 노조 대의원으로서 전국 시단위 정기 대의원대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
4. 노조 중앙위원으로서 중앙위원회 참석

- 5. 노조집행위원으로서 중앙 및 지부, 지회 집행위원회 참석
- 6. 지부, 지회 집행부서장회의 참석 및 조합원의 고충처리 활동
- ⑧ 시교육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 ⑨ 시교육청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정책협의회 합의 사항과 다른 지침이나 공문을 시행하는 경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수정]**
- ⑩ 교원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 뒤 건의한다.
- ⑪ 시교육청은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수정]**
- ⑫ 시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관련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공식입장과 상반되는 지침이나 공문을 시행할 때에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제8조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 ① 시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신규 임용 연수, 교감, 교장연수를 포함한 모든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조 관련, 노사관계 이해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 교원노조 홍보와 활동을 소개하는 교육시간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각각 1시간 이상씩 허용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해 교원 연수계획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문서로 통보하고, 교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제9조 【조합비 일괄 공제】 ①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조합원의 월정률(액) 조합비를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별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내용이 포함된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를 조합원의 급여지급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급여지급기관장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학교, 이름, 금액, 호봉)을 통보한다. 단, 입금해야 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본인이 급여지급 기관장에게 조합비 원천징수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급여지급 기관장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 ③ 가입과 탈퇴의 개인 의사표시는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 관리자 등이 가입과 탈퇴에 대한 개입, 확인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은 지도하며, 적발 시 적법 처리한다.

④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조합원이 타 학교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보된 급여지급 기관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조합비 원천징수를 원하는 조합원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비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지출원이 동일한 기관으로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비 공제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제10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전임자의 처우】 ①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에 따라 전교조·광주교사노조 대표가 신청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를 조합 활동의 전임자로 허가한다.

② 시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 승급, 경력 산정, 승진, 연금산정, 복지혜택 등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③ 시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해제 후 학교 복귀 시,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되, 원 소속 학교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원 소속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을 참고하여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발령한다.

④ 시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모든 복지혜택을 전임자의 전임기간에도 100%적용하여 지급한다.

⑤ 시교육청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법령 개정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제11조 【단체교섭 활동 보장】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조합원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노사간에 개최되는 협의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교권 보호 정책, 교권 옹호를 위한 위원회】 ① 시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수정]**

② 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 치료(정신적 피해 포함) 및 법률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설]**

④ 시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 수집 및 교권 보호 관련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유하고, 교권보호정책에 반영한다. **[신설]**

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원의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개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한다. **[신설]**

⑥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졸업앨범 제작 시, 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사진 등 개인 식별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제3장 편의 제공과 협조

제13조 【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 ①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②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상호요청을 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 정보에 대하여 이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다.

③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각종회의, 연수, 교육, 행사를 위하여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1. 시교육청이 통지할 자료

가. 시교육청 자치법규(자치법규 홈페이지 게재)

나. 시교육청 및 산하단체 조직표

다. 교육수첩, 교육통계연보 등 시교육청 발간 각종 간행물(교육지원청 포함)

라.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여건에 관련된 공문

바.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계획

사.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아.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적합한 시설로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할 수 있다.

2.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통지할 자료

가. 규약·규정의 변경 사항

나.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현황(조합기구표, 조합임원 명단, 전임자 보직 등, 매년 4월 1일, 10월 1일 현재 조합원 수)에 관한 사항

다.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전교조광주지부 신문

⑤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서 발송 시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⑥ 시교육청은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위원회’ 를 연 4회 개최한다. **[수정]**

⑦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주관하는 분회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한다.

제14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교육행사 지원】 시교육청은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생대상 교육활동 또는 교사 전문성 신장 행사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제15조 【교원 노조 참여 보장】 시교육청은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한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협의회, 공청회, 세미나 등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4장 여비, 수당, 근로조건, 후생복지

제16조 【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 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각종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② 시교육청은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를 한 교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생을 인솔(소풍,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야영 등)하는 교원의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제 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④ 시교육청은 소속 교원이 인사이동(시·도간 교류)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이전비 및 국내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시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⑥ 시교육청은 출장명령에 의한 교원의 방학 중 연수 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한다.

⑦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가 집행되도록 행정지도한다. **[수정]**

⑧ 시교육청은 교원의 출장과 초과근무가 겹치는 경우 허가권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택일을 강요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⑨ 시교육청은 각종 수당 및 출장·연수 여비 등에 대한 입금 시 입금기관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송금하도록 한다. **[신설]**

⑩ 시교육청은 직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 관련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보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청 주관 보수교육 등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시교육청은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해당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⑪ 시교육청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개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사수당 지급 단가를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⑫ 시교육청은 새학기 준비연수로 복직교원 및 신규임용 교원이 발령 전 복무하는 경우, 합리적 지급 기준을 수립하여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⑬ 시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원연구비가 균등하게 10만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신설]**

제17조 【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 ① 시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할 경우 개교하기 전에 개교 준비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실의 실내온도와 습도를 관련규정(하절기: 26-28℃, 동절기: 18-20℃, 습도 30-80%)에 따른 적정온도와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신축 및 전면 개축 시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 학교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규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도로와 소음 발생 시설이 인접한 학교는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을 준수한다.

④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실의 조도는 300룩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차광막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보건실, 과학실험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컴퓨터실, 어학실, 시청각실 등을 학교 규모에 따라 시설 확충이 가능한 경우 적정 수준으로 확보한다.

⑥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의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1. 기존 학교의 경우 교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규정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해소한다.

2. 기존 학교 시설 개보수 시 교실 내장재를 친환경상품으로 교체하고, 신축 학교는 개교 2개월 전에 완공하여 실내공기 오염 최소화에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교무실(학년 연구실 등)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확대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수정]**

⑧ 시교육청은 단위학교가 각 교실에 연차적으로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여 교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수정]**

⑨ 시교육청은 『학교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친환경소재로 교체하고,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매년 일반교실과 특별실 등의 실내 공기 오염 발암 유발 물질(부유 세균,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⑩ 각 학교별로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 공간(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⑪ 시교육청은 학교를 신축할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신설]**

⑫ 시교육청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취약 대상(장애학생, 유치원생 등)이 있는 시설부터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⑬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사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간외 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신설]**

⑭ 시교육청은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관리자 전용 주차구역 지정’을 비롯한 ‘법적 근거 없는 특정인을 위한 주차구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시교육청은 학교 시설 운영 시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⑮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 청소용역 업체를 이용하여 단위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전반에 관한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신설]**

⑯ 시교육청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는 조속히 설치하고, 모든 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⑰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체육관 겸 강당을 연차적으로 시설한다.

제18조 【업무 교육 환경 구축】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 등을 위하여 교사가 필요로 하는 설비와 교무업무의 편의를 위한 기자재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수정]**

1. 시교육청은 교사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등) 보호와 업무시간 외의 과도한 민원전화 근절을 위해, 교사에게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시교육청은 1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된 내용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사망 사건 등 교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학교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한다. **[신설]**

제19조 【학교 시설 안전 진단】 ① 시교육청은 모든 공립학교 및 사업소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립학교는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② 시교육청은 제1항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상 및 위험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20조 【학교정보화 지원】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무실 및 교원연구실을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하고, 해당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원의 개인 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에서 특정 업체에 학생·교원의 가입을 전제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③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원이 메신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을 허용하고, 웹하드와 P2P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시 '비업무용 사이트 접근허용 신청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학교에 정보화기기 예산 지원 후에 통합구매를 원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희망을 받아 추진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자체 구매를 추진한다.

제21조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① 시교육청은 교원용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 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 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의 휴게실에는 필요한 비품(소파, 탁자, TV, 침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냉·난방, 안마의자 등) 등을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연초에 실태를 파악하여 휴게실이 없는 학교는 휴게실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수정]**

1. 성별에 따른 교원 휴게실을 마련하고 정비하도록 지도한다.

2. 휴게실 정비 및 비품 구입에 있어서 교직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체육 시설·기구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헬스실 등)을 설치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한다. **[수정]**

- ④ 시교육청은 「국민건강 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진단 항목에 성인병(4대 암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 ⑤ 시교육청은 교직원과 그 가족의 연수 및 휴양 복지를 위해 휴양시설과 계약을 맺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복지비가 교육부의 규정대로 지급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 제도의 선택적 기본 항목(입원 의료비 보장 보험 등)의 적용 여부 및 보장 내역을 전 교직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 ⑦ 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교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 시 세부사업 표준안에 교직원의 후생복지비 예산편성 항목을 설정한다.
- ⑧ 시교육청은 인후염·성대 결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⑨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영 및 위탁 경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의 이용 및 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교직원이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⑩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 구입을 위해 적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연 1~2회(동·하계) 각 학교 기본운영비 등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1. 체육담당교사: 체육복
 2. 과학교사, 기술·가정교사, 전문교과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 ⑪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사 휴게실 확충 또는 개선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산을 지원해 교사휴게실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도한다.
- ⑫ 시교육청은 교원의 건강증진과 후생 복지를 위해 유급 안식년제 정책 연구 및 여건 조성 활동에 노력한다. **[신설]**
- ⑬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의 학교운영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민주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한다. **[신설]**
- ⑭ 시교육청은 매년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편성할 시 1인당 맞춤형복지비를 전년도 17개 시도교육청 맞춤형복지비 평균액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 ⑮ 시교육청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가가 사용·승인되도록 하고 별도의 조건(치료기간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학교장을 지도한다. **[신설]**
- 제22조 【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침해 방지】**
- ① 시교육청은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하는 범위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 사고로 인한 소송 발생 시 해당교사가 교육청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에 응급을 요하는 학생에 대비한 응급구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 지침(비용부담, 처치요령, 이송교사의 복무처리 등에

대한)을 마련하여,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와 초진비를 모든 학교가 학교 회계에 편성하도록 하고, 환자 이송 교사는 출장 처리한다.

제23조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개선】 ① 시교육청은 안전사고로 인한 안전공제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각종 교외 교육활동 과정 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직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의 소송발생 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에 학교장의 사고발생통지서,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지급한다.

④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심판위원회 위원 구성 시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할 경우 1인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제5장 교육여건의 조성 및 지원

제24조 【재난 시기 교육과정 운영】 ① 시교육청은 재난시기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부 지침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재난시기 각급 학교 지원방안에 대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제25조 【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① 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상위 수준(최대 20명이내)이 되도록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하고, 학교당 학급수를 초등학교는 최대 36학급, 중등학교는 최대 24학급 이하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유아배치여건, 연도별 유아수 추이, 교원수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수정]**

1. 만 5세 20명 이하
2. 만 4세 18명 이하

3. 만 3세 14명 이하
4. 혼합연령 16명 이하
5. 특수 유아는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다.
- ③ 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 편성 기준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7조의 법정 정원 이하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단, 전공과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편성기준이 하향되었을 경우 학급을 증설한다. **[수정]**
- ④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배정 시,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수정]**
- ⑤ 시교육청은 대규모 주거단지 신설에 따른 원거리 통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를 이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 ⑥ 시교육청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별 학급수를 감축할 때는 사립을 예외로 두지 않으며, 원거리 통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수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신설]**

제26조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 ①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각급 학교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것과 학교 간 과목 간 수업시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의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한다.

- ②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교과전담 교사를 법정정원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교과전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교무실무사가 연차적으로 배치되도록 지도하고,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정]**
- ④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실시를 위해 의무교육 대상 다음 학교에 영양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정원을 확보토록 노력한다. **[수정]**

1. 의무교육 대상학교
2. 신설 학교
3. 교육공무직 퇴직 및 퇴직 예정학교

- ⑤ 시교육청은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 여론에 대응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정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수정]**
- ⑥ 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 구현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관하도록 노력하고, 학생참여 행사는 학교교육계획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수정]**
- ⑦ 시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이 보결수업 담당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학교 교육정상화에 만전을 기한다. **[수정]**

제27조 【보결전담 교사제 확대 및 보결수업비 지급】 ①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의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순회기간제교사 연초인원을 1년 동안 유지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중등학교 교사의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하여 기간제·강사 인력풀제를 운영한다. **[수정]**

③ 시교육청은 유·초·중등학교·특수학교에 보결수업 담당강사를 학교 규모에 맞게 임용하도록 지도하며,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업을 한 교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당 적정액(10,000원)의 보결수업비를 지급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을 통해 안내한다. **[수정]**

제28조 【상치교사제 폐지와 순회전담교사 배치 기준】 ① 시교육청은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교사를 순회전담교사로 배치하여 상치교사를 줄이도록 한다. 단, 순회학교는 가급적 2개교로 한다.

② 시교육청은 순회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지원청에 순회교사 연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순회교사가 각종 직무연수 및 출장 관련 여비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①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임용하되 그 임용비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 현황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요청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자료를 제공한다.

③ 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수립 및 개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서 계약제교원의 복무와 처우를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수정]**

④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는 단위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치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중등에 있어 1개월 미만의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학교장이 시간강사를 임용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예산 편성시 시간강사 인건비를 반영토록 지도한다. **[수정]**

⑥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 직무연수 이수를 허용하고 일선학교에서 자율연수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시교육청은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의 해임이 불가피한 경우, 해임되는 기간제교사가 희망할 경우 우선 임용되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⑨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방학 중 임용과 보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2.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자라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라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3.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지만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 중 임용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에도 업무를 부여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단, '방학기간 중 업무 부여'는 근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41조 연수를 활용하여 기간제교원의 연수기회를 보장한다.

⑩ 시교육청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제 교원관련 임용기간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수정]

⑪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복지포인트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⑫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퇴직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 퇴직금 지급

2.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3년 이내의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⑬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임용계약 기간 중 해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계약 해지 사유 중 임의 해지 사유 삭제

⑭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휴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연가: 계약 당해연도에는 계약기간에 따른 일수 산정, 재계약 후에는 재직기간으로 산정

2. 병가: 계약기간에 따른 최대 병가 일수 1년 60일 기준, 1월 5일씩 산정

3. 특별휴가, 출산휴가: 정규직 교원과 동일 적용

4. 출산예정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대한 차별적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다.

제30조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 수당 지급】 시교육청은 표준수업시수(초등학교 20시수, 중학교 18시수, 고등학교 16시수) 법제화를 위하여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부에 건의하며 표준수업시수가 마련되면 이를 초과한 수업만큼 결,보장 수당을 지급하거나 강사채용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31조 【유·초·중·고 학교평가제 개선】 ① 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평가 방법을 폐지하고, 학교 정보 공시 활용 및 설문평가 방법을 채택하되, 학교 자체평가 보고서는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를 서열화 하지 않는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 평가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인사가 특수, 유·초·중·고 급별로 1인씩 학교평가기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 【교육양극화 해소】 ① 시교육청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아래 항목을 이행한다. **[수정]**

1.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학교(초, 중) 교육복지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배치한다.

2.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의 해당업무가 담당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위클래스 상담 인력을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장 교육활동 보장과 지원

제33조 【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① 시교육청은 교과교육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할 경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과연구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업무의 정상적인 추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한다. **[수정]**

1. 교과연구 모임

2. 창의적체험활동 지도를 위한 연구모임

3. 학급운영, 생활지도, 인성지도를 위한 모임
4.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공동체
5. 기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연구 활동
- ③ 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주적 교육활동력의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수정]**
- ④ 시교육청은 각종 사업별 필수 반영 주간운영을 통폐합하고, '00주간' 운영실적 요구를 최소화한다.
- ⑤ 시교육청은 교사의 수업나눔 공개 과목 및 주제, 교내외 연구활동을 교사의 자율에 맡긴다. **[수정]**
- ⑥ 시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충분한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⑦ 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주체들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한다. **[수정]**
- ⑧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⑨ 시교육청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의무 공개 수업을 지양하고, 공개 수업 방법의 결정은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신설]**
- ⑩ 공개 수업 시, 공개 수업의 공개 범위(참관자 등)은 해당 교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신설]**

제34조 【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제 확대실시】 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중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파견 대상자에게는 5년 동안 영어교담교사를 하도록 의무연한제를 실시한다.

제35조 【교원의 업무 정상화】 ① 시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 행정업무경감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세부운영계획은 별도로 합의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업무경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③ 시교육청은 법정장부 목록을 매년 11월에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지침(훈령)에 제시된 기타장부의 비치와 결재 여부는 교직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안내하며, 감사와 장학 등으로 학교 방문시 감사 착안사항 이외의 장부는 요구하지 않는다. **[수정]**

- ④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선도(주변·당번)교사제를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수정]**
- ⑤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모든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변형된 형태의 근무조 포함)을 운영하지 않도록 폐지하며, 단위학교에서 방학 중 교원의 41조 연수가 보장되도록 한다. **[수정]**
- ⑥ 시교육청은 학생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사항에 대한 공문생산을 억제하고, 이첩공문은 요약하여 발송하며, 단순공문은 공문게시를 적극 활용한다.
- ⑦ 시교육청은 보고 방법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당해 학교가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는 문구 ‘해당사항이 없을 시 보고 생략’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공문 생산을 억제한다.
- ⑧ 시교육청은 업무연락을 극소화시킨다.
- ⑨ 시교육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불필요한 공문의 이첩을 억제하고, 외부기관이 직접 학교로 공문 발송을 지양하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 ⑩ 시교육청은 각종 외부 행사에 교원의 동원(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각종 시험감독, 학생경시대회의 학생 인솔 등)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 ⑪ 시교육청은 학생교육활동이 아닌 행정 업무(시설관리 업무)는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⑫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수정]**
1. 일반 학적사무 : 학생의 전출입, 휴학·퇴학에 관한 행정사무와 증명서 발급 사무
 2. 각종 기자재(정보화시청각 기자재 포함)의 수리, 각종 시설 관리(안전 시설 관리 등) 및 보수에 관한 업무
 3. 교과서 관련 업무 중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
 4. 교육비 수납, 강사비 지출, 신원조회 등의 방과후 학교 관련 업무
 5. 강사 공고 및 계약, 강사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업무
 6. 학교 내의 인사 관련 업무(승진, 전보, 승급, 인사기록카드, 기간제, 호봉 등)
 7.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업무
- ⑬ 시교육청은 교원업무경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원업무경감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초·중·고별 각 2명씩(총 6명)의 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홈페이지에 [규제완화 및 교원업무경감]란을 개설·운영한다.
- ⑭ 시교육청은 교육과정과 무관한 준거집단 관련 업무를 학교업무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며 해당단체가 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단,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추가적인 학교업무로 부여할 수 있다.

- ⑮ 시교육청은 관행적인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지양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청 주관 각종 학생 참가대회에 의무참가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학생 입상 등위(급) 실적을 등급표창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⑯ 시교육청은 자료집계시스템 활용하여 단위 학교 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한다.
1.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로부터 각종 자료(단순·반복 통계자료, 보고, 요구자료 포함)를 제출받을 시 업무 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⑰ 시교육청은 공문을 종이로 출력하여 결재·편철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학교 교육계획서에 수록된 간단한 내용은 별도의 기안 없이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공문 결재 과정 중 사전 구두 결재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로 하여금 개별체험학습 신청, 결재, 보고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 ⑱ 시교육청은 각종 교육시설 및 기자재, 물품 등의 예상 단가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교직원에게 공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 ⑲ 시교육청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운영 및 식중독 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수정]**
- 가. 학교급식 납품업체선정 등 행정 관련 업무
 - 나. 교육공무직(조리사 및 조리원) 신규 채용 및 고용승계 관련 업무
 - 다. 급수관 관리 및 저수조 청소 등 시설 관련업무
 - 라.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우유비 등) 수납(징수) 관련 업무
 - 마.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
 - 바. 식생활관 시설 증, 개축에 관한 업무
- ⑳ 시교육청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근무상황 결재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수정]**
1. 시교육청은 교사가 연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가 사유 기재, 근무상황부 기재 보고 이외의 사전 구두 보고 의무화 등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어긋나는 보고방식을 요구받지 않도록 한다.
 2. 시교육청은 교사가 조퇴, 지각, 외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 사유 기재 등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어긋나는 보고방식을 요구받지 않도록 한다.
- ㉑ 시교육청은 원어민 담당교사가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㉒ 시교육청은 학생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교통조직을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㉓ 시교육청은 공모교장 채용 심사 시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과 학교업무정상화계획 또는 업무경감 방안을 학교장 경영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㉔ 시교육청은 매년 학교업무정상화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집행한다. **[수정]**

1. 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종합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2. 단위학교에서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따라,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교감, 비담임부장교사, 비담임교사, 교육공무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㉕ 시교육청은 초등교원 전보인사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체육교과전담교사 우대 조항’ 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㉖ 시교육청은 DB를 구축해서 조사, 통계, 보고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수정]**

1. 시교육청은 각종 상급 기관 및 의원 요구 자료 등 조사, 통계, 보고 자료 관련 DB를 구성 운영한다.

㉗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매년 학교예산 편성 시에 교재배포지원을 위한 인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㉘ 학교에서 업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시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접수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㉙ 시교육청은 수익자부담경비를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납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㉚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학교업무정상화협의회가 교육활동 지원을 목표로 운영 되도록 학교장을 지도한다. **[신설]**

제36조 【교육청 주관 교사 관리 감독 수당 현실화】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관리 및 감독 업무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신설]**

제37조 【학교의 민주적 운영】 ① 시교육청은 학교의 교직원회의를 매월 정례화 하여 교직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민주적 학교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고, 세부 운영 규정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교장, 교감단이 주관하는 협의회가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행정에 대한 사항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사전에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현안사업비를 교육청에 요청할 시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도록 지도한다. **[수정]**

⑤ 시교육청은 학교문화혁신지수 평가에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한다.

⑥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내에서 민원을 공공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단위학교 민원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제38조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의견 수렴】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교원수급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1. 학과의 폐과
2. 학교의 신설, 이전 및 통·폐합
3.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학교계열 변동

제39조 【교육활동 유해업소 단속】 시교육청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위해 필요 시 경찰서, 시청 등 유관기관 간 합동단속에 참여하여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에 노력한다.

제4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지도강화】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가급적 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되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전 및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정]**

⑤ 시교육청은 당해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연도 학교교육계획 심의 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제41조 【교육예산의 편성과 운용의 합리화】 ① 시교육청은 매 회계 연도마다 회계 지침과 전년도 결산, 신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내역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한다.

② 시교육청은 현행 초·중등 간 시설 설비 기준 유지와 각종 시설 공사에 적합한 공사비를 산정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의 각종 계약,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초·중등 간, 공사립학교 간 적정을 기한다.

⑤ 시교육청은 교육감과 각급 기관장(학교장 포함)의 업무추진비를 분기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2조 【학교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보장】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예산편성이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주적으로 구성한 예산 조정 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매점, 식당, 자판기와 농작물, 축산물, 공예품 등의 수익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학교계시판 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의 예·결산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의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가 어떠한 명분으로 든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수정]**

제43조 【학교장 업무추진비 지출 제한】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직책 급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학교장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는 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회 등)의 회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하여 행정 지도한다.

② 각급 학교 업무추진비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수하고 엄중 문책한다.

③ 시교육청은 매년 '학교회계 결산분석'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행정지도한다.

제44조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부득이하게 계약직 사서를 채용할 때는 처우를 개선하여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과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을 학교표준운영비의 3% 이상으로 편성하고 학교 예산 실정에 따라 확대 편성을 권장하며, 그 외 도서실 운영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기한다. **[수정]**

③ 시교육청은 도서관담당교사나 사서교사가 도서관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다른 업무는 경감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 담당교사의 직무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 시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절차를 지켜 구입하도록 안내 및 지도한다.

- ⑥ 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원문정보에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시교육청에 구성하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 현장 사서교사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⑧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고, 독서교육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는 사서교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정]**
- ⑨ 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연수를 포함한 각종 자격연수 또는 위탁하는 자격 연수 및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시 학교도서관이나 독서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 ⑩ 시교육청은 상담 및 교육정보화 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시 사서교사에게도 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 ⑪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연수를 개설하도록 한다.
- ⑫ 시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급당 일정시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⑬ 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시설·자료 기준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한다.
- ⑭ 시교육청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사서교사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에게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⑮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보대상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정원 증원을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교육공무직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석에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정]**
- ⑯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방학 중(휴무일 포함)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이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신설]**
- ⑰ 시교육청은 국회 도서관 등 원문제공 서비스 가능 기관과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원문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제7장 학생복지 및 자치신장

- 제45조 【학생 인권, 학습권, 신체의 자유권 보장】** ① 시교육청은 매년 연도별 학생 인권 시행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 ②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여 교육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방과 후 프로그램, 자율학습 등에 대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 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행정지도한다.

2. 시교육청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시대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활동이 파행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자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학생이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체벌을 금지하고,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생의 반성적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교육방법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신설]**

⑤ 시교육청은 학생이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학생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신설]**

⑥ 시교육청은 학교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도록 한다. **[신설]**

1. 사회봉사의 경우, 학부모·학생이 기관(학교가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이수 후 학교에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2. 특별교육운영시스템의 경우 학생의 접근성과 교원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해당업무 담당 교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모든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신설]**

제46조 【사생활,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 ① 시교육청은 학생의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원 및 지도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졸업앨범에 불필요한 학생 정보를 기재하여 개인 정보가 침해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가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이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학생건강조사 설문지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항을 만들지 않는다.

③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하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④ 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존중받는 정도’와 ‘결사 집회의 자유를 누리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⑤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언론 활동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신설]**

⑥ 시교육청은 학생이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학교를 지도 및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인권존중형 생활 교복’ 도입 및 교육 자유화를 포함한 교복 자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신설]**

⑦ 시교육청은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성적 확인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별 성적확인표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출력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설]**

제47조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①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기구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관련 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사용 지원 및 행·재정적 지원(컴퓨터, 프린터 등 비품)을 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학생회 운영비(회의비, 공약사업비, 선거사무비)를 학교 표준 운영비의 0.5% 이상으로 책정한다.

2. 학교 예산계획 수립 시 학생회 운영비와 그외 학생회 주관 자치활동을 예산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구조(급식소위원회, 체육복 및 교복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학생대표의 참여 또는 의견제출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복지, 인권, 학생회, 동아리 활동, 체육문화행사 등 교내행사의 기획·운영 및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 의견의 대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토론회와 공청회 등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신설]**

③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성적, 교사의 추천 여부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기구 임원 선거가 비밀, 평등, 보통, 직접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학생회를 지원한다. **[신설]**

④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함께 학생복지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협의 결과를 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⑤ 시교육청은 학교가 학교규칙과 학교규칙에 따라 위임된 규정 등 학생의 생활과 밀접한 제반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도한다. **[신설]**

⑥ 시교육청은 매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학교 단위의 기념식과 계기교육이 의미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정]**

제48조 【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가 학교시설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휴식, 공연, 전시, 축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신설]**

③ 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유관 단체가 협업하는 교통안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④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한 등교 중지 상태에서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급식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신설]**

1. 지자체와 협력하여 보급 체계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학교에서 경쟁 입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교회계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고, 수익금을 학생복지비로 우선적으로 지출되도록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매점, 식당, 자동판매기 등의 수익사업은 그 수입과 지출 명세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수정]**

⑦ 시교육청은 급식 시설을 연차적으로 현대화하며,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⑧ 시교육청은 전담용역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각급 학교의 화장실 등 학교시설의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⑨ 시교육청은 신설 및 개축 학교의 경우 설계 시부터 반영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 탈의실 및 샤워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기존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수정]**

⑩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노후화된 책걸상 및 학생의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연차적으로 교체한다.

⑪ 시교육청은 화장실 용변기 개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의 경우 가능한 여학생용 변기 개수는 남학생 변기 개수 대비 1:1.5배를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 시설은 학생들의 체형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되도록 노력한다.

- 시교육청은 노후 된 화장실 시설을 점진적으로 교체한다.

⑫ 시교육청은 샤워실이 구비된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샤워실 이용수칙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⑬ 시교육청은 산하 청소년 관련 각종 시설물을 각급 학교의 학생회, 동아리, 청소년 준거 집단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49조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① 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학교의 각종 임원 선출, 위원회 구성 등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있어서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고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급식 제공에 있어 채식, 종교적 신념,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신설]**

③ 시교육청은 학생 실내화 착용 규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1층에 학생 신발장 설치를 희망하는 단위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④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 해소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제50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① 시교육청은 수련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준비금 등의 지원 및 교육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앨범제작, 교복·체육복 공동구매 또는, 수학여행, 야영 경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진행 할 때에는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공동구매 또는 공개 입찰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학부모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자문)를 거치게 하여 사업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본 학습 자료를 제외한 실험실습 자료 및 소모성자료는 학교예산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 제51조 【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① 시교육청은 모든 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중·고·특수학교에 급식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1층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1층이 아닌 경우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정]**
- ② 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 정착된 학교(또는 전년도 위생관리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수정]**
1. 시교육청은 정기 위생점검을 통하여 상호장학(연수)와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현장전문가를 구성·운영하기 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도록 한다.
- ③ 시교육청은 조리실 급수시설의 보완, 개선과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학교조리실 상수도관이 노후 되어 자체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
- ④ 시교육청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여 학교급식의 식재료 검수 및 식생활관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⑤ 시교육청은 급식납품 계약 시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한다.
- ⑥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⑦ 시교육청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급식 예·결산 내역과 납품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등 구체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 ⑧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가공된 모든 식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제8장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 제52조 【인사위원회】** ① 시교육청에 유초중등별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고 인사규정 재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수정]**
- ②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한 자를 각 노조별 1인 이상 참여시킨다.
- ③ 시교육청은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수정]**
1. 각 학교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가. 학급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면에 관한 사항
 - 나. 교무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다. 연수, 상벌, 연수 파견, 훈·포장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라.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의 기준 설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마. 기간제 교사 및 특기 적성 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과, 교무회의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 인사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다. 인사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4. 학교교원인사(자문)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신상 등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5.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학교장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전체 교원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규칙의 제·개정은 교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학교장이 공포한다.
 7.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과 심의위원들은 정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교사들의 업무분장 희망원 원천 자료 등)을 공유한다.

제53조 【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 ①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주거지와 교통편의를 고려한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신규교사가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보특례 조항을 최소화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④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기 전보 인사를, 가급적 발령일 전달의 초순에 발표하여, 사무분장과 학사일정 및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교 만기자 및 전보희망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인원을 내신 희망원 제출 마감 1주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⑦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인사 시 인사클린센터를 통해 인사민원을 접수하고, 명백한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차기 인사에 반영한다. **[신설]**

⑧ 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가산점과 인사전보와 관련된 규정 개정 시 사전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⑨ 시교육청은 전보인사에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⑩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교장·교감의 경우 2년의 근무 기간을 채우도록 권장한다.

⑪ 시교육청은 전보유예, 전입요청 및 초빙교사제를 최소화하여 정기전보의 일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수정]**

⑫ 시교육청은 초등전보인사 시 신뢰성이 있는 연령대별 배치 인원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⑬ 학교에서 매년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명부 작성에 있어서 항목을 최소화한다.

⑭ 시교육청은 교원의 겸임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학교별 평균 수업 시수 등에 있어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원 1인당 원적교를 포함한 2개교를 초과하는 겸임 발령을 하지 않는다.

2. 시교육청은 급간 겸임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급간 겸임 근무하는 경우 전보내신점수에 해당 내용이 산입 될 수 있도록 한다.

⑮ 시교육청은 중등전보예외비율과 초빙총량제 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

⑯ 시교육청은 신규 교사, 미발령 기간제교사를 균형 배치하되, 정규 교원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예측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내부의 자체 기준을 최소화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신설]**

1. 미발령 기간제 교사 배치 최소화 노력

2. 전보내신서 작성 전 신규 교사 및 미발령 기간제교사 우선 배치 학교 명단 공개

3. 미발령 기간제교사의 동일교 근무 3년 이상 근무 제한

제54조 【초빙 교원】 초빙교원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전체 교직원회의의 민주적 절차(연구학교 수준의 동의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초빙 교과목, 초빙인원 등 초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초빙교원제를 신청하도록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청한 초빙교원제 학교의 선정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초빙교원의 임명은 시·지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원의 초빙에 관한 심사 요건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시·지역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시교육청은 초빙된 교원이 초빙 목적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강화한다.

⑤ 시교육청은 초빙교사(전입요청 포함)비율을 단위학교 교사정원의 5% 이내로 한다. 단, 작은학교와 혁신학교는 별도로 정한다.

⑥ 시교육청은 교장초빙제 및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시행하는 교원의 초빙에 관한 자격요건 및 목적에 부당노동 행위적 요소가 담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⑧ 시교육청은 일반고 이외의 학교에서의 초빙·전입 요청의 비율을 일반고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초빙, 전입요청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한다.

제55조 【국립학교 근무 교원의 특혜 제한】 ① 시교육청은 국립학교 근무 당시 상급 자격(교감) 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공립학교로의 전입을 근무 만기 후 2년간 제한한다.

② 시교육청은 국립학교 근무 교원이 공립학교로 전보할 시 타시도 전입자와 동일시한다.

제56조 【부부교사의 시·도간 인사 교류】 시교육청은 소속 교원 중 시·도를 달리 하여 근무하는 부부교원이 희망하는 동일 시·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킨다.

제57조 【학교민주화를 위한 승진제도의 개선】 ① 시교육청은 교원전문직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시교육청은 승진 가산점 항목의 개선을 위한 TF팀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장 임용(중임 포함) 및 교감 자격연수 심사 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58조 【인사제도 효율성 강화 및 각종 대회 심사위원 제척】 ① 시교육청은 교원들이 인사관련 법률과 시행령, 예규와 규정들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시교육청은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각종 사업 진행 시, 참여 교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력풀 제도 등)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신설]**

③ 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 행사에서 심사계획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척, 회피 사유를 공문으로 안내한다.

④ 심사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청탁관련 혐의를 적용하여 조치한다.

제9장 교원 연구·연수활동 개선과 전문성 보장

제59조 【부전공연수 및 과목불일치교사 해소】 ① 시교육청은 과원과 과목 교사와 자격증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교수해야 하는 교사의 복수전공(부전공) 연수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교사의 연수 희망을 받아 실시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과원과목 교사와 자격증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교수해야 하는 교사의 복수전공(부전공)연수에 따른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수정]**

1. 과원과목 교사가 희망하는 교과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전공 교과와 복수전공(부전공)연수 교과의 계열이 상이한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복수전공(부전공) 연수의 비용 및 시간을 보장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사의 심리적 위축과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한 부전공연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④ 시교육청은 부전공 연수를 공·사립학교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실시한다.

제60조 【전문직 공채의 개선】 ① 시교육청은 여성 교원의 교육전문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임용 시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에게도 전문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61조 【교원연수 제도 개선】 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시교육청 산하 각종 교원연수원 및 교육대학·사범대학, 일반대학교의 연수기관을 활용하며, 교원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직무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 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 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를 교원 1인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5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출장 처리한다. **[수정]**

③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경우 교원의 연수경비 및 연수여비를 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다.

④ 시교육청은 모든 2급 정교사가 교육경력 3년에서 4년 사이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시교육청은 연수 대상 교원에게 가급적 연수개시 15일 이전에 연수계획을 통보하여 연수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⑥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교육실습생의 원활한 연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교원의 해외연수(북한지역 포함)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하며, 경합이 있을 때 선발시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갖지 못한 교원을 우선한다.

⑧ 시교육청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에 대한 연수 참가 경비를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에 의거 합당하게 지급한다.

⑨ 시교육청은 교원이 야간·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출장(연수)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경비 및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개설 시 다음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수정]**

1.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 관련 연수 등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연수

2. 교직원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 관련 원격연수 과정 운영

⑪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⑫ 시교육청은 퇴직 1년 미만의 교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교원 퇴직 전 사회 적응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해당 교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대상자들이 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⑬ 시교육청은 정년퇴직을 앞둔 교원이 6개월의 공로연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노력한다. **[신설]**

제62조 【컨설팅장학 및 장학위원 활동】 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컨설팅 장학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② 컨설팅장학은 장학위원의 시범수업, 유용한 교수-학습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공개 수업은 희망 학교와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

제63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① 시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③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시교육청은 시교육과정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반고에서 성적 우수자만을 임의 선발하여 운영하는 특별반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감독한다.

⑥ 시교육청은 일반고에서 학기 시작 전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편법운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⑦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학예회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이 되도록 권장한다.

⑧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과정운영과 교재제작 및 활용을 지원하며 교원이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할 때 지도수당을 현실화한다. **[수정]**

- ⑨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법령에 따라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위반 시 실사를 통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⑩ 시교육청은 학교가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경우 교육청은 교과간 균형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 ⑪ 시교육청은 교과(군) 수업시수 20% 증감과 집중이수제의 적용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과원교사 발생 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비정기 전보, 순회전담교사, 부전공연수, 과목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 ⑫ 시교육청은 전입 학생이 공통 교과의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보충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⑬ 시교육청은 각급 단위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정]**

제64조 【학업성취도 평가와 직업기초능력 평가 개선】 ① 시교육청은 국가 주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 평가결과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 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있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제65조 【방학 중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운영】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정규 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2021.03.)’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운영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해당 계획과 지침 변경 사유 발생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수정]**

- ① 사전에 학생 희망을 조사하여 순수 희망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② 방학시기의 계절적 조건에 따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이 선행된 후에 실시하며,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한다.
- ④ 방과후학교 시수는 여름방학은 고 1·2·3학년은 최대 60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겨울방학은 고 1학년 100시간, 고 2학년은 최대 1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하루 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수정]**

- ⑤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은 오후 9시30분 이후는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 1. 단, 3학년의 경우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 2. 고 1, 2, 3학년은 오전 8시 이전 강제 조기등교를 금지한다.

제66조 【학기 중 방과 후 학교교육 활동 정상운영 등】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2021.03.)’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운영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해당 계획과 지침 변경 사유 발생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수정]**

②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장이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실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한다.

③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EBS시청 및 사이버학습을 강제로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④ 고등학교의 수준별 보충수업은 정규수업 전(0교시)과 오후7시 이후,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⑤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은 오후 10시 이후는 실시하지 않는다.

1. 단, 3학년의 경우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고 1, 2학년은 오전 8시, 고 3학년은 7시 40분 이전 강제 조기등교를 금지한다.

⑥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지도비 등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⑦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관리수당(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은 학생부담 경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⑧ 학부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의료 이외의 수용비는 5%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정]**

⑨ 차기 연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제67조 【연구·시범학교 등 운영의 개선】 ① 시교육청은 5.18민중항쟁, 평화통일,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교육 및 연수활동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타부처 요청, 시교육청 자체지정 연구학교 운영주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15% 범위내에서 지정·운영한다.

③ 시교육청은 연구·시범·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추진할 경우 당해 학교장이 교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교원수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 신청하도록 한다. **[수정]**

④ 시교육청은 연구학교 선정 시 교원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 행정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연구학교 지정운영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제68조 【교사의 자율성과 수업권 보장】 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사의 교재 선정과 재구성, 수업방식, 평가, 교육 방법의 적용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69조 【감사 제도의 개선】 ① 시교육청은 매년 공·사립학교 등에 대한 감사 결과 공통 및 주요지적사항을 각급 학교에 통보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②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분기별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감사 중 교육활동분야는 교육전문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무업무분야 감사를 담당할 교육전문직을 감사담당 팀당 1인 이상 감사 부서에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투명한 교육행정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감사 제도를 적극 추진·활용한다.

⑥ 감사 착안사항을 간소화하고 감사를 진행할 때 상세화된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에 교부하여 수감준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감사는 권위적이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수정]**

⑦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 또는 광주교사노조가 요청한 감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신설]**

제70조 【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급 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학급신문·학급문집 발간 등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 예산에 학년교육과정 운영비와 학급운영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학급운영비의 경우, 학급당 30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학급운영비 집행 시 담임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수정]**

③ 학교장은 학급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관 신용카드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이 용이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급교육 활동경비를 학급 담임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용도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특정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활동, 각종 실습 및 견학활동,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방과 후(토요일, 공휴일 포함)의 학급별 과외 활동에 대해 출장 처리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 초과근무를 인정한다. **[수정]**

제10장 사학의 공공성 보장

제71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보조금 회수 등】 ① 시교육청은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정관을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예·결산서와 세부항목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보조금이 보조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한다. **[신설]**

제72조 【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①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신규교사 위탁채용 권고 조례안을 준수하여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에서 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선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지침을 마련하며 1차 필기시험을 공립임용고사로 위탁하고 공·사립 동시지원도 가능하도록 채용안을 개선하도록 한다. **[신설]**

③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이 관계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원을 신규 채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임용 취소 또는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④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자체에서 실시한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의 민원수렴 창구(홈페이지 등)를 개설하여 응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 부조리를 예방하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에 규정한 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수정]**

⑥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 학교장의 징계의결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한다.

⑦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정년퇴직 교원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교장 급여 등 재정적 지원을 중지한다.

⑧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을 준수토록 하고, 다수득표자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⑨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감연수 지명자 추천이 인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교감자격연수 지명을 반려한다.

- ⑩ 시교육청은 교감연수 지명 추천자에 대한 검증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자격 미달자에 대해 교감자격연수 지명을 반려한다.
- ⑪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 임용 계획을 사학법인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 후 정교사 정원을 부여한 법인에 한해, 교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 ⑫ 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보고할 시에는 임용보고를 반려 처분한다. **[신설]**
- ⑬ 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광주교육의 중등공립학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 ⑭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신규교사 채용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지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법인 중, 기간제교사 비율이 과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학급 수 배정에서 우선 감축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제73조 【학교법인의 전보인사】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내 학교 간 전보인사원칙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마련하고, 재단 내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제74조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①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산하 사립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교사 수급 현황을 장기적으로 파악해서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과원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 정원 승인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 등 공동노력하고, 사립학교의 통·폐합, 학급 감축, 학과 폐지, 학교의 유형 전환, 기부채납 등으로 발생하는 과원 교사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다. **[수정]**

③ 시교육청은 과원 교사의 공립 채용 시 객관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을 공개한다.

④ 시교육청은 사립 과원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 시 해당 교과목 및 필요 인원수를 포함한 계획을 해당 학교에 사전 공지하고, 해당자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신설]**

⑤ 시교육청은 사립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 과원 교사 중 공립학교에 해당 교과목이 없는 경우 부(복수)전공 연수 등을 통해 전과한 후 동일 법인에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상급자격 취득, 각종 연수 및 포상 등에 있어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⑦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행정 지도와 관련한 사항은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해 불이행 시에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공문에 명시한다. **[신설]**

⑧ 시교육청은 교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감축, 교육과정변경, 학교의 유형 전환, 학교통폐합 등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전교조광주시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⑨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근무조건과 관련한 정관 변경 시 당해 학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⑩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수급상 과목불일치교사가 발생한 경우 공립-사립, 사립-사립 간 순회 또는 파견근무를 실시한다. **[신설]**

⑪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민주화 활동, 공익제보와 관련되어 해직된 교사의 원직 복직을 권장한다.

⑫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부당하게 징계된 교사들이 본인이 입은 행·재정적 손실의 구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고문변호사 또는 관련 부서의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75조 【교권보호조례시행규칙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 ① 시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사와 법인 간에 발생하는 교육분쟁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에 대해 관할 행정을 엄격히 하고, 정상화 추진 시 교육청의 정이사 추천 권한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행사한다. **[신설]**

③ 시교육청은 초·중등 사립학교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양받기 위한 법적 노력을 경주한다. **[신설]**

제76조 【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 ① 시교육청은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 경영평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우선지원제도를 실시한다.

1. 교비회계의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의 합리성 여부
2. 학교운영지원체계 회계의 예산편성 과정과 합리성 여부
3. 법인의 학교운영비 비율의 적정성 여부
4. 법인의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 투명한 인사에 대해 지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및 시설지원을 위해 해당 국, 과 및 사학정책팀의 역할을 강화한다.

③ 시교육청은 부정채용하여 임용취소된 교원의 인건비를 회수 조치한다.

④ 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 ⑤ 시교육청은 학교표준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을 전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⑥ 시교육청은 법인전입금과 연동하여 재정결합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원한다.
- ⑦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금과 관련된 지침 개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 ⑧ 시교육청은 적정 정교사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학급조정, 행·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11장 성평등 학교 문화 구축과 유아·직업·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육의 공공성 확보

- 제77조 【성 평등】** ① 시교육청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 성별과 성적 지향에 관계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수정]**
- ②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보직교사 임명 및 업무 분장을 할 때 여성 및 성소수자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수정]**
- ③ 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배치 시 여학교는 여교원 1인 이상을, 남학교는 남교원 1인 이상을 가급적 배치한다. **[수정]**
- ④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 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수정]**
- ⑤ 시교육청은 여학생의 생리에 의한 결석이나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정]**
- ⑥ 시교육청은 학생의 생리로 인한 학교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 제78조 【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①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 및 성폭력(성희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지도한다. **[수정]**
- ②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학교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 ③ 시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수정]**
1. 성 범죄 발생을 인지한 학교장은 지체없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2. 학교장은 성범죄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교원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시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사(감사) 시 피해자 관점의 법률지원과 성폭력 사안처리, 피해자 2차 모니터링 및 학교 회복프로그램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⑤ 시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가해 관련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한다. **[신설]**

⑥ 시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관련 2차 가해가 발생 시 2차 가해자를 징계 또는 고발한다. **[신설]**

⑦ 징계요구권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행위를 한 사안이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를 요구한다. **[수정]**

⑧ 위의 각 항의 실천을 위해 시교육청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단위 학교를 지원한다. **[신설]**

⑨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고충 상담 방법과 구제 절차,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신설]**

⑩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 여성혐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내 성범죄를 근절시킨다. **[신설]**

제79조 【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① 시교육청은 임신 중의 여교원이 유산, 조산, 사산한 경우에도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대책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신설]**

1.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매년 관내 교사들의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실질적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2.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를 통해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유산 포함) 후 3년 미만의 여성 교원에 대하여 정규 수업과 회의 참여 등 기본적인 근무 이외의 근무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태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수정]**

④ 시교육청은 여성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방학으로 인해 1월 미만인 경우, 그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출산휴가 및 보건휴가 등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관계법령에 의거 교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⑦ 시교육청은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연수에 산입하도록 한다.

⑧ 시교육청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이 성과급, 다면평가 기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⑨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내에 수유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제반 시설(수유실, 냉장고, 임산부용 간이침대 등)이 확보되도록 권장한다. **[신설]**

제80조 【교원 육아지원을 위한 탁아시설】 ①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 시 연수 장소에 교원의 유아용 탁아방을 설치 운영하며,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탁시설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직원 자녀 중 적정 인원 이상의 거점별 영아전담(0~2세)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수정]**

제81조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 및 차별행위 금지】 ①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위하여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 근절 등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내용을 전 교직원에게 공지한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연 1회 이상 해당 자격을 가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수정]**

③ 시교육청은 유치원장 및 초·중등학교장 회의 시 성평등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수정]**

④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성평등 연수를 1시간 이상 배치한다. **[신설]**

⑤ 시교육청이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모든 연수 과정에서 모든 강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 것을 요청하고, 강사에 의해 야기되는 혐오나 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의 내용을 담은 원고나 강의가 없도록 사전 안내·지도하며, 연수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내용의 유무를 점검하고 조치한다. **[신설]**

제82조 【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숲, 생태 등)을 위한 유치원 건립을 추진하고, 무리한 병설 유치원 신·증설을 지양한다. **[신설]**

1. 유치원 건립 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전문가, 교원, 실무담당자, 학부모 등으로 학교시설사업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수정]**

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단순보고 공문 등을 교감 또는 원감이 지원하도록 한다.

2. 시교육청은 인사 관련 업무(채용, 신원조회, 채용 결과 보고)는 교사가 처리하지 않으며 (겸임)원감이 하도록 지도·감독한다.

3.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원에게 유아학비와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다.

4. 3학급 이상 유치원에서는 전임원감이 보결수업을 담당하며, 겸임 원감이 있는 유치원에 시교육청에서는 보결강사를 지원한다.

③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원아에게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한다.

④ 시교육청은 유치원 평가 시 일일교육안 평가를 당일 일일교육계획안으로 대체한다.

⑤ 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에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유치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근무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⑥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⑦ 시교육청은 교육부 배정 정원 내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정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1. 유치원 정규교사가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 중에는 41조 연수를 쓸 수 있도록 한다.

2. 방학 중에는 강사를 채용하며, 운영에 따른 강사비를 유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규교사가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⑧ 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신설]**

⑨ 시교육청은 유치원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함께 유치원 갑질 문제 해결과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회(교육전문직과 교사 포함)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2. 시교육청은 유아교육 전문직 및 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갑질 문화 근절과 예방을 위한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3. 전교조광주지부 또는 광주교사노조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진상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⑩ 시교육청은 유치원 보결수업비 지급 기준 시간을 초등학교에 준하여 적용한다. **[신설]**

제83조 【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특성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정책협의 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협의한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특성화고의 실험 실습시설 및 학교 환경 개선, 장학금 확대, 학생 및 교사 실습복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한다. **[신설]**

③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④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 전공별 산업체 현장 견학 및 실기 연수를 실시한다. **[신설]**

⑤ 시교육청은 전문 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업체 파견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⑥ 시교육청은 광주 직업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용역을 할 때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신설]**

⑦ 시교육청은 학교의 예산 중 전공별 실험실습비가 기능반 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기능반 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지도한다. **[수정]**

⑧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 전공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규교사 충원률이 낮은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정규교원을 선발하여 배치한다. **[수정]**

⑨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급편성은 내실 있는 실험실습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수정]**

⑩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기능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신설]**

1. 학교는 기능반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청에 보고한다.

⑪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실습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실습교육과정에 맞는 안전장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적정 예산을 지원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원한다.

⑫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과 협력, 실습실 유해 환경을 전수조사하여 산업현장에 준하는 정도의 실습실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제84조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① 시교육청은 직업계고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2학기 이전에 조기 파견할 경우는 해당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신설]**

- ②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제 단체와 ‘현장실습지원위원회’ 를 구성하여 활성화하고, 각 학교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를 만들어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안전한 현장실습이 되도록 지도한다. **[신설]**
- ③ 시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선도 기업 인증, 현장실습 업체 발굴 및 확인, 노동인권 보장, 산업재해 사고 예방 및 대처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설]**
- ④ 시교육청은 현장실습 학생의 노동권 보장과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실습 전에 학교에서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을 10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한다. **[신설]**
- 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교원 대상 연수에서 노동인권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시간을 반드시 편성한다. **[신설]**
- ⑥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활성화 조례’ 에 근거하여 교육청 단위의 노동인권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력하여 강사 양성, 교재 개발, 교원 연수, 학생 교육 등의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신설]**

제85조 【특성화고 학생 유치 지원】 ① 시교육청은 직업교육 홍보 및 특성화고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중학교 교사 및 학생, 학부모들에게 보급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특성화고 신입생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학교별 신입생 홍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포함하여 특성화고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신설]**

제86조 【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특수학교(급) 교실 크기를 법정 규모로 확보한다.

② 시교육청은 신설 특수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하여 개교 준비팀을 6개월전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③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운영 예산으로 학교 예산 표준운영비 1% 내외로 확보토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한다.

④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현장실습비 및 현장학습비를 증액하도록 공문시행 등을 통해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언론 활동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신설]**

⑥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활성화한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한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 운영한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특수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 ⑦ 시교육청은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각종교구 및 학습보조기지원, 통학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특수학교(급)의 장애학생에게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⑧ 시교육청은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부족한 차량을 증차하도록 노력한다.
 - ⑨ 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의 진로 및 직업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담당교사 확대배치, 직업교육실 설치, 전공과 신증설 등을 포함한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수정]**
 - ⑩ 시교육청은 가정, 병원,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중복장애 및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장애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순회학급, 재택학급 등을 설치 운영한다.
 - ⑪ 시교육청은 직속산하기관의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 ⑫ 시교육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제87조 【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 ① 시교육청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유초·중·고등학교에 균형 있게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 ② 시교육청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신설]**
 1. 시교육청은 특수 유아 통합학급에 학기 중 학생이 배치될 경우 지원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③ 시교육청은 장애학생 교육 보조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사 및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상황 관리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④ 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및 학습보조를 위해 특수교육실무사를 시교육청 자체에서 채용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연수 후 해당 학교에 배치한다. **[수정]**
 - ⑤ 시교육청은 통합학급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 ⑥ 시교육청은 학교 평가 항목으로 통합교육 지원 부문이 지표나 설문 항목에 반영 되도록 노력한다.

- ⑦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확충한다.
- ⑧ 시교육청은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 ⑨ 시교육청은 장애 청소년 및 성인이 교육문화수련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법정규모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88조 【특수교육의 전문성 신장】 ① 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원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한다.

②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 실시를 위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내에 진단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 내 진단평가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2. 차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부터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 교육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있을 시 수시로 개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선정 및 배치 등의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결과는 공개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④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직무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과목을 개설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업무담당 전문직을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업무담당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을 특수교육전공자로 배치하고, 특수교육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89조 【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정상화】 ① 시교육청은 방과후교육비 중 개별지원의 경우 카드결제 제도를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특수교사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무원 업무는 특수교사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사가 교육 중에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하여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수정]**

제90조 【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 선정하고 학부모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홍보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산하에 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1. 구성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유초중고 특수교사의 참여를 보장한다.
2. 특수교육정책소위원회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주최하고 회의 결과는 특수교육정책소위원회 위원 협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특수교육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수정]**

1.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학급당 법정 정원을 준수하고 정원 초과시 학급을 증설하도록 노력한다.
2. 특수학교 초등교사를 2022학년도 특수학교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④ 시교육청은 지체장애를 동반한 중증중복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학급)를 중증중복장애 특수학교(학급)으로 지정하고, 중증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제91조 【통합교육지원】 ① 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운영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운영은 독자적인 업무로 인정하여 학교 내에서 타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통합 유치원을 신설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④ 시교육청은 통합교육 지원 및 특수학급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제92조 【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2인을 배치한다. 특히 학생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수정]**

②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지원 인력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보건교사가 병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지원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③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연구실적 가산점, 교생실습지도 가산점,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유공교원 포상기회에서 다른 교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④ 시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보건교사에 의해 1개 학년 이상,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수정]**

⑤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연수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수정]**

1.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연 1회 이상 개설한다.

2.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법상 면허자격 유지를 위한 직무연수를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3.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보수교육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 ⑥ 시교육청은 학교 보건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장학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 담당부서를 정하여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이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연차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⑦ 시교육청은 보건교육과 보건업무지원을 위한 (가칭)보건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신설]**
- ⑧ 시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업무는 학교장이, 저수조청소, 방역(소독)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한다. 단, 수질검사 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정]**
- ⑨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고 기설학교는 시설확충이 가능한 경우 보건교육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⑩ 시교육청은 보건실의 현대화 미추진학교 및 노후학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 ⑪ 시교육청은 교감 이상의 자격연수에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과 보건교사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매년 최소 1시간 이상의 연수를 실시한다.
- ⑫ 방학 중에 보건교사의 근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 ⑬ 시교육청은 최근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가산금6)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한다. **[신설]**
- ⑭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 제93조 【사서교사 인사 및 근무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모든 2급 사서·보건 교사가 교육경력 3년에서 4년 사이에 1급 사서·보건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방과 후 개방, 지역사회 개방은 안전, 보안, 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③ 시교육청은 사서교사가 휴업일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지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정]**
- ④ 시교육청은 1,000명 이상의 과대 학교의 도서관에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인력 지원 또는 업무 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신설]**
- ⑤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제94조 【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영양상담 활성화, 영양교육의 전문성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신설]**

1. 시교육청은 학교의 내실있는 식생활·영양교육 운영 및 영양교사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에 영양교육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수정]**

1. 식생활 및 영양교육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한다.

2. 식생활 및 영양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감 이상의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시 학교급식 및 영양교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의 병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급식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한다.

⑤ 시교육청은 급식실이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공간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행사에 대여되지 않도록 하되, 투표장 대여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⑥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및 기존 학교의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양상담실을 확보하고, 영양상담실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부구조 및 설비기준 등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⑦ 시교육청은 급식시설 현대화(오븐기, 냉난방시스템 등)사업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대·편성하도록 노력한다. **[수정]**

1. 급식기구 단일품목 천만원이상 물품구입시 희망학교 통합구매를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⑧ 시교육청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위생 점검과 학교에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⑨ 시교육청은 무상 의무급식 실시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의무급식 지원기준 산정 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적절한 단가로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한다. **[수정]**

⑩ 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우유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유급식 업무를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공문으로 시행한다. **[수정]**

⑪ 시교육청은 영양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7조 및 41조에 의거 근무지 외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방학 중 근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 ⑫ 시교육청은 순회기간제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
- ⑬ 공동조리학교의 학교급이 다른 경우 권장영양량, 학사 일정 등이 달라 급식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독조리를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한다.(단, 여건이 불가한 경우 학교급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학사일정 등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한다.) **[수정]**
- ⑭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점 검단의 위생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시교육청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 식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⑮ 시교육청은 교과연구 및 교육활동 관련하여 영양교사가 충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도록 한다.
- ⑯ 시교육청은 차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수정]**
1. 공문을 통한 전체 급식학교 의견수렴
 2. 상시 업무 모니터링 결과 반영
 3.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영양교사 2인이상이 포함된 협의회 운영
- ⑰ 시교육청은 식재료 검수 업무 등을 위해 매일 조기 출근하는 영양교사의 경우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활용토록 지도한다. **[신설]**
- ⑱ 시교육청은 영양관리실의 시설,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한다. **[신설]**
1. 적정사무공간, 사무적정온도를 위한 냉난방시설 등, 전기배전판 제거 등
- ⑲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 제95조 【상담교육활성화 지원】** ① 시교육청은 학교 내 예방·처치·사후관리를 통한 학생상담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미배치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 ②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심리적 지원의 즉시적 효과 및 사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의 인사에 있어, 학교내 위(wee)클래스에 우선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의 배치를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한다. **[신설]**
- ③ 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를 교육행정기관보다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 ④ 시교육청은 특수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할 경우,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전문상담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 제96조 【상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의료적 개입 및 외부 전문기관 의뢰가 필요할 위기 상황 학생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위(wee)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wee센터 실장 및 부실장)에 대하여 업무의 곤란도가 반영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③ 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의 업무곤란도에 적합한 교직수당가산금에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④ 시교육청은 상담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제97조 【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착 노력】 ①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제를 발굴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안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신설]**

③ 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선진적인 정책 및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④ 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교원의 신분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 권한이 시교육청에 이양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노력한다. **[신설]**

제98조 【불합리한 교원 정책 폐지 노력】 ①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② 시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신설]**

부 칙

제1조 【유효 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6개월로 한다. **[수정]**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 【협약 갱신】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 누구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수정]**

제3조 【보충협약 및 준용】 ① 본 협약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는 법률 개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약서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5부를 작성하여,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2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신고한다.

[부록 2]

2021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섭내용·교섭위원 수·교섭 일시 및 장소와 기타 교섭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 ① 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을 합하여 ‘노·사 양측’이라 한다.
- ② 노·사 양측의 교섭 담당자를 “교섭위원”이라 호칭한다.
- ③ 최종 본교섭에서 교섭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합의서”라 한다.
- ④ 본교섭 또는 실무교섭에서 교섭 의제별로 협의한 사항을 “협의 결과”라 하며,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한 사항을 “잠정합의서”라 한다.

제3조(교섭의 당사자와 교섭의 담당자)

- ① 교섭의 당사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광주교사노조”이라 한다.)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이하 “전교조광주지부”라 한다.) 지부장으로 한다.
- ② 교섭의 담당자는 교육감과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전교조광주지부 지부장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을 말한다.

제4조(교섭의 운영)

- ① 교섭은 본교섭위원회(이하 “본교섭”이라 한다.)와 실무교섭위원회(이하 “실무교섭”이라 한다.)으로 운영한다.
- ② 본교섭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단체교섭 개회식
 2.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 미합의된 쟁점사항에 대한 교섭
 4. 최종 단체협약 체결식
- ③ 실무교섭에서는 교섭사항 수용여부 검토, 교섭 의제 축조 심의, 단체협약(안) 작성, 본교섭 개최 일정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섭한다.

제5조(성실교섭)

노·사 양측은 상호간 신뢰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을 바탕으로 상호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다.

제6조(교섭 위원 수 및 위원의 자격)

- ① 본교섭은 노·사 양측 각 10명으로 구성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참석자 수는 조정 가능하다.
- ② 본교섭의 대표위원은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고, 공동교섭단에서는 전교조광주지부 지부장·광주교사노조 위원장으로 한다.
- ③ 본교섭의 위원은 교육청에서는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동교섭단에서는 임원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④ 실무교섭은 노·사 양측 각 6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4인 이상 참석한다.
- ⑤ 실무교섭의 대표위원은 교육청에서는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공동교섭단에서는 사무총장(광주교사노동조합) 또는 정책실장(전교조광주지부)급 이상으로 한다.
- ⑥ 실무교섭 위원은 교육청과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교조광주지부에서 임명된 자로 한다.

제7조(교섭의 방법 및 절차)

- ① 최초 본교섭은 11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실무교섭은 월 3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차 실무교섭은 노·사 양측이 협의하여 개최한다.
- ③ 정해진 교섭 예정일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에게 2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교섭의제는 공동교섭단에서 제출한 요구안에 의한다.
- ⑤ 실무교섭은 소관부서 교섭 의제별로 진행한다.
- ⑥ 실무교섭에서 미합의된 사항 발생 시 본교섭을 진행하되, 노·사 합의 하에 사측 교섭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소관국장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본교섭을 개최한다.

제8조(교섭위원 통보 및 교섭 성립요건)

노·사 양측은 교섭위원 명단을 교섭예정일 2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되 이후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통보한다. 교섭위원 명단에는 소속 기관 및 단체 또는 학교, 직위, 성명,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제9조(교섭 시간 및 장소)

- ① 교섭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 4시간(14:00에 시작하여 18:00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양측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단, 합의서 작성 등 기록시간은 교섭시간에서 제외한다.
- ② 교섭 장소는 교육청과 공동교섭단측이 제공하는 장소를 교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양측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실무 간사 선정 및 역할)

- ① 실무 간사는 노·사 양측 각각 1명으로 선정한다.
- ② 실무 간사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섭진행 절차, 교섭진행 방식,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합의한다.
- ③ 실무 간사 명단은 교섭위원 명단과 함께 통보한다.

제11조(회의진행 방식 및 의사진행 규칙)

- ① 본교섭과 실무교섭은 노·사 소속원에 한해 공개한다. 제3자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합의 하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회의 진행 상황을 녹취 및 속기하도록 하며 노·사 양측에서는 자율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단, 속기록이나 녹취 내용은 합의서에 우선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해석상의 근거 자료로만 사용한다.
- ③ 배석자는 노·사 양측 각각 본교섭 8인 이하, 실무교섭 5인 이하로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④ 내부 의견 조율이나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회할 수 있다.
- ⑤ 모든 교섭의 회의 진행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한다.
- ⑥ 교섭 담당자는 신의 성실 원칙 하에 성실히 교섭에 임하며 상대방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⑦ 발언은 제안, 질의, 답변, 보충질의, 답변 순으로 한다.

제12조(편의 제공)

교섭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회의실 준비 및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휴게와 사무처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제13조(본교섭)

- ① 최초 본교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사회는 교육청 측에서 맡는다).
 1. 개회(사회자)
 2. 국민의례
 3. 성원보고(사회자)
 4. 경과보고(사회자)
 5. 노·사 대표 인사 및 교섭위원 소개
 6.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공동교섭단)
 7.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교육청 입장 설명(교육청)
 8. 폐회
- ②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종 본교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사회는 교육청 측에서 맡는다).
 1. 개회(사회자)
 2. 국민의례
 3. 성원보고(사회자)
 4. 실무교섭 경과보고(실무교섭 대표위원)
 5. 노·사 대표 인사
 6. 단체협약 체결식
 7. 폐회

제14조(실무교섭의 운영)

- 실무교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사회는 교육청 측에서 맡는다).
1. 개회(사회자)
 2. 대표위원 인사 및 교섭위원 소개(교육청, 공동교섭단)
 3. 안건(의제) 심의
 4. 협의 결과 또는 잠정합의서 작성 및 서명 날인
 5. 차기 교섭 일정 및 안건 예고
 6. 폐회

제15조(합의방식)

- ① 교섭에 있어서 합의서(잠정합의서 포함) 및 협의 결과는 서면으로 하며, 합의서(잠정합의서 포함) 및 협의 결과는 3부를 작성하여 노·사 양측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 ② 실무교섭 및 본교섭에서는 교섭 의제별로 협의 결과에 서명하고, 최종 본교섭 전에 잠정 합의한 사항을 서명한다.
- ③ 최종 본교섭에서는 잠정 합의한 사항을 추인하고, 교섭의 당사자인 교육감과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전교조광주지부 지부장의 서명 날인으로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6조(합의서 해석)

본 합의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 양측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 바에 따르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예외규정)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